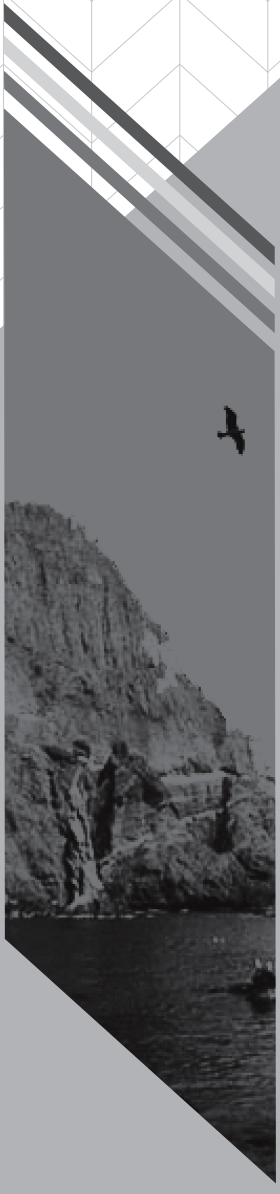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30 Winter 20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차 례

연구논문

홍순재 ▮ 진도 벽파진 출토 선박(진도선) 구조적 재해석 007
이 호 ▮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연구사의 통합적 검토와 장기 구조 재구성을 중심으로 047
최덕규 ▮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도문제'의 국제법 – 중립 문제를 중심으로 097
서진웅 ▮ 일본국제법학계의 '대체적 권원론' 상 '재확인' 법리의 국제법적 문제점 검토 135
김소영 ▮ 2022 개정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 속 독도 기술과 독도 교육 161

자료소개

조길부, 우루시자키 히데유키, 죽도=독도문제연구넷 ▮
최신 연구로 본 '독도 문제' 207

서평

이 훈 ▮『우리 땅, 그리고 독도 -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진실』
(한철호 저, 2024, 선인) 245
김병렬 ▮『어부지용(漁夫之勇) - 최초 독도주민 최종덕의 도전과 응전』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저, 2025, 중앙경제) 259

영토·해양 일지

엄태일 ▮ 영토·해양 일지 280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칙 290
발행 및 심사규정 292
투고 요령 296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300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논문

- **홍순재** | 진도 벽파진 출토 선박(진도 선) 구조적 재해석
- **이 호** |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연구사의 통합적 검토와 장기 구조 재구성을 중심으로
- **최덕규** |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도문제의 국제법 – 중립 문제를 중심으로
- **서진웅** | 일본국제법학계의 '대체적 권원론' 상 '재확인' 법리의 국제법적 문제점 검토
- **김소영** |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독도 기술과 독도 교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1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연구논문

진도 벽파진 출토 선박 (진도선) 구조적 재해석

홍순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I. 서론
II. 진도선 선체 구조의 정리
III. 삼국시대 이후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실증자료 검토
IV. 진도선의 구조와 성격 재해석
V. 결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서론

진도선(珍島船)의 존재는 1978년 월간지 『예향(藝鄕)』에 실린 삼별초(三別抄) 관련 답사 기행문에서 현지 주민의 제보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이후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해안 수로에 매몰되어 있던 선체가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도선의 구조는 본체(本體), 방현재(防舷材), 격벽재(隔壁材), 장좌(檣座), 선미연결재(船尾連結材), 선미늑재(船尾肋材), 외판(外板), 기타 부재 등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명칭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굴 보고서에서 제시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진도선의 각 부재를 기술한다.[1]

발굴 당시 진도선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건조된 통나무배(獨木舟)로 해석되었다. 중국 원(元)나라 동전의 출토, 선체 내부의 격벽(隔壁) 및 장좌(檣座) 구조, 철정(鐵釘, 쇠못)의 사용, 동유회(桐油灰) 접착제의 활용, 푸젠(福建) 지역 전통 조선 기술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보수공(保壽孔: 배의 안전 항해를 위해 동전을 넣어 두는 의례용 구멍)의 존재, 선체 재료로 사용된 녹나무(樟腦木)[2] 등의 요소들이 진도선의 중국 선박으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하며, 학계에서 '통나무배'로 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김재근은 진도선을 중국 산둥성(山東省) 핑두(平度) 지역에서 1975년에 출토된 4세기 쌍체 독목주(雙體獨木舟)와 비교하여 중국 통나무배로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학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되면서, 진도선을 중국 통나무배로 규정하는 견해가 정설로 확립되는 배경이 되었다.[3]

그러나 여러 구조 부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선이 단순한 통

* 논문 투고일: 2025.10.27. 심사 완료일: 2025.11.26. 게재 확정일: 2025.11.26.

1 국립해양유물보존처리소, 1993,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17쪽.

2 김재근, 1993, 「珍島통나무배의 船舶史的 意義」,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86쪽.

3 홍순재, 2009, 「진도 벽파리 출토 통나무배 성격 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무배로 규정된 데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발굴 당시 출토된 유물의 편년이 14세기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중국 수·당대의 쌍체 독목주와 동일시한 기존 해석은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며, 기술사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여한다.

더욱이 진도선이 출토된 벽파 지역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왜구(倭寇)의 침입, 삼별초의 해상 항전, 벽파진 해전 및 명량대첩(鳴梁大捷) 등 한국 해전사의 주요 사건이 전개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역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선박을 단순한 독목주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역사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발굴 보고서에 수록된 김재근의 논고와 중국 학자 왕관쥐(王冠倬) 및 시룽페이(席龍飛)의 저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발굴 초기의 해석을 반복 인용하거나 진도선을 중국 독목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선체 구조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4]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통나무배' 해석을 재검토하고 진도선의 선체 구조를 구조선(構造船)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진도선의 구조 분석을 위한 선행 단계로, 중국과 일본의 동시기 고고학적 실증자료를 통해 선박 형태의 전반적 특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발굴 당시 실측도면과 잔존 선체편을 바탕으로 구조 분석을 수행하고, 4장에서는 CAD 설계를 통한 가상 복원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진도선의 구조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frac{1}{5}$ 축소 모형제작 실험을 통해 각 부재의 기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진도선의 국적과 기술적 성격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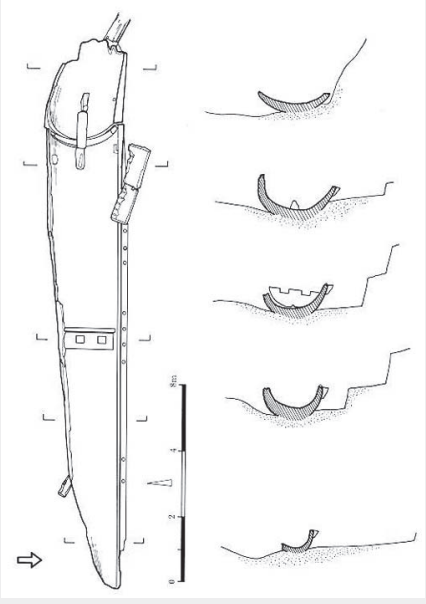
4 王冠倬, 2000, 『中國古船图潜』, 三聯書店; 席龍飛, 2000,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진도선 선체 구조의 정리

진도선의 잔존 선체[5]는 거대한 통나무의 내부를 파내어 만든 'U'자형 반원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재와 선미재 등 두 부재로 연결된 본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그림 1〉 참조). 본체 좌·우현 상연 외측에는 선체의 폭을 확장하고 외판을 지지하며 충격을 완화하는 방현재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내부에서는 공간을 구획하고 지지하기 위한 격벽, 돛대를 고정하기 위한 장좌, 선체 외곽을 구성하는 외판, 본체를 보강하는 늑재 등 다양한 구조부재가 확인되었다.

선체의 잔존 크기는 길이 16.85m, 최대 폭 2.34m, 깊이 0.75m이며, 전체적인 선형은 '두협미광(頭狹尾廣)'과 '두저미고형(頭低尾高形)'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1〉 진도선의 잔존 선체 실측도

출처: 국립해양유물보존처리소, 1993,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활동 시기는 보수공에서 출토된 동전 7종 8점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의 정지통보(政知通寶)(1111~1117)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도선의 건조 상한 연대는 12세기 초, 즉 송(宋)·원(元)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수습된 자기(磁器) 226편은 11세기에서 14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5 출토된 선체편의 구조 명칭은 발굴 보고서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명칭을 병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탄소연대측정 결과, 중앙 본체는 11세기 중반~13세기 중반, 선미 본체는 13~14세기, 방현재는 15~16세기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평균 연대는 710±30 BP yr이며, 보정 연대는 1260~1380년 범위로 추정된다.

선체의 수종 분석 결과, 본체, 장좌, 격벽의 주요 부재는 모두 녹나무(樟腦木)로 확인되었다. 다만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담당한 방현재의 일부는 마미송(馬尾松, 소나무과)으로 식별되었다. 이는 진도선 제작 시 복수의 수종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진도선의 주된 구조 부재의 잔존 현황과 그 형태를 종합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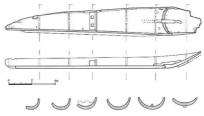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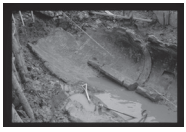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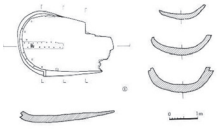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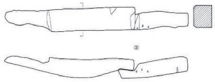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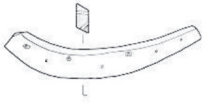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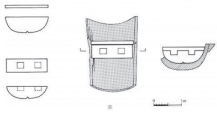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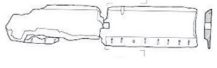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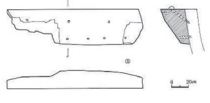
이상의 구조 분석을 통해 진도선은 단일한 통나무 형태가 아니라, 최소 세 부재(선수·중앙·선미)로 구성된 복합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 본체의 곡면에 맞추어 늑재를 결구하고, 방현재와 외판을 결합하여 선체의 횡강력(橫剛力)을 확보한 점은 단순한 독목주의 범주를 넘어선 구조적 완성도를 보여 준다.

또한 격벽의 존재는 내부 공간을 일정 간격으로 구획하여 선체의 강도를 높이고, 침수 시 전체 선체의 침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격벽 구조는 동시기 중국 및 일본 선박의 특징과도 비교 가능한 중요한 단서로, 진도선이 준구조선 혹은 완전한 구조선 단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진도선의 선체는 ① 복수 부재의 결합, ② 격벽과 늑재의 보강, ③ 외판과 방현재의 결구, ④ 철정 및 동유회 사용이라는 점에서, 선체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중세 동아시아형 구조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진도선의 잔존 구조 현황

구조	사진	도면	형태
중앙 본체			• 길이 14.35m, 폭 2.28m • 선형 특징: 선미는 깊고 넓으며, 선수는 좁고 얕은 형태로 완만한 곡선 구성
선미 본체			• 길이 3.3m, 폭 2.25m • 평면 형태: 타원형에 가까움 • 단면 형태: 연결부는 두껍고 호(弧)가 급하나, 전방은 점차 얇아지며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 • 연결 방식: 중앙 본체와 선미 본체를 빗턱 및 턱붙이 방식으로 접합
늑재 연결재			• 길이: 2.33m(추정 3.4m) • 두께: 0.27m • 너비: 0.22m • 단면 형태: 사각형 • 특징: 중앙 본체와 선미 늑재의 연결 각도에 맞추어 제작됨
			• 우측 늑재: 길이 99cm, 너비 16.5cm, 두께 8cm • 좌측 늑재: 길이 116cm, 너비 18.6cm, 두께 7cm • 특징: 선체 내부 곡면에 맞추어 연결됨 • 단면 형태: 사각형
장좌			• 위치: 제Ⅲ격벽 전면 • 전체 크기: 길이 144cm, 두께 14.5cm, 높이 42cm • 장각 좌현 홈: 가로 24cm×세로 20cm×깊이 14cm • 장각 우현 홈: 가로 22.5cm×세로 20cm×깊이 14cm
격벽			• 크기: 길이 150cm×두께 13cm×높이 55cm • 특징: 저부 중앙에 9×9cm 삼각형 수안(배수 구멍) 시설 • 형태: 반원형
외판			• 분류: 발굴 당시 기타 선체편 • 크기: 길이 253cm×너비 52cm×두께 8cm • 특징: 중앙부에 7×8cm 크기의 사각 관통구멍 존재 • 형태: 넓은 판목
방현재			• 크기: 길이 12.65m • 구성: 2재 • 단면 형태: 역삼각형 • 표면 특징: 외면에 불에 그을린 흔적 관찰됨 • 기타: 상연 외측 못 자국 주변에는 연화 흔적 없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삼국시대 이후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실증자료 검토

삼국시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통나무배(獨木舟), 준구조선(準構造船), 구조선(構造船)이 공존하였음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시대의 실제 선박 유물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출토되지 않아, 해당 시기의 정확한 선형(船形)과 구조를 복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가야시대 고분 유적에서 출토된 주형토기(舟形土器)가 당대 선박 구조를 추정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목주·준구조선·구조선의 구분은 선저 구성 방식과 격벽의 존재, 현측판 결구 방식, 방현재의 구조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분류이다. 독목주는 단일 재목을 파내 선저를 이루는 형식, 준구조선은 통나무 선저에 외판·방현재 등 일부 부재가 결합된 중간 단계, 구조선은 외판·늑골·격벽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형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자료를 비교하였다.

주형토기는 통나무배의 구조적 특징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예로, 목재의 크기와 자생 상태에 따라 원형 혹은 타원형을 띤다. 이 가운데 통나무배는 짧고 굵은 원목형과 길고 좁은 장목형으로 구분되며, 준구조선은 이 통나무배에 현측판을 세우고 방현재를 덧붙여 보강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선수·선미에는 파도를 막기 위한 수판이 높게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선체 강도의 향상뿐 아니라 항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발전으로 해석된다.

일본 또한 삼국시대와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주형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 1912~1917년 미야자키현(宮崎縣) 사이토바루(西都原) 고분 유적[6]에서 출토된 3세기 주형토기.

Ⓑ 1954년 교토부(京都府) 교탄고시(京丹後市) 아미노정(網野町) 니고레(ニゴレ) 고분 유적에서 출토된 4세기 주형토기.[7]

---

6 宮崎県教育委員会, 2006,『西都原古墳群』発掘調査·保存整備概要報告書(X).

7 天理大学博物館学研究室 編, 1988,『京都府 弥栄町文化財調査報告』第5集, 弥栄町教育委員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005년 미에현(三重縣) 마쓰사카시(松阪市) 다카라즈카(宝塚) 1호분(1号墳)[8] 유적에서 출토된 5세기 주형토기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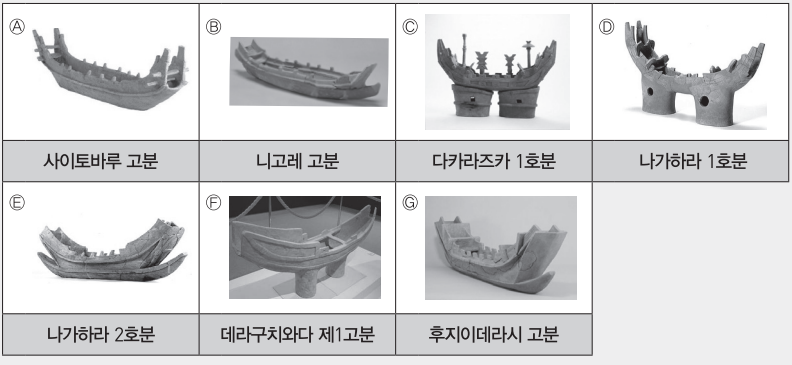
Ⓓ 1987년 오사카시(大阪市) 히라노구(平野区) 나가하라(長原) 다카스리(高廻り) 1호(고분 169호)와

Ⓔ 2호(고분 170호) 유적[9]에서 출토된 4세기 말 주형토기 2점.

Ⓕ 1979년 가쓰라기시(葛城市) 데라구치와다(寺口和田) 제1고분 유적[10]에서 출토된 4~5세기 주형토기 1점.

Ⓖ 오사카부(大阪府)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 고분 유적[11]에서 출토된 4세기 말 주형토기 1점.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토기들은 3세기부터 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통나무배에서 준구조선으로의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비교 자료로 평가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준구조선편과 유사한 일본 주형토기

출처: 홍순재, 2024, 『한선 연구』, 민속원, 329쪽.

8 松阪市教育委員会, 2005, 『三重県松阪市宝塚町・光町所在 史跡宝塚古墳—保存整備事業に伴う宝塚1号墳・宝塚2号墳調査報告—(松阪市埋蔵文化財報告書 1)』.

9 高島徹, 1989, 「長原古墳群」, 『日本古墳大辞典』, 株式会社東京堂出版.

10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2019年秋の特別展〉しきしまの大和へ—アジア文華往来—特別展',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389.000020364.html.

11 天野末喜 編, 1989, 『岡古墳—古市古墳群の調査研究調査報告1—藤井寺市文化財調査報告第5集』, 藤井寺市教育委員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나라의 선박 관련 유적은 황강, 낙동강, 남강 유역과 남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 위치했던 가야는 당시 낙동강 하류와 일본 규슈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철 생산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변진조(弁辰條)에는 "가야 지역은 철의 생산과 무역이 번성하여 삼한 여러 나라와 낙랑·대방군, 그리고 왜인(倭人)까지 와서 철을 구입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이미 3세기 무렵 가야가 활발한 해상 교역망을 구축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료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선박으로는 경주의 안압지선과 인천의 영흥도선 등 두 척의 선박이 출토되어 당대 선박 기술의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압지선을 통나무배에서 발전한 준구조선으로 이해해 왔으나, 필자는 이를 이미 완전한 구조선을 갖춘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안압지선은 만곡부 종통재를 포함한 3열 저판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부재 연결에는 노철형(凸形) 장삭을 사용하고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벌림쐐기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결구하였다. 또한 장삭 상부에는 저판과의 결속을 위한 철정이 박혀 있으며, 선수부에는 외판 또는 현측재를 결합하기 위한 'ㄴ'자형 턱붙이 클링커식(턱붙이 겹잇기) 구조가, 선미부에는 겹붙이 방식이 확인된다. 특히 저판과 연결된 외판은 철정을 사용하여 고정되었고, 중앙재 선수부에는 상부 구조 보강을 위한 사각 홈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을 종합할 때, 안압지선은 독목주식 준구조선이 아닌, 이미 완전한 구조선 체계를 갖춘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구 방식은 안압지선이 이미 통나무배 단계에서 구조선 단계로 발전한 대표 사례임을 입증한다.

영흥도선 또한 안압지선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중앙 저판을 중심으로 좌우에 'ㄴ'자형 만곡부 종통재가 배치되었으며, 장삭이라는 긴 나무못으로 부재들이 서로 결구되었다. 다만, 안압지선에서 확인된 철정과는 달리, 영흥도선에서는 장삭, 초본류로 엮은 줄 등이 연결재로 사용되었다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이가 있다. 중앙 저판은 '긴턱걸이 장부이음' 방식을 통해 길이를 확보하였는데, 비록 가공은 다소 투박하나 통일신라 시기 선박이 이미 구조선으로 발전한 양상을 명확히 보여 준다.

통일신라시대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해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견사(遣使) 활동, 해사(海事) 활동, 그리고 수군 운용 등을 통해 항해술과 조선술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이는 안압지선과 영흥도선과 같은 구조선에서 그 기술적 진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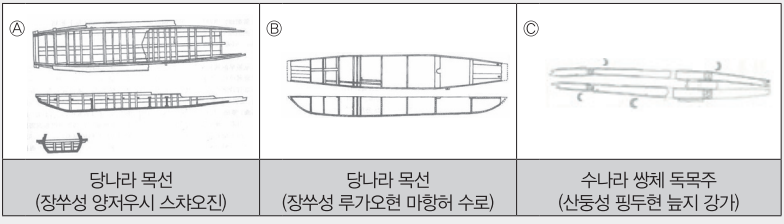
이와 동시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고고학적 선박 자료에 몇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다.

첫째, 1960년 장쑤성(江蘇省) 양저우시(揚州市) 스챠오진(施橋鎭)에서 출토된 당(唐) 말기의 목선.[12]

둘째, 1973년 장쑤성 루가오현(如皐縣) 마항허(馬港河) 수로에서 발굴된 당 초기 목선.[13]

셋째, 1975년 산둥성 핑두현(平度縣) 신허향(新河鄕)에서 출토된 수대(隋代, 581~618)의 쌍체 독목주가 있다.[14](〈그림 3〉 참조)

Ⓐ 장쑤성 양저우시 스챠오진에서 출토된 당대 목선은 길이 17.32m, 최대 너비 2.58m, 선창 깊이 1.6m로, 총 9개의 선창을 갖춘 평저형 구조이다. 이 선박은 나무못 대신 철정을 사용하였으며, 판재로 외판을 구



〈그림 3〉 중국 수 · 당나라 출토 고고학적 자료

출처: 홍순재, 2024, 『한서연구』, 민속원, 331쪽

12 王冠倬, 2000, 앞의 책, 99쪽.

13 王冠倬, 2000, 위의 책, 99쪽.

14 席龍飛, 2000, 앞의 책, 2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하였다. 판재의 이음새는 석회와 오동나무기름에 담근 삼실(麻絲)로 메우고, 목판에 철정을 박은 뒤 외부에는 석회 반죽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수밀(防水)을 확보하였다. 이는 당대 조선 기술의 상당한 진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 장쑤성 루가오현 마항허에서 출토된 목선은 길이 18.4m, 최대 너비 4.3m, 깊이 1.3m이며, 5개의 대형 선창과 소형 선창으로 구획되어 있다. 바닥 선실은 목판으로 분리되었고, 격판과 외판의 접합부는 판재를 빈틈없이 맞추어 철정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틈막이 수법을 통해 수밀성을 확보한 구조가 확인된다.

Ⓒ 산둥성 핑두현에서 출토된 수대의 선박은 두 개의 선체를 좌우로 병렬 배치한 쌍동선 형식이다. 각 선체는 선수·중앙·선미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 통나무로 제작되었으며, 20여 개 이상의 양(梁)으로 두 선체를 연결한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시기 고고학적 자료는 판재 제작과 활용, 부재 간 이음, 철정에 의한 결구, 격벽을 통한 횡강력 보강 등에서 고도의 기술적 수준을 보여 준다. 특히 수밀법은 조선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아스카(飛鳥)시대와 나라(奈良)시대에 중국에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를 빈번히 파견하였다. 특히 왜(倭) 오왕(五王)은 동진(東晉) 멸망 이후 화남(華南) 지역에서 성립한 송(宋)·제(齊)·양(梁)·진(陳) 등 남조(南朝)[15] 4국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7세기 초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견수사가 보내졌다. 또한 서명(舒明) 2년(630)부터 승화(承和) 연간(838)에 이르는 약 200년 동안 총 15차례의 견당사가 파견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기술, 특히 조선 기술이 일본에 직접적으로 전래되었다.[16]

---

15 중국에서 동진(東晋)이 멸망한 후 화남(華南)에서 일어난 송(宋)·제(齊)·양(梁)·진(陳) 등 4국의 총칭.

16 『日中交流二千年』, 「日本 古代 造船技術的發展的論」와 『續日本記』의 기록에 의하면 天平 4년(732)에 일본은 일찍 近江, 丹波, 播摩, 備中 4국에 명하여 견당사선을 제조하게 하였다. 天平 18년(746)으로부터 寶龜 연간(778) 안지국에서 일찍 다섯 번이나 견당사선을 제조하는 일이 있었으며 모두 견당사선 16척을 제조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속일본기(續日本記)』에 따르면, 일본은 덴표(天平) 4년(732)에 이미 오미(近江)·단바(丹波)·하리마(播磨)·빗추(備中) 등 4국에 명하여 견당사선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어 덴표 18년(746)부터 호키(寶龜) 연간(778) 사이에는 안지국(安志國)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6척의 견당사선이 건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조선 장인들이 대거 초빙되어 현지에서 거주하며 선박 제작을 감독하였고, 항해까지 담당하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842년 일본 승려 에운(惠運)이 당나라에 갈 때 사용한 선박은 중국인 이처인(李處人)이 히젠(肥前) 치카섬(値嘉島)에서 3개월에 걸쳐 제작한 것이었다. 862년 각여친왕(覺如親王)이 당나라로 갈 때는 중국 조선 장인 장문질(張文侄)이 당진(唐津) 부근 부백지도(附柏地島)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하였다. 같은 해 진여법친왕(眞如法親王)이 입당할 때는 중국의 유명한 조선·항해 전문가 장지신(張支信)이 히젠 마쓰우라군(松浦郡) 가시와섬(柏島)에서 감독하여 제작한 범선을 사용하였다. 당시 장지신, 전문습(全文習), 임중원(任仲元) 등 중국인들이 직접 타수(舵手)를 맡았고, 일본인 선원들에게 범 조종과 타 조종 기술을 전수하였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중·후기의 견당사선은 범(帆), 정(錠), 타(舵), 노(櫓)를 모두 갖추었으며 일본 학계는 이 시기 일본 해상 교류의 번성을 중국의 선진 범선 제작 기술과 항해술을 습득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당대(唐代)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은 격벽 구조의 도입과 종범(縱帆)[17]의

였다. 당시 일본은 중국에서 대량의 조선 장인들을 요청하였고, 중국의 장인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인들을 도와 선박 제조를 감독하고 아울러 조종까지 책임지게 하였다. 842년 일본 僧惠運이 당나라에 들어올 때 타고 온 선박은 중국사람 李處人이 肥前値嘉島에서 3개월간의 시간을 들여 제조에 성공하였다. 862년 일본의 覺如親王이 중국에 올 때 일본에 오래 거주한 중국 船匠 張文侄이 唐津 부근의 附柏地島에서 그를 위하여 선박 한 척을 제조하였다. 같은 해에 일본의 眞如法親王이 入唐할 때 타고 온 범선은 중국 당시의 유명한 조선과 항해 전문가 張支信이 일본의 肥前松浦郡 柏島에서 감독, 제조한 것이다. 이 선박이 출해한 후 眞如法親王은 중국 사람 장지신·全文習, 任仲元을 청하여 舵手가 되여 일본 선원 建部福成과 大島智丸 두 사람에게 帆을 조종하고 舵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게 하였으며 아울러 동해를 건너 직접 明州에 이르렀다. 중·후기의 견당사선에는 帆, 錠, 舵, 櫓가 모두 구비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당시 일본 해외교류가 흥성한 원인을 일본의 "商船이 중국 범선의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을 따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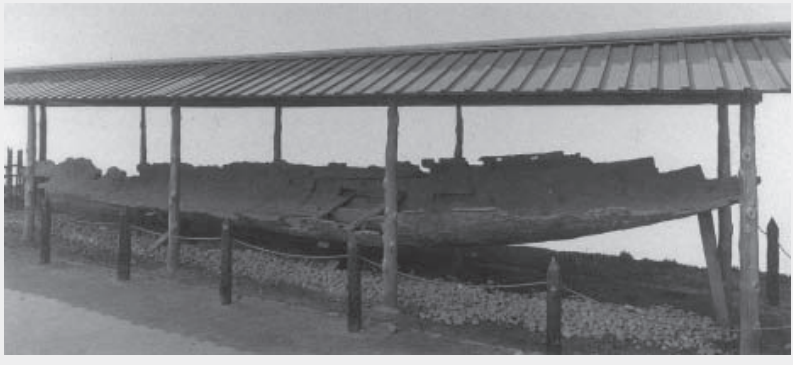
17 돛대의 한쪽 편에게만 전장(展張) 하는 돛. 일반의 요트나 스쿠너에 사용되는 돛으로 횡풍(橫風)·송풍(送風) 시의 항해 성능이 좋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용이다. 종범은 요트나 스쿠너의 돛과 유사하게 횡풍 및 순풍 항해에 유리한 장점을 지녔으며, 이러한 선진 기술이 아스카·나라시대 일본에 이미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 이후 오사카 시내의 이타치강(鼬川)·나마즈에강(鯰江川)·도요사토(豊里)·오이마자토(大今里)에서 복재고선(複材刳船) 4척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모두 앞과 뒤에 있는 통나무 부재를 서로 연결한 형태로, 선수·선미가 소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연대는 이타치강 출토선이 고훈(古墳훈)시대 혹은 나라시대, 나마즈에강·오이마자토 출토선은 고훈시대, 도요사토 출토선은 나라시대로 추정된다.

연결 구조를 보면, 도요사토 출토선을 제외한 세 척은 통나무 부재를 중앙부에서 결합·중첩하는 구조를 지녔다. 이때 결합 방식은 크게 나무못과 쇠못으로 구분되는데, 나마즈에강 출토선은 쇠못과 나무못을 병용하였고, 오이마자토와 도요사토 출토선은 쇠못만 사용하였다. 또한 선량(船梁)과 빗장을 설치하여 결구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타치강 출토선[18]에서는 길이 1.73m의 접합부에 두 개의 횡량(横梁)을 배치하고, 횡량과 바닥 사이에 굵은



〈그림 4〉 이타치강에서 출토된 복재고선

출처: 安達裕之, 1998, 『日本の船』, 船の科學館.

18 出口晶子, 2001, 『丸木舟』(ものと人間の文化史 98), 14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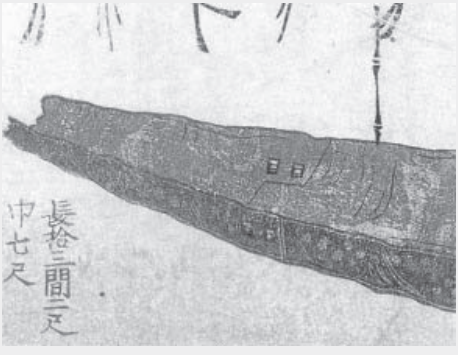
재료를 빗장처럼 끼워 단단히 조이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나아가 이타치강과 나마즈에강 출토선은 수밀을 위해 결합부에 나무껍질을 삽입한 흔적도 확인되었다(〈그림 4〉 참조).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로 추정되는 선박에 관한 기록 자료도 전해진다. 와판(瓦版: 에도시대에 찰흙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기와처럼 구운 인쇄판으로, 오늘날의 신문에 해당)과 단선회(団扇絵: 부채에 그린 그림) 등 최소 6종류의 자료가 확인된다. 또한 덴포(天保) 14년(1843년)의 『오와리 지방지(尾張志)』와 이듬해 간행된 『오와리 명소도회(尾張名所図会)』에서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오와리 명소도회』에서는 "녹나무로 만든 통나무배는 세 부분을 연결한 것으로, 이를 빗장으로 결합하였다"라는 구체적인 기술이 확인된다. 더불어 단선회에는 결합부에 두 개의 선량 구멍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선체 부재는 선수–중앙–중앙–선미의 4재(材) 구조로 결합되었으며, 그 결합 방식은 이타치강 출토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두 개의 횡량과 빗장에 의해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19](〈그림 5, 6〉 참조)



〈그림 5〉 모로쿠와촌(諸桑村)에서 복재고선이 출토되었을 때에 만들어진 단선회



〈그림 6〉 단선회에 그려진 모로쿠와촌의 복재고선의 결합부

출처: 安達裕之, 1998, 『日本の船』, 船の科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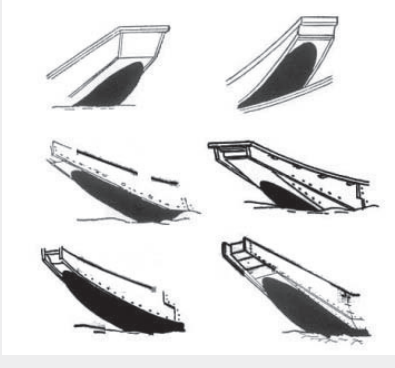
19 安達裕之, 1998, 『日本の船』, 船の科學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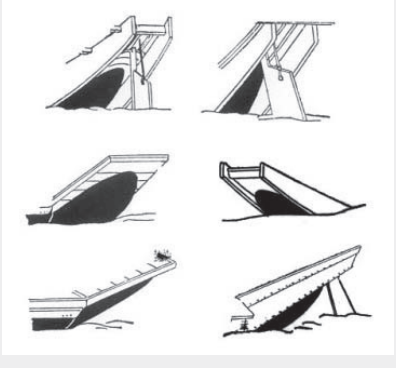
야마가타현(山形縣) 후지시마정(藤島町)에서는 나라·헤이안(平安)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주가 출토되었다. 길이는 11.5m이며, 삼나무로 제작되었다. 이 사례는 일본에서 통일신라 시대와 유사한 동시기까지 통나무배의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한편 헤이안시대와 가마쿠라(鎌倉)시대에는 894년 견당사의 폐지 이후 중국의 선진 조선 기술이 일본에서 빠르게 쇠퇴하였다. 그 결과, 제작 방식이 단순한 복재고주법(複材獨木舟法)이 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헤이안시대에는 귀족들의 하천 교통 수단으로 준구조선이 사용되었으며, 요도강(淀川) 지류 등에서 그 이용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기타노 천신 연기(北野天神緣起)』에 묘사된 다자이후(大宰府)로 유배되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管原道眞)를 태운 해선(海船)의 경우, 선수·선미·선저에 통나무 부재가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 통나무 부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마쓰자키 천신 연기(松崎天神緣起)』에 묘사된 유배선 역시 선미가 통나무 부재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며, 닻과 노의 구조 또한 명확히 보인다.

특히 현외(舷外)로 돌출된 들보에는 종통재를 놓아 '세가이(セガイ)'라고 불리는 외측 돌출부를 형성하고, 그 위에 발판을 설치하여 노를 젓는 방식이 묘사되어 있다. 에마키모노(絵巻物: 두루마리 그림)에 묘사된 선박들을 비교한



〈그림 7〉 중세 에마키모노에 그려진 선수



〈그림 8〉 중세 에마키모노에 그려진 선미

출처: 安達裕之, 1998, 『日本の船』, 船の科學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과, 현측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선저가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선수·선미가 곡면을 이루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에마키모노의 묘사를 근거로 이 시기 선박을 복재고선 또는 준구조선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7, 8〉 참조).

9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해선(海船)은 대형이라 하더라도 적재량이 약 300석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엔큐(延久) 4년(1072) 고산조(後三条) 천황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 센지마스(宣旨枡: 가마쿠라 시대까지 공적으로 통용된 저울의 무게 단위)에 따른 것으로, 에도시대 공인 저울로 환산하면 약 200석, 즉 적재중량 약 30톤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박 규모는 당시 일본의 국내 해운에서 이 이상의 대형 선박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산림자원이 풍부했던 일본의 환경적 특성상, 건조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준구조선이 국내 수송용 선박으로 선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헤이안시대의 일본어 어휘 해설 사전인 『와묘쇼(和名抄)』에는 "가늘고 긴 배를 히라타(平田)라 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히라타는 현측(舷側)이 낮고 길게 제작된 선형으로, 앞서 검토된 복재고선의 외형적 특징을 잘 반영한다. 이러한 배는 하천뿐 아니라 연안의 물자 운송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귀족들의 신사 참배용으로는 호화로운 선실을 설치하여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다카노(高野)나 구마노(熊野) 지역 참배와 관련된 기록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헤이한키(兵範記)』, 『교쿠요(玉葉)』와 같은 귀족 일기 및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신사·사찰 참배용 선박을 '니가와(二瓦)[20]'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선저의 통나무 부재를 두 개 결합한 배, 곧 선수-동(胴)-동-선미로 이루어진 4재 구조의 복재고선을 가리킨다.

헤이안시대와 가마쿠라시대에 나타나는 선박의 구조는, 선수와 선미를

20 平安·鎌倉시대의 배로, 船底 몸통(胴) 부분을 세로로 결합한 두 개의 통나무로 만든 刳船. 당시, 대형 천선(川船)을 가리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어 올린 3재 구성의 선저 위에 1~2단의 현측판을 부착한 형태였다. 상부에는 보강을 위해 다수의 선량, 양측 외판 사이를 가로질러 수압을 지탱하는 들보를 설치하였다. 적재 공간은 주로 선수 쪽에 마련되었으며, 선미 쪽에는 2~3칸 규모의 판자 선실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선실의 양간(梁間: 기둥 사이의 거리)을 살펴보면, 당시 준구조선의 폭이 결코 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선의 경우 선미에 별도의 키잡이용 작은 선실을 두기도 하였다.

14세기 전후 중국의 고고학적 선박 출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시(泉州市) 허우주항(後渚港) 유적: 1974년 8월 남송 말기의 해선(海船)이 발굴됨.

Ⓑ 허베이성(河北省) 츠현(磁縣) 난카이허(南開河) 장하고도(漳河故道) 유적: 1975년 원대(木船) 목선 6척이 출토됨.

Ⓒ 상하이시(上海市) 자딩현(嘉定縣) 우쑹강(吳淞江) 유적: 1978년 송대 강선(江船)이 확인됨.

Ⓓ 톈진시(天津市) 징하이현(靜海縣) 위안멍커우(元蒙口) 운하 유적: 1978년 북송 말기의 강선이 발견됨.

Ⓔ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 둥멍커우(東門口) 펑화강(奉化江) 유적: 1979년 고대 해운부두 유적지에서 송대 해선이 출토됨.

Ⓕ 산둥성 펑라이시(蓬萊市) 펑라이수이청(蓬萊水城) 유적: 2005년 14세기 중·후반 목선 4척이 발굴되었는데, 이 중 2척은 중국, 2척은 고려 선박으로 확인됨.

Ⓖ 산둥성 펑라이현(蓬萊縣) 펑라이수이청 서남[西南, '샤오하이(小海)'라 불림] 유적: 1984년 원대 후기의 전선이 출토됨.

Ⓗ 우리나라 전남 신안군 방축리 유적: 1976~1984년 사이 발굴된 원대 무역선(신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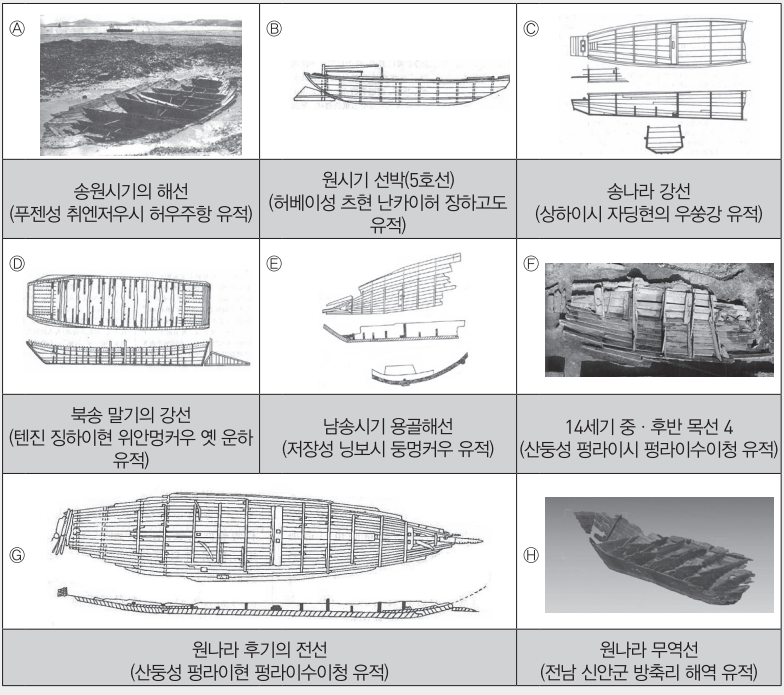
또한 1987년 광둥성(廣東省) 양장(阳江) 해역에서는 남송시기의 상선인 남해1호(南海1号)가 발견되었고, 2007년 정식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13~14세기 중국과 주변 해역에서 해상 교역과 군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활동에 사용된 다양한 유형의 선박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며,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한다.[21](〈그림 9〉 참조)

푸젠성 취안저우시 허우주항 출토 남송 말기의 해선, 저장성 닝보시 둥멍커우 평화강 출토 송대 해선, 전남 신안군 방축리 해역 출토 원대 무역선, 산둥성 펑라이시 펑라이수이청 출토 14세기 중·후반 목선 등은 모두 첨저형(尖底型)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 선박은 공통적으로 용골, 익판, 늑판, 격벽, 연결 보강판, 사행늘골, 스티프너(Stiffener), 두 대 이상의 돛대, 이중 외판 구조 등을 구비하였다. 또한 수밀에는 오동나무 기름과 석회, 삼을



〈그림 9〉 중국 남송 · 원나라 출토 고고학적 자료

출처: 홍순재, 2024, 『한선 연구』, 민속원, 336쪽.

21 王冠倬, 2000, 앞의 책, 99~16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죽한 재료로 틈을 메운 후, 쇠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상하이시 자딩현 우쑹강 부근에서 확인된 송대 강선, 톈진시 징하이현 위안멍커우 출토 북송 말기의 강선, 허베이성 츠현 난카이허 장하고도 출토 원대 목선 등은 평저형(平底型) 구조를 지닌 강선이다.

이들 강선은 여러 개의 세로형 선수재를 서로 접합한 구조와 격벽을 갖추었으며, 부재의 결구에는 철정(쇠못)을 사용한 특징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22]

이상과 같이 중국과 일본의 통나무배를 비롯한 선박 발전 양상을 14세기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중국의 경우, 통나무배는 춘추전국시대 이후 이미 목판선(板船)의 구조가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작되었다. 그러나 통나무배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14세기 송·원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판재식 구조선으로 발전하였다. 진도선의 건조 시기가 원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구조를 지닌 선박은 현재까지 중국 고고학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통나무배의 역사를 방대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풍부하다. 조몬(繩文)시대 출토선에서 시작하여 아스카·나라시대에는 반구조선이 등장하였고, 헤이안·가마쿠라시대에는 준구조선에서 복재고선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일본 선박의 발전 단계 및 유형과 진도선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진도선은 중국의 선박 유형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선박 발전 유형과 더 큰 유사성을 보인다.

아울러 동시기의 중국, 일본의 고고학적 자료와 통일신라시대 출토 선박(안압지선, 영흥도선)을 비교해 보면, 구조적 특징에서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진도선의 구조적 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다.

---

22 王冠倬, 2000, 위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연구에서 중국·일본의 고선박 자료를 검토한 목적은 단순한 자료 소개가 아니라, 진도선과의 구조적 비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비교 기준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저 구성 방식(단일재·복수재 결합 여부), 두 번째는 격벽의 존재와 배치 방식, 세 번째는 방현재·현측판 결구 방식, 네 번째는 철정·동유회 등 결합 수법의 사용 여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의 통나무배는 진도선과 구조적 단계가 상이하고, 일본의 준구조선·복재고선은 진도선과 구조 구성 및 결합 방식에서 더 높은 대응성을 보인다.

Ⅳ. 진도선의 구조와 성격 재해석

1. 잔존 선체편의 구조적 특징

진도선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거대한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U'자형 반원형 본체를 갖춘 점이다. 현존하는 본체는 중앙재와 선미재로 확인되는데, 중앙재의 모서리 부분에서 선수재와 연결되었던 흔적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 선저 본체는 선수, 중앙, 선미의 3재(材)가 연결된 복합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재 내부에는 격벽, 돛대, 상부 구조물과 연결하기 위한 철정 자국과 동유회 흔적이 확인된다. 격벽의 경우 본체와 선미재에서 Ⅰ~Ⅵ격벽의 흔적이 나타나며, 특히 중앙재와 직접 연결된 Ⅲ격벽 전면에는 돛대 받침인 장좌가 부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Ⅱ격벽 후면의 선미부 방향 벽면에는 구조물 설치를 위한 사각 홈턱이 대칭적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선수부에 가까운 Ⅵ격벽 후면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확인된다(〈표 1〉 참조).

선미재 또한 철정의 흔적과 동유회가 관찰되어, 선미부에도 격벽이 설치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종합하면 진도선에는 최소 7~8개의 격벽이 존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체의 결합 구조에서는, 반원형 곡면에 맞추어 2재의 늑재가 가로 방향으로 보강되어 있다. 선미 늑재는 본체와 선미재의 결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턱이음된 결합부로의 침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격벽과 늑재의 사용은 진도선이 단순한 독목주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 부재를 갖춘 선박이었음을 입증한다.

진도선의 격벽은 앞뒤에서 철정을 박아 고정하고, 동유회를 발라 수밀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격벽 구조는 선체의 강도를 보강하고 침수 발생 시 침몰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로서 기능한다. 선수 후면에 위치한 제Ⅵ격벽이 17cm로 가장 두꺼우며, 돛대 받침 뒤편에 설치된 격벽은 13cm이다. 제Ⅲ격벽을 기준으로 후방에 위치한 제Ⅰ·Ⅱ격벽은 각각 8cm, 전방의 제Ⅳ·Ⅴ격벽은 각각 약 10cm의 두께를 보인다. 격벽 간 간격, 즉 선창의 간격은 선미창과 선수창을 제외하면 약 2.25~2.45m 정도이다.

격벽은 본체를 지지하는 동시에 선창을 구획하고, 파손이나 침수 시 배 전체의 침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격벽 하부에 뚫린 삼각형 수안(水眼, 배수 구멍)은 배수 기능을 가지며, 구간 내 물이 차오를 경우 반대편 수안을 막아 인접 선창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동유회는 중국 선박 건조에서 사용된 수밀재로, 배 내부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를 메우는 데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좌선(安佐船)에서 석회를 사용한 수밀 구조가 확인된 바 있다.



〈그림 10〉 진도선 본체의 결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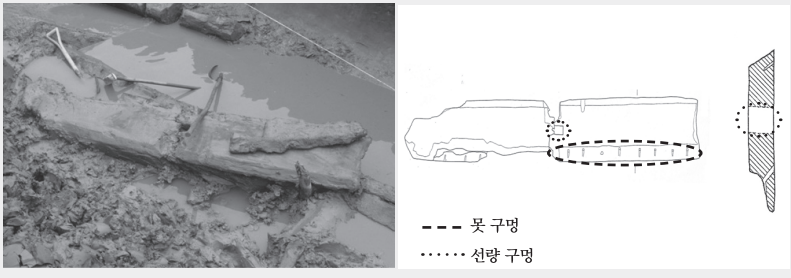
출처: 국립해양유물보존처리소, 1993,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현재는 중앙재 좌우 현측 상면에 설치된 부재로, 발굴 당시에는 좌현부만 잔존하였다. 단면은 역삼각형 형태로 선현 윗부분과 평행을 이루며, 중앙부에서 가장 넓은 폭이 약 33cm이다. 전·후미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면서 선미재·선수재와 원만하게 연선(緣線)을 형성하도록 제작된 구조이다.

방현재에는 세 줄의 못 구멍이 확인된다. 중앙재와의 결구는 약 45° 각도로 상면에서 비스듬히 타정한 못과, 측면 하단의 얇은 부분에서 직각으로 타정한 못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면의 못 머리 부분은 동유회로 밀봉되어 있으며, 측면 상부에도 못 구멍이 남아 있어 다른 부재를 방현재에 결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못 자국 주변이 연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은, 발굴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현재에 별도의 부재가 덧대어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현재는 선체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구조적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판은 발굴 당시 '기타 선편-1'로 분류된 부재로,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편이다. 〈그림 11〉과 같이 넓고 두꺼운 판목 형태를 띠며, 중앙부에는 사각 관통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양변에는 여러 개의 못 구멍이 분포하는데, 한쪽 모서리에는 인접 부재와의 결구 흔적이, 다른 모서리에는 추가 결구를 위한 관통 못 구멍이 확인된다.[23]



〈그림 11〉 외판의 구조(발굴 보고서에 용도 미상으로 분류된 선체편)

출처: 홍순재, 2009, 「진도선의 구조와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홍순재, 2009, 「진도선의 구조와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돛대 받침인 장좌는 제Ⅲ격벽 전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저부 중앙에는 다른 격벽과 마찬가지로 삼각형 수안이 마련되어 있다. 장좌의 높이는 후방 제Ⅲ격벽보다 약 13cm 낮게 위치한다. 상면은 평평하며, 2개의 사각 장각공이 뚫려 있다. 두 공(孔) 사이의 간격은 38cm로, 선체 중심 축선과 일치하지 않고 좌현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은 진도선이 단순한 통나무배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선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용도 미상으로 분류되었던 외판 선체편의 못 자국과 방현재 못 자국의 간격 치수가 정확히 일치하여, 해당 부재가 방현재 상연 바깥쪽 모서리에 부착되었던 외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판 선체편 중앙의 사각 관통구멍은 좌우 현측 외판을 지지하는 횡강력 구조로 해석된다.

진도선은 발굴 당시 중국 수대(隋代)의 쌍체 독목주와 유사한 구조로 해석된 바 있다. 그러나 쌍체 독목주의 방현재가 단순히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진도선의 방현재는 선체 보호 기능뿐 아니라 그 위에 상부 구조물을 얹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특히 방현재 측면에서 확인된 결구 흔적은 다른 부재가 결합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따라서 진도선의 방현재를 단순한 보강재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복합적인 기능 부재로 보아야 한다.

외판에서 재해석된 선량 구조는 한국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횡강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량은 단순히 외판을 지지하는 횡강력 부재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돛대를 고정하거나 돛줄을 지탱하며, 나아가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을 갖는다.

실제로 고려와 조선 시대 출토선에서도 외판에 사각형 구멍을 뚫고 가룡목을 끼워 외판의 벌어짐과 수축을 조절하는 방식이 확인된다. 이러한 선박 건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진도선 외판에서 확인된 선량 역시 좌우 외판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돛대 및 돛줄을 효과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돛대 받침(장좌)은 본체 상부면과의 높이 차이가 불과 28cm이다. 이처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낮은 구조에서는 돛대를 고정하기 위한 지주대(구레짝)를 직접 세우기 어렵다. 따라서 돛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가룡, 차가룡, 멍에와 같은 보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서도 돛대 부근 상판에 이와 같은 보조 구조를 설치하여 돛대를 지지한 사례가 확인된다. 진도선 역시 선량 구조가 바로 이러한 돛대 지지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진도선 구조가 고도의 기능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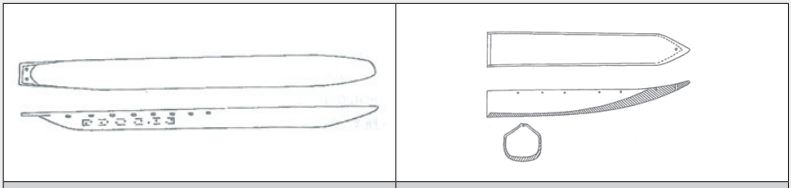
2. 진도선의 구조적 성격

진도선은 선사시대 이래 단일재(單一材)로 제작된 통나무배보다 훨씬 발달한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 탄소연대 측정 결과 13~14세기(1260~1380년)에 건조된 구조선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를 통나무배의 일종인 독목주(獨木舟)·고주(刳舟)로 규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김재근은 진도선을 대형 통나무배로 분류하면서, 중국 춘추·전국시대 및 한대의 고고학적 실증자료인 통나무배나 쌍체 독목주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구조적 성격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 중대한 한계를 지닌다. 진도선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의 고고학적 자료들[1983년 장쑤성 이싱시(宜兴市) 주탄촌(周潭村), 1958년 장쑤성 우진현(武进县) 옛 옌청시(盐成市) 유적, 1970·1975년 연강 출토 통나무배 등]은 모두 단순 통나무배에 해당한다. 이들은 격벽, 늑재, 철정 결구, 복합적인 상부 구조 등을 갖춘 진도선의 복합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교군이 될 수 없다. 반면, 김재근은 일본의 준구조선으로 분류되는 선박들과 진도선의 구조적 유사성을 충분히 지적하지 못한 채, 조몬시대부터 가마쿠라시대에 이르는 독목주 및 준구조선의 사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진도선은 단순한 독목주가 아닌, 격벽, 방현재, 외판, 철정 결구 등의 복합 부재를 갖춘 완전한 의미의 구조선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장쑤성 이싱 주탄촌 유적 출토 통나무배 | ② 장쑤성 우진현 옛 옌청 유적 출토 통나무배

〈그림 12〉 중국 춘추시대 고고학적 실증 통나무배

출처: 王冠倬, 2000, 『中國古船图谱』, 三聯書店; 席龍飛, 2000, 『中國造船史』, 湖北教育出版社.

발굴된 통나무배는 주로 춘추전국시대부터 서한과 동한에 이르는 시기의 유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대(漢代)에 이르면 통나무배를 넘어 보다 발달한 구조선을 보여 주는 모형 선박이 분묘(墳墓)에서 출토되고 있다. 1956년 중국 광저우(廣州) 서한 고분에서 출토된 길이 80cm의 목제 배 모형과, 1955년 동일 지역 동한 무덤에서 출토된 목제 및 도제(陶製) 배 모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모형선은 노와 타 등 조선구(操船具)를 완비하고 있어, 실제 선박 규모로 환산하면 약 20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례는 진·한대에 이르러 중국 선박이 이미 통나무배 단계를 지나 구조선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즉, 중국 선박은 단순한 독목주에서 구조적 체계를 갖춘 선박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진도선의 경우 보수공에서 출토된 동전 8점이 건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이들 동전의 주조 연대는 '원대'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도선의 건조 시기를 14세기로 특정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선박이 이미 통나무배 단계를 벗어난 지 수백 년 후의 시점에 진도선이 건조되었음을 의미한다.

14세기는 중국 조선 기술이 이미 통나무 구조를 벗어나 격벽, 철정 결구 등을 갖춘 정교한 구조선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발달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선박을 단순 통나무배로 규정하는 것은 기술사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도선은 일부 선사시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및 한대 통나무배 자료와의 단편적이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비교에 의존하여 통나무배로 간주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일본의 조선술 발전 과정은 진도선의 구조적 성격을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비교 근거를 제공한다. 일본은 조몬시대부터 가마쿠라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나무배에서 단재고주, 준구조선, 복재고선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몬 전기에 해당하는 약 5500년 전의 통나무배가 지바현(千葉縣)과 후쿠이현(福井縣)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고훈시대에는 단일재로 제작된 단재고주가 확인된다. 이후 고훈시대에는 2재 이상을 결합하고 턱붙이 연결 방식과 철정을 사용한 복재고선이 등장하였다. 오사카시 나마즈에강과 나니와구(浪速區) 출토 선박이 대표적이며,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 주형토기는 통나무배 단계에서 벗어나 대형 구조선으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의 준구조선을 명확히 보여 준다.

진도선은 배밑을 녹나무로 파낸 3재를 연결하고 상부에 격벽, 돛대, 선실 등 복합적인 부재를 얹은 구조인데, 이는 일본의 복재고선 및 준구조선과 밀접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더불어 『호넨상인행장회사(法然上人行狀繪詞)』, 『기타노 천신 연기』, 『마쓰자키 천신 연기』 등 가마쿠라시대(12~14세기)의 문헌 및 회화 자료와, 동시기의 통나무배 발굴 사례 5척이 진도선과 구조 및 형태 면에서 유사성을 한층 더 확실히 뒷받침한다.

진도선은 일본의 회화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완전한 구조를 갖춘 준구조선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본체·선수·선미의 3재가 쇠못으로 고착되어 연결된 점, 돛대 받침 상부에 시설된 2개의 사각 홈을 통한 돛대 구조, 본체 외부 상부면과 연결되는 현측판, 외판과 외판 상부의 부재 흔적 등은 진도선이 구조선을 갖춘 선박임을 입증한다. 발굴 당시 확인된 잔존 규모는 길이 16.85m, 너비 2.34m이며, 복원 추정 시 전체 크기는 길이 약 20m, 너비 4m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선박은 직경 2m 이상, 길이 25~30m에 이르는 거목을 재료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조와 규모만으로도 진도선을 단순 통나무배가 아닌 준구조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선박 연구자 신위안어우(辛元歐)[24]는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에서 출토된 주형토기를 근거로, 일본 복재고주의 발전 시기를 야요이(彌生)시대 후기로 규정하였다. 대형선 건조 과정에서 한두 개의 통나무를 파낸 뒤 선수와 선미를 연결하여 복재고주를 제작하고, 이후 본체 현측면에 방현재를 부착하여 파랑을 막고 폭을 넓혔으며, 다시 선량을 설치해 좌우 현측을 지탱하는 방식이 확인된다. 이는 곧 복재 결합에 기반한 준구조선 건조법으로 이해되며, 진도선의 3재 연결, 방현재, 선량 구조는 이러한 일본 선박 발전 유형과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함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일본의 조선 기술은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 동안 견수사 및 견당사 파견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진 기술을 수용하며 발전했다. 그러나 894년 견당사 폐지 이후 중국 조선 기술의 영향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제조 방식이 단순화된 복재고주법이 다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 헤이안시대와 가마쿠라시대에 이르러 대형 복재고선이 건조되어 활발히 활용되었다. 중국 선박 연구자가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복재고주의 준구조선법은 이미 세토 내해(瀨戶內海)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 기술로 자리 잡았다. 이 점은 진도선의 준구조선적 성격과 건조 시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술사적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보수공은 중국 저장성 이남, 즉 푸젠성 연안 일대에서 흔히 확인되는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공은 선박의 안전과 무사를 기원하는 장치로, '압사취승(壓邪取勝)'의 의미를 담아 '압승공(壓勝孔)'이라고도 불린다.[25] 조선 기술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조선 기술을 수용하여 선박을 건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수공의 기능 또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공들이 선박 제작 과정에서 안전과 무사를 기원하며 다양한 신을 모시고 고사를 지내는 행위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관행이기 때문이다.

---

24 辛元歐, 1997, 앞의 글.

25 국립해양유물보존처리소, 1993,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의 화폐 연구자인 사쿠라기 신이치(櫻木晋一)는 중국 동전의 유입과 일본 경제 활동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2세기 후반 이후 일본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화폐가 필요해졌으며, 중국 선박을 통해 대량의 동전이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1215년과 1270년이라는 두 차례의 집중적인 유입 시기가 확인되며, 이 시기 이후로는 거의 매년 대량의 중국 동전이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14세기 전반에 침몰한 신안선 역시 이러한 중국 선박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26] 사쿠라기는 14세기 전반에 침몰한 신안선 역시 이러한 중국 동전 운송 선박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진도선의 건조 시기(13~14세기)와 중국 동전이 활발히 유입된 시기가 일치하는 이러한 사실은 당시 동아시아 해상 교류가 매우 활발했음을 방증한다.

진도선에서 출토된 동전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중국과 일본에서 발굴된 화폐의 종류별 출토량을 비교 분석하면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중국에서는 원통통보(元通通寶)가 가장 많이 출토되며, 황송통보(皇宋通寶)는 세 번째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황송통보가 가장 많고, 원통통보가 그 뒤를 잇는다. 일본에서는 화폐의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녔으며, 중앙의 구멍을 통해 100매씩 끈으로 꿰어 묶은 뒤 '민전(綿錢)'이라는 단위로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화폐 유통 양상은 중국 화폐 사용 시기와 조선술의 전래 시기를 고려할 때, 동일한 시기에 중국 조선공의 기술과 일본 선공의 기술이 상호 접촉·혼합되어 준구조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신안선 출토 동전의 용도와 성격」, 『신안선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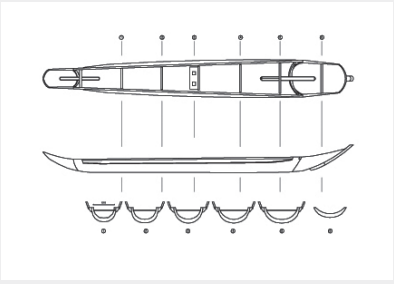
〈표 2〉 진도선에서 출토된 동전

번호	종류	주조시대(鑄造時代)	직경	중량	서체(書體)	비고
J-1	지도원보(至道元寶)	송(宋) 태종(太宗) 지통연간(至通年間)(995~997)	2.5㎝	4.3g	해서(楷書)	회독(回讀), 무배지(無背字)
J-2	성평원보(成平元寶)	송(宋) 진종(珍種) 성평연간(成平年間)(998~1003)	2.4㎝	2.4g	해서(楷書)	회독(回讀), 무배지(無背字)
J-3	상부통보(祥符通寶)	송(宋) 진종(眞種) 상부연간(祥符年間)(1008~1016)	2.6㎝	2.9g	해서(楷書)	회독(回讀), 무배지(無背字),
J-4	황송통보(皇宋通寶)	송(宋) 인종(仁宗) 보원(寶元) 2년(1039)	2.5㎝	2.7g	예서(隸書)	대독(對讀), 무배지(無背字)
J-5	황송통보(皇宋通寶)	송(宋) 인종(仁宗) 보원(寶元) 2년(1039)	2.5㎝	3.9g	예서(隸書)	대독(對讀), 무배지(無背字)
J-6	원풍통보(元豊通寶)	송(宋) 신종(神宗) 원풍연간(元豊年間)(1078~1085)	2.6㎝	3.2g	전서(篆書)	회독(回讀), 무배지(無背字)
J-7	대관통보(大觀通寶)	송(宋) 휘종(徽宗) 대관연간(大觀年間)(1107~1110)	2.5㎝	1.9g	해서(楷書)	대독(對讀), 무배지(無背字)
J-8	정지통보(政知通寶)	송(宋) 휘종(徽宗) 정지연간(政知年間)(1111~1117)	2.5㎝	2.7g	전서(篆書)	대독(對讀) 무배지(無背字)

3. 진도선 추정 설계 및 가상 복원

이 연구는 진도선의 훼손되거나 유실된 구조와 형태를 추정하고 가상적으로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작업으로 작성된 도면을 CAD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설계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 도면 작성을 위해 발굴 보고서에 수록된 실측 도면과 잔존 선체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동일한 치수와 구조적 특징을 기초 자료로 삼아 기본 도면을 작성하였다(〈도면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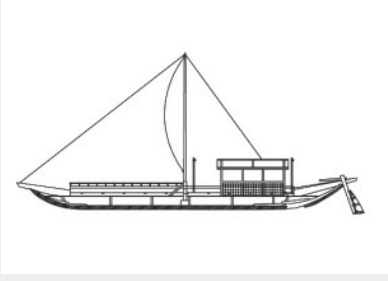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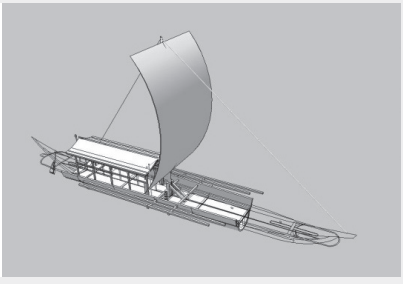
〈도면 1〉 배면, 측면, 각 구간 단면도



〈도면 2〉 중앙단면도



〈도면 3〉 측단면도



〈도면 4〉 선형 추정도

이어 기본 도면을 바탕으로 문헌 자료, 회화 자료, 동시기 발굴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선체의 구상도를 설계하였다. 이 구상도를 기반으로 측면도, 단면도, 평면도, 측단면도 등의 상세 도면을 도출하였다(〈도면 2~9〉 참조). 이러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2D 및 3D 모델링 설계도가 완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도선의 전체 형태를 입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CAD 복원 과정은 발굴 보고서 실측도면을 1:1 비율로 디지털화하고, 부재별 단면 치수와 못 자국·홈턱 등 결구 흔적을 기준으로 3D 형상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부재 간 결합은 턱이음·빗턱·철정 결합의 위치를 기준으로 복원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이후 제작된 $\frac{1}{5}$ 축소 모형은 동일한 결구 방식과 목재 방향성을 재현하여 구조적 안정성, 가공 특성, 하중 반응 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복원 모델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단계로 기능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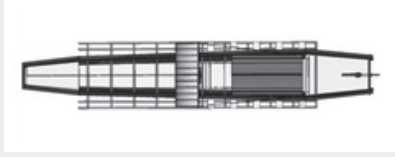
〈도면 4〉 3D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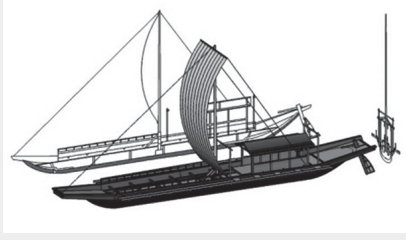
〈도면 5〉 3D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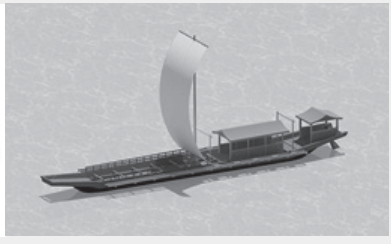
〈도면 6〉 3D 저부 평면도



〈도면 7〉 3D 평면도



〈도면 8〉 3D 상세도



〈도면 9〉 3D 이미지

4. 축소 모형제작 실험 결과

진도선의 구조적 형태와 기능적 특성을 규명하고, 재질인 녹나무의 가공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rac{1}{5}$ 축소 모형제작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진도선의 설계 추정도를 기반으로 하여, 본체를 중앙재·선미재·선수재로 구분하고, 주재료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약 60~80년생의 녹나무를 사용하였다. 목재의 길이는 400cm, 직경은 60∅ 내외로 하였다. 그 외 부속 부재(방현재, 격벽재, 장좌, 선미연결재, 외판, 기타 부재) 등에는 잣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연결에 필요한 결구 못은 쇠못을 사용하였다. $\frac{1}{5}$ 축소 모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작 실험 순서는 본체, 격벽, 방현재 및 외판, 돛대, 횡량 순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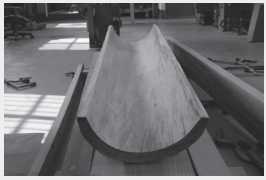
본체 중앙재의 수종은 녹나무로, 섬유조직이 일정하지 않고 방향성이 불규칙하여 가공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실험 결과, 섬유 방향을 따라 속을 파낼 경우에는 비교적 가공이 용이하였으나, 반대 방향으로 파내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섬유 결이 갈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녹나무는 내부의 수분 함수율이 높고, 생재 상태에서 변형이 쉽게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함수율이 약 20% 내외인 재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그러나 제작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속을 파내는 과정에서는 불이나 열기를 이용한 열건조(熱乾燥) 가공법을 병행해야 했다. 이와 같은 가공 방법은 동아시아, 특히 베트남 내륙지역의 전통 통나무배 제작 기술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이는 재료 내부의 응력을 완화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 기술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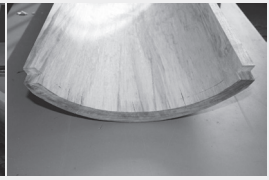
중앙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도면에 근거하여 선수재와 선미재를 순차적으로 제작하고, 중앙재의 접합(Fitting) 부위와 선미재의 장부(Tenon) 부위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합면은 인위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하게 가공하였으며, 부재 간 접촉면의 밀착도를 높여 수밀성과 강도를 확보하였다.

결합 실험의 결과 중앙재와 선미재가 맞물린 부위는 내부 응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적 안정성을 나타냈다. 이는 진도선이 항해 시 하중의 분산과 구조적 변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체형 결합 구조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재를 중심으로 한 선체 구조가 단순한 통나무배 형태를 넘어, 복합적 구조를 지닌 체계적 구조였음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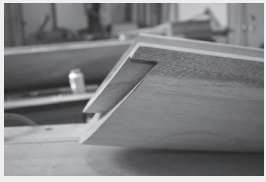
격벽재의 모형제작 실험을 통해 진도선 격벽의 형태는 단판으로 제작된 직립형 구조이며, 상부는 평형하고 하부는 선체의 곡면 곡률에 맞추어 정밀하게 가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벽에는 약 9×9cm 크기의 삼각형 수안(배수 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격벽의 폭은 약 1.5m, 두께는 평균 13cm이며, 본체 상부 면보다 15cm 낮게 설치되어 상층부에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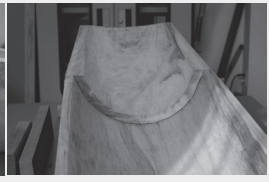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3〉 내부 속을 파낸 중앙재의 형태


〈그림 14〉 이음부 형태


〈그림 15〉 선수재 결합 구조 형태


〈그림 16〉 선수재 측면 결합 구조 형태


〈그림 17〉 선수재와 중앙재 결합 형태


〈그림 18〉 선수재 결합 구조 형태

재를 설치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선체 전체의 응력 분산과 횡방향 지지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격벽 간 간격은 약 2.25~2.45cm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선수재과 선미재을 제외한 내부 구획을 균일하게 분할함으로써 내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앞서 서술했듯이 진도선의 격벽이 단순한 칸막이 역할을 넘어 침수 방지와 배수 조절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점이다. 격벽 하단에 배치된 9×9cm 크기의 삼각형 수안은 평상시 선저에 고인 물을 흘려보내는 배수 기능과 특정 구획에 물이 차오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반대편의 수안을 막아 침수가 다른 선창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능동적인 수밀 격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전통 선박인 동유회의 사례와 비교할 때 진도선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 준다. 동유회 방식이 선체와 격벽 사이를 연결 지점을 메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야 했던 것과 달리, 진도선 격벽은 별도의 구태의연한 밀폐 작업 없이도 침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진도선 격벽 구조가 수밀 기능과 구획을 통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9〉 방현재 고착 형태

하여 공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독자적인 선박 건조 기술의 성과임을 시사한다.

방현재는 단순히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상부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측면에 확인된 타입된 못 자국과 구멍의 흔적은 상부 구조물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출토된 선체편의 도면 분석 결과, 방현재의 못 자국 및 구멍 간 간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근거한 모형제작 실험에서는 방현재 상부에 외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검증되었다.

용도 미상으로 확인된 외판의 구조적 특징은 선체 구조의 복원과 선형 분류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외판에 시설된 추가 구조물의 설치 흔적은 진도선이 단순히 통나무배가 아닌 구조선의 형태를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외판에서 확인된 추가 구조물은 외판을 잡아 주는 구조물과 관련이 깊다. 외판 중앙의 홈은 들보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들보는 외판의 좌우를 잡아 주어 선체의 횡강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형제작 실험을 통해 외판에 들보를 올린 형태를 재현함으로써, 상기 부재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외판의 홈에 들보가 견고하게 결합되는 구조는 이 연구에서 진도선을 통나무배가 아닌 구조선으로 보



〈그림 20〉 외판 제작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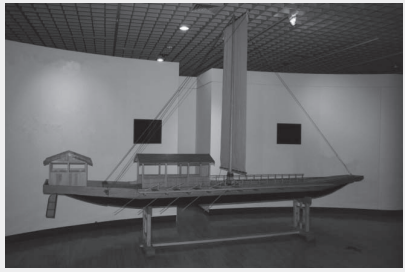


〈그림 21〉 방현재와 외판 접합 형태



〈그림 22〉 좌우 방현재와 외판 형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23〉 진도선 $\frac{1}{5}$ 추정 모형

아야 한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외판의 홈과 부재 결합 흔적은 선체가 여러 부재로 조립된 조립식 선체 구조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체 중앙부의 횡강도를 확보하고, 추진 장치(노)를 안정적으로 거치하기 위한 체계적 조선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선형은 『기타노 천신 연기』에 묘사된 선박의 외판 구조와 외판 중앙부의 홈 형식을 비교할 때, 진도선에서도 1~2단의 외판 정리 구조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도선은 선체 보강재와 상부 구조물을 갖춘 대형 구조선이었음을 실험적·고고학적으로 실증하였다.

Ⅳ. 결론

이 연구의 구조 비교 결과에 따르면, 진도선은 단순한 통나무배가 아니라 통나무와 판재가 결합된 복합 구조선을 지향한 선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적 성격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이루어진 기술 교류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 특정 지역의 기술만을 반영한 단일한 유형이 아니라 중국·일본·한반도의 조선 요소가 중층적으로 작용한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기존 연구는 격벽·장좌·철정·동유회·보수공·수종 등 개별 요소를 근거로 진도선을 중국계 통나무배로 규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구조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용도 미상으로 분류되었던 선체편을 외판으로 재해석하고, 외판 중앙의 홈을 선량 설치 구조로 확인함으로써 상부 구조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진도선이 하부 통나무만으로 규정되는 단순형 선박이 아니라 상·하부 구조가 결합된 준구조선 혹은 구조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좌의 존재 역시 구조선에서 나타나는 돛대 지지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진도선이 항해 기능을 전제로 설계된 선박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상부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나무배로 규정했던 한계를 지적하며, 발굴 유구 전반의 구조적 상관성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첫째, 격벽·장좌·동유회 등 중국적 요소가 확인되지만, 본체와 선미의 결합 구조는 일본 헤이안~가마쿠라 시대 준구조선·복재고선과 더 높은 대응성을 보인다. 둘째, 보수공과 출토 동전은 중국적 요소로 보이나, 당대 동아시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교역의 관행 속에서 이해해야 하므로 특정 지역 기원을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셋째, 녹나무 수종은 중국 남부, 일본 규슈, 한국 제주에 모두 분포하며, 송대 이후 중국에서는 통나무 기반 구조선 자체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수종만으로 제작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진도선은 통나무를 기초로 하되 외판·방현재·격벽·장좌·선량 등 여러 구조 부재가 체계적으로 결합된 복합 구조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조적 특징과 결합 방식은 일본 중세 선박과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나, 이는 기술 전승·교류·수렴 발전 등 다양한 경로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적을 단정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기술 융합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진도선은 중세 동아시아 해역에서 작동한 기술·문화 교류의 복합성과 조선 기술의 상호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연구가 제시한 구조 분석과 비교 고찰은 진도선의 기술적·역사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동아시아 선박사 연구에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강봉룡, 2007,「진도벽파진의 고·중세 해양도시적 면모」,『해양사와 해양문화』, 학연문화.

국립해양유물보존처리소, 1993,『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신안선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2007 국제학술대회.

홍순재, 2009,「진도선의 구조와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24,『한선 연구』, 민속원

席龍飛, 2000,『中國造船史』, 湖北敎育出版社.

辛元歐, 1997,「日本 古代 造船技術的發展的論」,『船史硏究』10期.

王冠倬, 2000,『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高島徹, 1989,「長原古墳群」,『日本古墳大辭典』, 株式会社東京堂出版.

藤家禮之助, 1982,『日中交流二千年』, 北京大學出版社.

須藤和一, 1968,『船』(ものと人間の文化史 1), 法政大學出版局.

柴田惠司, 1995,『古代日本の船とその周邊』,『船史硏究』8期.

安達裕之, 1998,『日本の船』, 船の科學館.

天野末喜 編, 1989,『岡古墳-古市古墳群の調査硏究調査報告1-藤井寺市文化財調査報告第5集』, 藤井寺市敎育委員会.

出口晶子, 2001,『丸木舟』(ものと人間の文化史 98), 法政大學出版局.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2019年秋の特別展〉しきしまの大和へ-アジア文華往来-特別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91년과 1992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벽파진 수로에서 발굴된 '진도선(珍島船)'에 대해 기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중국 통나무배' 해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발굴 당시의 선체편 실측 자료, 보고서, 유물 실견 결과, 그리고 중국 및 일본의 고고학적 실증자료를 토대로 진도선이 통나무배가 아닌 '구조선(構造船)'임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도선은 발굴 시 출토된 중국 원(元)나라 동전, 격벽 및 장좌 구조, 철정의 사용, 동유회 접착제의 활용, 중국 푸젠(福建) 지역 조선 기술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보수공의 존재, 그리고 녹나무 목재 사용 등의 요소로 인해 중국 선박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해석은 오랜 기간 학계의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기 언급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진도선이 기본적인 선박 구조를 갖춘 구조선임이 확인되므로,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통나무배'라는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동시기의 중국 및 일본 고선박에 대한 고고학적 실증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진도선이 통나무배가 아닌 복합 구조를 지닌 구조선이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발굴 당시의 실측 도면과 잔존 선체편의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훼손 및 유실 부위를 CAD 기반의 가상 복원으로 재현하고, $\frac{1}{5}$ 축소 모형제작 실험을 통해 각 구조 부재의 기능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진도선의 국적 및 조선 기술적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주제어〉
통나무배, 진도선, 철정(鐵釘), 동유회(桐油灰), 보수공(保壽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Structural Reinterpretation of the Ship Excavated from Byeokpajin, Jindo

Hong Sun Jae
(Curat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ong-standing academic interpretation that the Jindo Ship (珍島船), excavated in 1991 and 1992 from the Beokpajin waterway in Gogun-myeon, Jindo-gun, Jeollanam-do, was a "Chinese dugout cano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monstrate, based on measured drawings of the excavated hull fragments, excavation reports, direct artifact examination,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China and Japan, that the Jindo Ship was not a dugout canoe but rather a constructed vessel (構造船).

The Jindo Ship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Chinese vessel because of several features identified during the excavation: Yuan dynasty coins, the presence of bulkheads and beam seats, the use of iron nails, the application of tung oil putty (桐油灰), the existence of bosugong (保壽孔)—a feature associated with Fujian shipbuilding practices—and the use of camphor wood. These factors collectively reinforced the interpretation of the Jindo Ship as a Chinese craft, which became the prevailing view in academic circles for decade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despite these factors, the Jindo Ship possessed the essential structural elements of a constructed vessel, and therefore, the long-accepted classification as a "dugout canoe" must be reexamined.

To verify this, the resear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temporaneous archaeological ship remains from China and Japan, demonstrating that the Jindo Ship was a composite constructed vessel rather than a simple dugout.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measured drawings and surviving hull fragments, the study virtually reconstructed the damaged and missing parts using CAD-based modeling and conducted a 1:5 scale model experiment to test the functional roles of each structural component.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national and technological character of the Jindo Ship and reevaluates its significance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shipbuilding traditions.

Keywords
dugout canoe, Jindo Ship, iron nails (cheoljeong 鐵釘), tung-oil caulking (dongyuhui 桐油灰), bosugong ritual feature (保壽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2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연구논문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연구사의 통합적 검토와 장기 구조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 호 베이징(北京)대학교 박사후연구원

I. 서론
II. 연구사의 통합적 검토: 기존 연구의 흐름, 주요 쟁점, 그리고 성과와 한계
III.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장기 구조 재구성: 시기 구분과 향후 연구 과제
IV. 결론: 연구사 재구성의 의의와 향후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서론

한국 고지도 전체 또는 특정 지도 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 정리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1] 그러나 '조선시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지도 문화 교류'를 독립된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학제적으로 통합하여 검토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도학사, 과학기술사, 한중관계사, 문화교류사, 사상사, 미술사, 영토·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중국·일본·구미 학자들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음에도, 연구자의 전공과 지역, 연구 방법의 차이에 따라 연구 대상과 문제의식이 크게 달라 그 성과가 국가별·분야별·유형별로 분절된 채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그 주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분절성은 단지 연구 영역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선과 명·청 사이의 지도 교류가 언제나 외교 관계, 전쟁과 군사적 위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지식 유통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었다는 역사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흐름을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흩어져 축적된 연구 성과를 학제적으로 통합하며, 지도 유형·지식 구조·세계 인식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 특성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선행 연구의 단순한 정리를 넘어, 기존 연구를 국가·유형·시기별로 가로지르며 재배열함으로써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기본 양상을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역사적 분기점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자료와 방법을 통해 이 교류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연구

* 논문 투고일: 2025.10.22. 심사 완료일: 2025.11.26. 게재 확정일: 2025.11.26.

* 이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심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김기혁, 2007,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지역과 지리』 13(3); 김기혁, 2018, 「한국 고지도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전문학회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0(2); 심정보, 2020,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도연구』 29; 박계각, 2022, 「한국 古(고)해도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추계학술대회논문집, 50~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할 수 있을지 그 과제와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론에 앞서 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간단히 규정하고자 한다. 먼저 '지도' 개념을 여지도(輿地圖)에 한정하지 않고, 한 사회의 공간 인식·지리 지식·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다양한 매체로 확장하여 이해한다.[2] 지도는 세계·국가·행정구역을 도식화한 전통 여지도뿐 아니라, 풍수도, 회화식 명승도(名勝圖), 보드게임형 승람도(勝覽圖), 역사 서술과 결합한 역사지도 등 비전형적 자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수 지도들은 조선과 명·청의 지도 문화 교류에서도 일정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 만큼, 이 연구는 여지도를 중심축으로 삼되 다양한 지도 유형을 폭넓은 검토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음으로 '지도 교류'는 실물 지도의 이동뿐 아니라 지도 제작 기법·측량 체계·표기 방식, 지리 인식과 세계관, 정치·사상적 전제 등 비물질적 요소의 전파와 수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중국 전통 지도학, 특히 배수(裵秀)의 제도육체(製圖六體)를 수용했다고 자칭한 사례,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원형 천하도(圓形天下圖)가 명말·청초 예수회의 한역 서구식 세계지도와 중국 지도학 전통을 매개로 형성된 사례 등은 실물 교류와 더불어 지식·사상의 교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광의의 교류 개념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한중 양국 간 지도 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1392년 조선 건국에서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체결까지로 설정한다. 조선과 명·청 사이의 지도·지리 지식 교류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청의 종주권 소멸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는 전통적 한중 교류 구조의 근본적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류의 기원과 종결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정 시기 전후의

2 'Maps are graphic representations that facilitate a spatial understanding of things, concepts, conditions, processes, or events in the human world.'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1987, "Preface,"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례도 제한적으로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과 '중국'은 현대 국가가 아니라 전통 시기의 왕조적 실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려·조선'과 '송·원·명·청' 등 왕조 명칭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만주 지역의 후금과 중원 지역의 명이 병존하던 시기에는 국제 질서의 이중적 구조를 반영하여 '조-명', '조-후금·청'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Ⅱ. 연구사의 통합적 검토: 기존 연구의 흐름, 주요 쟁점, 그리고 성과와 한계

1. 기존 연구의 흐름

지도 문화의 교류는 한중관계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식의 이동과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문학·예술 등 다른 문화 교류 분야와 비교할 때, 지도 문화 교류를 장기적·통사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나 명말·청초 한역 서구식 세계지도 등 특정 사례에 집중되었고, 한중 지도 교류의 구조적 특징과 시대적 변동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학사 서술에서도 한중 교류가 간헐적으로 언급되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가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전체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1940~1960년대: 과학사적 접근의 개척

한국에서 지도 문화 교류에 관한 논의는 과학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전개되었다. 홍이섭과 전상운 등 1세대 학자들은 194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60년대에 걸쳐 한국 지도학의 발전사를 정리하며, 『강리도』와 명말·청초 예수회 세계지도를 중심으로 동서 문화 교류의 맥락에서 지도 제작의 배경과 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3] 비슷한 시기 지리학자 형기주 역시 한국 고지도 발달 과정에서 중국 지도학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나,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아 이 분야의 연구는 약 30년 동안 공백 상태에 놓였다.[4]

이들의 연구는 한국 지도학이 서구 및 이슬람 지도학 전통과 접촉한 양상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당시의 논의는 한국 지도학의 기원과 계보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 내부의 지도 제작 전통, 한중 양국 간 상호적 교류의 실제 양상, 지식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즉 영향 관계를 '발견'하는 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그 영향이 조선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재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2) 1990~2000년대 초반: 국외 학계의 거시적 조망

1990년대에 들어 국외 학계를 중심으로 지도학사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The History of Cartography(지도학사)』 시리즈에서 중국 지도학사 부분을 집필한 코델 D. K. Yee(Cordell D. K. Yee)는 중국 전통 지도학이 조선 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이 이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지리적 환경과 실용적 필요에 따라 독자적 전통을 발전시켰다고 보았다.[5] 이는 조선 지도학의 주체적 변용을 강조한 초기 논의로서 의미가 있다.

---

3 홍이섭, 1949, 『조선과학사』, 정음사; 전상운, 1966, 『한국과학기술사』, 과학세계사.

4 형기주, 1963, 「한국 고지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

5 Cordell D. K. Yee, 1994, "Cartography in China,"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29~2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중국의 왕첸진(汪前進)은 한국 지도학의 발달이 중국 전통 지도학의 직접적·일방적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6]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지도 지식은 서기 1세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 전래되었으며, 당대 이후 제도육체·계리화방(記里畫方) 등 중국 지도 제작의 핵심 원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장기지속적 영향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으나, 한국 지도학의 독자성·변용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중국 중심적 해석이라는 한계를 남긴다.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의 운노 가즈타카(海野一隆)는 한국을 중국·일본·류큐를 잇는 지리 정보의 중계지로 파악하며, 조선이 동아시아 지도 교류망에서 '매개자'로 기능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조선 지도에서 산줄기·수계를 중시하는 표현 기법을 중국 풍수 지도 전통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조선의 능동적 선택·재구성 과정보다는 외부 영향의 전달 경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7]

종합하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국외 연구들은 한중 지도 교류의 장기적 흐름을 파악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영향 관계를 정리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개별 지도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이 외래 지리 지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해석하며 재구성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연구에서 조선의 주체적 대응과 상호 교류의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증적 사례 연구의 확대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연구는 이전의 개괄적 서술에서 벗어나 구체적 자료 분석과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이 외래 지도학을 단순히 수용한

6 汪前進, 1994, 「歷史上中朝兩國地圖學交流」, 『中國科技史料』 1.

7 海野一隆, 2004, 『地図の文化史: 世界と日本』, 八坂書房, 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지식 환경 속에서 선택적으로 변용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오상학은 조선시대 세계지도를 서구식 세계지도, 직방세계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 원형 천하도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그 전개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조선이 중국·서구의 세계지리 지식에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면서 이를 자국의 관점에 따라 수용하고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8]

다만 세 유형의 세계지도 가운데 중국 지도 전통과 가까운 직방세계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는 이 계통의 지도를 시기별로 정리하였으나, 중국 천하도의 전래와 유통 방식, 조선에서 이루어진 변용 과정이 충분히 대비·검토되지 않아 유형 간 연속성과 차이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조선 천하도에 반영된 화이관과 천하관이 중국의 그것과 어떻게 같거나 달랐는지,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명희는 한국에 소장된 중국 고지도를 조사·정리하여 기존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였다.[9] 또한 『대명혼일도』, 왕반의 『여지도』 조선 모사본, 『광여도』, 『천하여지도』, 『천하대총일람지도』, 『대명일통지』, 『천하고금대총편람도』 등 여러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중국 지도학이 조선 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과 조선에서 이루어진 수용·재구성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명희는 조선의 지도 제작자들이 중국 지도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지리 지식을 학습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의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 중국의 원본 지도를 수정·변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0]

---

8 오상학, 2005,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對中國 認識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5;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오상학, 2009,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 『한국고지도연구』 1(1).

9 李明喜, 2006, 「韓國收藏中國古地圖的情況及其研究」,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10 이명희, 2009, 「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고지도」,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291~3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만 그의 연구는 '중국인이 제작한 고지도'라는 분석 범주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제작된 일부 중국 관련 지도가 함께 포함되어 개념적 기준이 완전히 일관되게 유지되지는 않았다. 또한 연구의 초점이 세계지도와 중국 지도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도 유형이나 조선 내부의 지도 제작 전통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중국 지도학의 유입과 그 영향력은 상세히 검토되었으나, 한중 지도 교류의 구조적 관계나 상호 영향의 구체적 작용 방식까지 충분히 밝히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남아 있다.

이후 미국 학자 존 R. 쇼트(John R. Short)는 중국 지도학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양국 간 지도 문화 교류의 전개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11] 그는 『강리도』, 서구식 세계지도, 관방지도(關防地圖)의 유입을 중심으로 중국 지도학 전통이 한국 고지도 형성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석 역시 중국 지도 문화가 한국으로 전달되는 과정의 서술에 중심이 놓여 있어, 조선 내부의 선택·해석·재구성의 층위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정은주는 사행기록화를 중심으로 미술사적 관점을 적용하여, 조선시대 한중 간 지도와 회화 교류의 구체적 양상을 생동감 있게 복원하였다.[12] 특히 고지도 연구의 측면에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지도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 지식인이 중국 지도를 어떻게 수용·재해석하며 변용하여 제작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13] 정은주는 전래된 중국 지도를 직방세계 중심 세계지도, 서구식 세계지도, 관방지도, 도성도(都城圖)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수용·변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조선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 변화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1 John R. Short, 2012, *Korea: a cartographic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51~59.

12 정은주, 2012,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 사회평론.

13 鄭恩主, 2014, 「中國에서 流入된 地圖의 朝鮮的 變容」, 『명청사연구』 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자(李佳)는 『연행록전집(燕行錄全集)』에 수록된 『열하도(熱河圖)』와 『천하지도(天下地圖)』를 중심으로 청대 한중 지도학 교류를 고찰하였다. 그는 양국의 교류가 사행을 매개로 쌍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중국이 조선에 미친 영향이 더욱 지대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연행록 수록 지도를 분석하여 연구 시각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당시의 지도학 교류 전반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4]

필자가 2025년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오상학의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중국의 화이론적 천하관에 기반하여 제작된 조선의 세계지도를 "화이론적 천하도(華夷論的天下圖)"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제작된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일반형 '천하지도책(天下地圖冊)'의 〈중국도〉, 『천하대총일람지도』, 『천하여지도』, 새로운 유형의 '천하지도책'에 수록된 〈천하제국도〉, 『여지전도』 및 〈중국직공총도〉 등을 대상으로 제작 배경과 도상 구성, 저본 계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15]

그 결과 조선 후기의 화이론적 천하도는 중국 천하도의 전래뿐 아니라 국내 정치 질서, 대외 환경, 경제·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조선이 외래 지도 전통을 자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 연구 역시 특정 시기와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선시대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40년대 이후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연구는 동서 교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중국 영향론, 중계지론, 실증적 비교 연구로 점차 확장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넓어진 데에 비해, 장기적 변화 구조, 양국 간 교류의 상호성, 지리 지식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을 통합적으

14 李佳, 2025, 「清代中國與朝鮮的地圖學交流: 以『燕行錄全集』所收『熱河圖』與『天下地圖』爲中心」, 『使行錄與東亞歷史文化研究(下冊)』, 北京大學出版社, 814~829쪽.

15 이호, 2025, 「조선후기 명·청대 중국 천하도의 전래와 조선 화이론적 천하도의 탄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로 설명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 지도 문화 교류를 개별 사례의 집합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주요 쟁점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전체적 흐름을 장기적 시야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개별 지도나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세계지도·지리지 삽도·명승도·관방지도·도성도 등 다양한 지도 계통 속에서 양국의 교류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지도들은 제작 시기와 유형에 따라 임진왜란·호란과 같은 전쟁과 외교적 위기, 명·청 교체기 같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사행(使行) 네트워크의 확대, 서구식 세계지식의 유입 등 여러 역사적 요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의 지도 수입·변용·제작은 단순한 도상의 이동을 넘어, 당시의 외교 환경·정보 접근성·지식 전파 경로와 같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은 지도 유형별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시기별·유형별 지도 자료와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되, 각 지도 유형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조선의 세계 인식과 대외 질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후속 장에서 조선시대 한중 지도 교류의 전개 양상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흐름 속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지점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조선 전기 '혼일도' 계통의 세계지도의 전래와 제작

조선은 건국 초부터 세계지도 수입과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태종 2년(1402)에 김사형(金士衡)·이무(李茂)·이회(李薈) 등은 명나라에서 가져온 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종류의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과 일본의 지도를 더해 『강리도』를 제작하였다. 『강리도』에 대한 연구는 1910년대부터 오가와 다쿠지(小川琢治)와 아오야마 사다오(青山定雄) 등의 일본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미야 노리코(宮紀子)와 오상학의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16]

『강리도』의 유라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원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와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를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중국 외 지역을 폭넓게 묘사한 세계지도이며, 후자는 역대 국도의 위치와 연혁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지도였다. 이를 고려하면 1402년의 『강리도』는 조선이 명나라의 지도 전통을 매개로 이슬람 지도학과 접촉하며 새로운 유형의 세계지도를 제작한 사례로서, 조선 전기 세계 인식의 폭넓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입수한 세계지도는 양자기(楊子器)의 직방세계 중심 전통을 계승한 『여지도』였다. 조선은 1402년의 제작 방식과 유사하게 이를 기초로 삼아 조선 지역을 자국의 지도로 대체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일본 궁내청 도서료(圖書寮) 소장본과 고려대학교 임촌기념관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之圖)』,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지도 유형에 대해서는 일본의 아오야마 사다오,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이노우에 미쓰유키(井上充幸) 등이 먼저 일본 내 소장본을 바탕으로 내용·계보·제작 시기를 검토하였다.[17]

---

16 1402년 『강리도』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하였다. 小川琢治, 1910, 「近世西洋交通以前の支那地圖に就て」, 『地學雜誌』 258卷 160號; 青山定雄, 1938, 「元代の地図について」, 『東方学報』 8冊; 宮紀子, 2007, 『モンゴル帝国が生んだ世界図』, 日本経済新聞出版社; 오상학, 2011, 앞의 책, 91~133쪽.

17 青山定雄, 1937, 「明代の地図について」, 『歷史学研究』 1(11); 宮崎市定, 1957, 「妙心寺麟祥院藏の混一歷代國都疆理地図について」, 『神田博士還曆記念書誌學論集』, 神田博士還曆記念会; 井上充幸, 2007, 「東アジアにおける楊子器図の展開」, 『大地の肖像: 絵図·地図が語る世界』, 京都大学学術出版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에서는 이찬이 국내 소장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오상학은 이 계통의 지도들이 조선인의 축소·재구성된 세계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았다.[18] 최근 손고은은 고려대학교 임촌기념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16세기 전반 조선-명 외교와 지리 지식 교류의 맥락에서 지도 수입과 변용 과정을 새롭게 검토하였다.[19]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명나라는 북로남왜(北虜南倭)의 위협 속에서 대외 인식이 보수적으로 전환되었고 지도 제작·유통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지도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조선은 사신을 통해 명 관리에게 지도의 교환·매입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리 지식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선 전기 '혼일도' 계통의 세계지도는 이러한 대외 환경, 외교 네트워크, 정보 접근성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지도 교류의 초기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조선 전기 지리지의 삽도와 중국 명승도의 제작

15세기 조-명 지도 교류의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동국여지승람』의 삽도인 『동람도』의 제작이다. 이찬은 『동람도』에서 산천과 행정구역 명칭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표현 방식이 중국 지도 전통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지적하였다.[20] 이어 개리 레드야드(Gari Ledyard)와 오상학은 『동람도』, 특히 서두의 〈팔도총도〉가 명나라 『대명일통지』 부도(附圖)의 체제와 양식을 폭넓게 계승하고 있음을 밝혀 조선 전기 지리지 삽도의 제작 원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21] 최근 알렉산더 아킨(Alexander Akin)은 『동람도』의 제작

18 이찬, 1992, 앞의 책, 『학술원논문집』 31; 오상학, 2011, 앞의 책, 134~150쪽.

19 손고은, 2017, 「16세기 前半 朝明外交와 지리 지식 교류: 混一歷代國都疆理之圖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李燦, 1979, 「東覽圖의 特性과 地圖發達史에서의 位置」, 『진단학보』 46·47.

21 Gari Ledyard, 1994, "Cartography in Korea,"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93~296; 오상학, 2015, 『한국 전통 지리학사』, 들녘, 162~1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명말 출판열(the Late Ming Publishing Boom)"이라는 동아시아 출판 환경 변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16세기 목판본 지도 확산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였다.[22]

요컨대 성종 17년(1486)에 남송대 주목(祝穆)의 『방여승람(方輿勝覽)』과 명대 『대명일통지』를 본떠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총도〉와 팔도의 분도(分圖)가 함께 수록되었다. 이들 지도는 『대명일통지』의 목판본 양식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으며, 이후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동람도』의 도식과 구성을 바탕으로 한 천하지도책의 조선전도·도별지도가 널리 활용되었다. 이는 '동람도'가 조선 전기 지리지·행정지도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에 명에서 간행된 여러 지리지의 목판본 지도 역시 조선의 지도 제작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본 학자 조 마사쓰네(長正統)는 명 중기 정통(正統)·가정(嘉靖) 연간에 간행된 『요동지(遼東志)』에 〈개원공대외이산천지도(開原控帶外夷山川之圖)〉 등 만주 지역을 상세하게 묘사한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조선의 북방 지역 지도 제작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였다. 정척과 양성지가 공동 제작한 『동국지도』의 상단부에 나타나는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만주 지역 묘사는 『요동지』 부도의 도상과 지명 체계를 참조하여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23]

한편 조선의 지도 제작 전통은 역으로 중국의 조선 지도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정 34년(1555)에 간행된 나홍선(羅洪先)의 대형 지도집 『광여도(廣輿圖)』에는 〈조선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동시기 조선에서 유통된 조선전도의 윤곽이나 구성과는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아오야마 사다오는 이 〈조선도〉의 윤곽이 『동람도』의 〈팔도총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

22 Alexander Akin, 2021, *East Asian Cartographic Print Culture: The Late Ming Publishing Boom and its Trans-Regional Connections*,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200~206.

23 長正統, 1982, 「内閣文庫所蔵『朝鮮国図』およびその諸本についての研究」, 『史淵』 1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며 두 지도 간 친연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찬과 레드야드는 이러한 윤곽이 고려시대 지도 전통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24] 『광여도』 연구의 권위자인 운노 가즈타카는 이 〈조선도〉가 송·원대 『화이도(華夷圖)』에 보이는 한반도 서해안 윤곽을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 지도와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의 지리 정보 및 도상을 함께 참조해 새롭게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25]

다른 한편으로, 16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의 명승과 경관을 묘사한 산수화적 지도, 즉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서호도(西湖圖)』 등 다양한 명승도가 제작되었다. 이들 자료는 주로 미술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신애·정경숙의 『무이구곡도』 연구, 정민·지용환의 『서호도』 연구가 있다.[26] 비록 이 연구들의 접근 방법은 지도학·역사학과 차이를 보이나, 몇 가지 공통된 견해가 도출되었다. 첫째, 16세기 성리학 정착과 함께 주자(朱子)와 관련된 『무이구곡도』가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향유되었으며, 산수화 형식을 띠면서도 지명을 표기하고 공간 구성이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재현의 성격을 지닌 명승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문학 작품의 대량 유입은 중국 강남 지역에 대한 동경을 자극하여 『서호도』와 같이 강남 경관을 묘사한 산수화가 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명승도 제작의 확산은 회화·지리 지식·문화적 취향이 교차하는 조선 시각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 주며, 중국 지리지·문학·시각문화가 조선의 공간 인식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4 青山定雄, 1938, 앞의 글; 李燦, 1979, 앞의 글; Gari Ledyard, 1994, *op. cit.*, p. 241.

25 海野一隆, 2010, 『地図文化史上の広輿図』, 東洋文庫, 81~82, 122쪽.

26 『무이구곡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강신애, 2004, 「朝鮮時代 武夷九曲圖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숙, 2015, 「조선시대 무이구곡도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호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정민, 2002,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古典文學硏究』 22; 지용환, 2008, 「朝鮮時代 西湖圖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왜란과 호란 시기 '동람도'의 중국 전파와 왕반(王泮)의 『천하여지도』의 전래와 역전파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벌어지던 때는 조선과 명나라 양국의 지리 정보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명군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파병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의 지형·지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명군은 때로는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를 활용하고, 때로는 직접 지형을 답사하여 자체적인 지도를 제작하였다. 허태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의 지리지·지도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며, 전쟁 수행 과정에서 조선과 명나라가 실용적 목적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지도 정보를 교환했음을 지적하였다.[27]

이 시기에는 명군의 전쟁 수행 활동을 매개로 조선의 지도가 중국으로 유입된 사례도 나타난다. 알렉산더 아킨은 현재 대만국가도서관 소장 명군 제독 이승훈(李承勳)이 '동람도'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조선도설(朝鮮圖說)』을 분석하여, 조선판 지도가 중국 목판 인쇄 문화 속에서 새롭게 가공·출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28] 특히 『조선도설』은 기존에 명에서 유통되던 『광여도』의 〈조선도〉와는 형식·구성이 크게 달라,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중 간 지리 정보의 이동과 재편이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조선일본도설(朝鮮日本圖說)』 역시 이승훈의 『조선도설』과 비교될 수 있는 자료로서, 류징(劉晶)은 두 지도 모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중국인이 '동람도'의 도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29] 그는 더 나아가 송응창(宋應昌)이 편찬한 『경략부국요편』의 〈화이연해도〉가 조선·명 양국의 해안 방어 지식을 결합한 사례임을 밝히며, 임진왜란을 전후한 동북아 지역에서 지리 정보가 획득·전

27 허태구, 2014, 「임진왜란과 지도·지리지의 군사적 활용」, 『사학연구』 113.

28 Alexander Akin, 2021, *op. cit.*, pp. 213~220.

29 劉晶, 2025, 「《朝鮮日本圖說》《朝鮮圖說》與明末對朝鮮的地理認知」, 『中國歷史地理論叢』 4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달·재구성되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했다.[30]

한편 임진왜란과 달리 호란을 계기로 전래된 지도의 양상도 주목된다. 명말·청초 시기에도 중국의 전통 세계지도는 여전히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1594년 왕반의 『천하여지도』이다. 17세기 초 조선에서는 이를 저본으로 하여 한반도 영역을 상세히 보완한 조선본이 제작되었으며, 프랑스국립도서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 모두 이 계통에 속한다. 프랑스 학자 마르셀 데스톰브(Marcel Destombes)는 1974년 해당 지도를 소개했으나 원본의 성격을 오해한 한계가 있었고, 이후 중국 학자 런진청(任金城)과 쑨궈칭(孫果清)은 본 지도가 1603~1626년 사이 조선에서 제작된 모사본임을 규명하였다.[31]

이어 한영우는 『화동고지도』·『천하여지도』 등 동종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 지도가 17세기 중반 조선의 지리 지식과 세계 인식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산물임을 제시하였다.[32]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다른 필사본 『천하여지도』와 관련하여 양보경과 전오라는 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정리하고 간단히 지도 내용을 소개하였다.[33] 그러나 양위레이(楊雨蕾)는 전오라의 연구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지도가 황해 북부의 도서가 추가로 묘사되고 오탈이 많은 점을 근거로, 이 지도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의 민간 증보 묘사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34]

『북양해양도(北洋海洋圖)』는 왕반의 『천하여지도』 조선본의 도상과 정보가 17세기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

30 劉晶, 2022, 「萬曆援朝戰爭期間東北亞地區地理知識的獲取, 傳遞與呈現: 以『華夷沿海圖』為中心的考察」, 『歷史地理研究』 42(2).

31 M. Destombes, 1974, “Une carte de Chine d'époque Ming récemment découverte,” *Gazette des Beaux Arts*, 01; 任金城·孫果清, 1986, 「關於法國國家圖書館發現的一張十六世紀的中國地圖」, 『文獻』 1.

32 한영우, 1998,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본 여지도』에 대하여」, 『한국학보』 24(2·3).

33 양보경, 2004, 「17세기 조선본 천하여지도의 고찰」, 藤井讓治·杉山正明·金田章裕, 『絵図·地図からみた世界像』, 京都大學大学院文學研究科, 180~189쪽; 전오라, 2003, 「17세기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楊雨蕾, 2012, 「關於“王泮題識輿地圖朝鮮摹繪增補本”的韓國藏本」, 『文獻』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례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대만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이 지도는 한반도·만주·화북 일부 지역만을 남기고 나머지 영역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어, 전래된 세계지도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축소·편집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조선본 계통의 세계지도가 후대의 전략적 필요에 맞게 재편된 전형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대해서는 쑨징궈(孫靖國)가 2018년 중국 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도 구성과 학사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한 바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분석은 정융창(鄭永昌)의 연구에서 확인된다.[35] 정융창은 지도에 나타난 만주어 지명, 명·후금의 공로 표기 방식, 특정 지역만을 남겨 둔 축소 구성 등을 근거로, 『북양해양도』가 1630년대 후반 후금 세력이 조선 지도를 획득한 뒤 자국의 군사·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재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북양해양도』가 단순한 모사본이 아니라, 명말·청초의 전쟁, 후금의 세력 확장, 지역 질서의 급변 등 구조적 요인 속에서 지리 정보가 선택·재편되었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나아가 이 지도는 조선–명–후금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리 지식의 이동과 재구성의 단면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으로 이어지는 한중 지도 교류의 연속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명말·청초 시기 한역 서구식 세계지도의 전래와 원형 천하도의 출현

명말·청초에 서구 예수회 선교사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서양의 세계지리 지식과 새로운 형태의 세계지도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와 그 계통의 여러 판본은 중국 지식인과 서구 선교사의 협업 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 규모와 정보량은 기존 중국

35 孫靖國, 2018, 「台北故宮藏滿漢文『王泮題識「輿地圖」朝鮮摹繪增補本』考釋: 兼論清代地圖史的開端」 2018年中國歷史地理學術研討會, 北京 中國人民大學; 鄭永昌, 2023, 「時代印記: 國立故宮博物院藏〈北洋海岸圖〉試析」, 『故宮文物月刊』 48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천하도 전통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도는 17세기 초 중국 베이징(北京)을 왕래한 조선 사신들에 의해 한반도로 전래되었고, 이는 조선의 세계 인식과 지도 제작에 큰 자극을 주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 아유자와 신타로(鮎沢信太郎), 후나코시 아키오(船越昭生) 등은 조선에 전해진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양의현람도』,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의 『곤여전도』, 안정복이 제작한 지구의용 세계지도 등을 분석하여 서구식 세계지리의 전래 과정과 지도학적 특징을 정리하였다.[36] 이들은 주로 '어떤 판본이 조선에 들어왔는가'와 '조선 학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었다.

1970~1990년대에는 김양선, 이찬, 노정식 등의 연구가 이어지며, 조선 사회 내부에서 서구식 세계지도 전래가 촉발한 지적 변화를 살피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37] 이들은 다양한 판본의 계보와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조선 학인이 서구 세계지도에서 제시한 지구 체계·대륙 구분·경도 개념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맥락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배우성, 오상학, 임종태 등의 연구를 통해 연구의 관점이 한층 성숙해졌다.[38] 이들은 서구식 세계지도가 조선의 세계관을 단순히 교체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유교적·중화적 세계질서 속에서 '선택적으로 재해석'된 층위를 강조하였다. 즉, 조선 학인이 서구의 새로운 지리 지식을

36 田保橋潔, 1932, 「朝鮮測地史上の一業蹟」, 『歷史地理』 60(6); 秋岡武次郎, 1933, 「安鼎福筆地球儀用世界地図: 東洋製作の古地球儀用舟形図の1」, 『歷史地理』 61(2); 鮎沢信太郎, 1940, 『東洋地理思想史研究』, 日本大学第三普通部; 船越昭生, 1971, 「朝鮮におけるマテオ·リッチ世界地図の影響」, 『人文地理』 23(2).

37 김양선, 1972, 『매산국학산고』, 숭전대학교 박물관;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노정식, 1998, 『한국의 고세계지도』, 대구교육대학교.

38 배우성, 1997,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인식」, 『진단학보』 83; 배우성, 1998,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오상학, 2011, 앞의 책; 임종태, 2012,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 창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유학적 우주론과 중화 중심 질서를 유지하려는 인식 구조 속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관 전환'보다는 '기존 체계의 내부적 조정'이라는 방향으로 조선 지식인의 대응을 재해석한 성과로 평가된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도 최근 활발해졌다. 양위레이는 18세기의 『천지전도』를 중심으로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의 반응을 비교하여, 동아시아 각 지역이 서양 세계지식을 수용하는 방식이 결코 동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39] 특히 대부분의 조선·청 학자는 서구식 세계지도를 '기존 체계의 부속적 참고 자료'로만 한정하였음을 지적했다.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 모사본이 활발하게 제작되던 시기, 조선 학인들은 기존의 중국 중심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재배열한 새로운 유형의 상상적 세계지도인 원형 천하도(圓形天下圖)를 창안하였다. 이 지도는 동서양 지도 문화 교류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니며, 그 기원과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원형 천하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40년대 나카무라 히로시(中村拓)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카무라는 천하도가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불교와 관련된 도상적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40] 이후 김양선은 천하도의 중국 전래 가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불교적 연원설을 비판하고, 그 기원을 중국 전국시대 음양가 추연(鄒衍)의 대구주설(大九州說)에서 찾았다.[41] 이는 초기 연구가 주로 중국 기원설에 집중했음을 보여 준다.

1960~1980년대에는 원형 천하도를 보다 넓은 범지구적 시각 속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전상운은 천하도가 중국보다는 중세 라틴의 T-O 지도와 아라비아 윤상지도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

39 楊雨蕾, 2013, 「『天地全圖』和18世紀東亞社會的世界地理知識: 中國和朝鮮的境遇」, 『社會科學戰線』 10.

40 中村拓, 1943, 「東亞地図の歷史的變遷」, 『大陸文化研究続』, 岩波書店, 147~182쪽; 中村拓, 1966, 「朝鮮に伝わる古きシナ世界地図」, 『朝鮮学報』 39·40.

41 김양선, 1965, 「한국고지도연구초」, 『숭대』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고, 이찬은 조선 학인이 서구 세계지도에 접촉하면서 기존의 중국적 세계관을 활용해 새로운 지리 지식을 재해석한 결과로 천하도의 제작 배경을 설명하였다.[42] 운노 가즈타카는 여기에 도교적 요소와 "서구 세계지도에 대한 대항적 의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43] 이러한 견해들은 원형 천하도를 단순한 '중국 지도 전래의 부산물'이 아니라 서구 지리 지식과 동아시아 전통 지식의 접합 과정에서 탄생한 복합적 산물로 이해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조선 지식인의 내적 인식 구조와 지도 해석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었다. 배우성은 천하도가 서구식 세계지도를 단순히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 지식인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44] 오상학은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천하도가 조선 후기 학인의 확장된 지리적 시야와 더불어 삼재사상·신선사상 등 전통 사유 체계가 반영된 복합적 지도임을 강조하였다.[45] 이로써 연구의 초점은 조선 학인의 재해석 능력과 주체적 구성 과정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중국 학자 리준(李軍)은 천하도의 내륙 도상이 명말 유서 『삼재도회』의 〈산해여지전도〉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풍수지리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았다.[46] 이에 반해 윤홍기는 원형 천하도가 서구식 세계지도와의 접촉과는 무관하며, 조선 선비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 구도를 민속적·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결과물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47] 최근 연구는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포괄하면서 원형 천하도의 다층적 성격

42 전상운, 1996, 앞의 책, 310~311쪽; 이찬, 1976, 「韓國의 古世界地圖: 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하여」, 『한국학보』 2(1).

43 海野一隆, 1981, 「李朝朝鮮における地図と道教」, 『東方宗教』 57.

44 배우성, 2000,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지』 22(1).

45 오상학, 2001, 「조선후기 圓形 天下圖의 특성과 세계관」, 『地理學硏究』 35(3).

46 李軍, 2020, 「跨文化語境下朝鮮『天下圖』之"真形":兼論古代地圖研究的方法論問題」, 『美術大觀』 12.

47 윤홍기, 2022, 「천하도의 기원을 찾기 위한 예비고찰」, 『문화 역사 지리』 3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더욱 풍부하게 조명하고 있다.

종합하면, 원형 천하도의 출현은 한 가지 기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단순한 도상적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명말·청초라는 국제 질서의 변동, 서구 세계지식의 유입, 풍수·삼재·도교 등 조선 고유의 지식체계, 그리고 중국 중심 세계관의 시각적 재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조선이 외래의 세계지식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자원과 세계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재배열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5) 명말·청초 시기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천하지도책' 중 〈중국도〉의 탄생

명말·청초라는 전환기의 격변은 조선의 지도 제작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조-명 질서가 무너지고 만주 세력이 부상하자, 조선은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며 청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치욕 의식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지식인의 중화 의식은 더욱 강화되었고, 조선 자체를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로 자임하는 조선 중화주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지도 제작은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 전환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작된 대표적 산물이 1666년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조선 후기 '천하지도책'에 수록된 〈중국도〉이다. 이 두 지도는 모두 명의 멸망 이후 조선인의 중국 인식과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시각적 텍스트로 평가된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1960년대 김양선과 A. L. 매카이(A. L. Mackay)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양위레이는 현존 판본의 계보를 정리하여 이 지도가 김수홍 개인의 독자적 작품이라기보다 조정과 연결된 제작 체계 속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48] 특히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은 명대 지형을 충실히 반

48 김양선, 1965, 앞의 책; A. L. Mackay, 1975, "Kim Su-Hong and the Korean Cartographic Tradi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하고 있어, 중국 원본 지도를 적극적으로 모사·가공한 결과로 보았다. 배우성은 사상사적 관점에서 지도 속 푸젠(福建)·요동·북만주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서술 방식이 조선 후기의 대명 의식과 문명관을 반영한다고 분석하였다.[49]

최근 필자가 수행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계보·저본을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 제작의 배경과 도상에 반영된 천하관을 시대적 조건과 제작자의 개인적 동기라는 두 축에서 분석하였다.[50] 그는 이 지도의 천하상이 단순한 숭명반청(崇明反淸) 정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상서』「우공」편의 경전 지리를 근간으로 한 유교적 이상 세계의 시각화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김수홍 지도는 조선 후기 지식인이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 속에서 세계를 재정렬하려는 고유한 사유가 투영된, 지식의 재편과 가치질서 재구성의 산물이었다.

한편 조선 후기 '천하지도책'의 〈중국도〉 역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밀접한 지도학적 친연성을 지닌다. 운노 가즈타카는 일본 덴리(天理)대학교 소장 '천하지도책'을 분석하여 〈중국도〉의 유형과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찬 역시 두 지도 간 도상과 구성에서 공통점을 확인하였다.[51] 특히 일부 〈중국도〉에서 황하의 발원지가 곤륜산과 성수 두 곳으로 이중 표기된 점은, 17~18세기 중국 지리 지식이 대량으로 조선에 유입되던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학자 류쭝디(劉宗迪)는 〈중국도〉가 중국 '우공도'의 형식을 계승하였으며, 이는 조선이 문명적 정체성을 중국과 공유한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Imago Mundi, Vol. 27; 杨雨蕾, 2011, 「金壽弘의 『天下古今大摠便覽圖』本 研究」, 『한국고지도연구』 3(1).

49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66~90쪽.

50 이호, 2023, 「金壽弘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배경 연구」, 『한국학』 46(3); 이호, 2024, 「김수홍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계보와 저본에 대한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 83; 이호, 2024, 「金壽弘 『天下古今大總便覽圖』에 나타난 天下像과 天下觀에 대한 再檢討」, 『藏書閣』 52.

51 海野一隆, 1978, 「朝鮮李朝時代に流行した地図帳: 天理図書館所蔵本を中心として」, 『ビブリア』 70; 이찬, 1989,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측지학회지』 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현한 결과라고 보았다.[52] 팡칭(方晴) 역시 〈중국도〉의 제작자가 사행 경험을 가진 조선 사신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숭명반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공도'의 도상을 모방해 조선의 문명적 입장을 표방한 지도라고 평가하였다.[53] 최근 윤홍기는 〈중국도〉가 『상서』「우공」의 구주(九州) 체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을 지적하였다.[5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중국도〉는 모두 17세기 조선의 대중국 의식, 반청 정서, 유교적 경전 지리,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 제작된 지도이다. 조선 지도 제작자는 중국의 전통 지도학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명 멸망 이후의 세계를 조선의 관점에서 재배치하기 위한 시각적 전략으로 이들 지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조선이 외래의 지리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사상·문명 질서를 재해석하는 도구로서 능동적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보여 준다.

6) 조선 후기 관방지도의 제작과 『황여전람도』 중 〈조선도〉의 저본

청나라의 입관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조선 사회에는 북벌론과 영고탑 회귀설 등 강한 반청 정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은 사행을 적극 활용하여 만주·요계(遼薊) 등 청과의 접경지대에 관한 정확한 군사·지리 정보를 수집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말·청초에 제작된 『수승필람』, 『성경통지』, 『황여전람도』 등을 저본으로 삼은 다양한 관방지도가 등장하였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를 비롯하여, 1706년 이이명이 제작한 『요계관방지도』, 18세기 중반의 『서북계도』 등은 모두 이러한 정보 수집 노력의 산물이다. 이 중 『요계관방지도』는 1972년 유영박에 의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면서 조선 후기

52 劉宗迪, 2016,「山海經與古代朝鮮的世界觀」,『中原文化研究』6.

53 方晴, 2019,「『禹貢圖』研究: 想像, 繪製與閱讀」, 重慶大學 碩士學位論文.

54 윤홍기, 2023,「조선시대 선비들의 중국, 류구, 일본에 대한 이해와 태도」,『문화역사지리』3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방지도 연구의 출발점이 마련되었다.[55] 이후 양보경, 배우성 등이 관방지도의 체계·도상·저본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17~18세기 조선이 북방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원하였다.[56]

특히 배우성은 여러 관방지도에 나타난 지명·군사 요충지·방어선의 표기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선이 청의 동북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만주 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했음을 보여 주었다.[57] 더불어 이러한 지도들이 조선 내부의 북방 영토 인식과 국제 정세 인식 변화와도 맞물려 있음을 밝혀, 관방지도를 단순한 군사지도의 범주를 넘어 조선 후기 국토관의 변화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관방지도의 발굴과 기존 자료에 대한 재검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성경여지전도』는 쑨징궈와 최선웅에 의해 제작 연대·도상 구성·저본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인이 직접 제작한 중국 지도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었다.[58] 또한 이승수와 리화찌(李花子)는 『서북계도』의 저본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서북계도』의 핵심 저본이 『고금도서집성』 〈직방지도〉가 아니라 『황여전람도』와 『성경통지』였음을 밝혔으며, 『서북계도』가 공적 군사지도가 아니라 개인적·실용적 목적을 가진 지도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59] 이는 조선 후기 관방지도 제작이 단일한 국책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층위를 지닌 복합적 실천이었음을 시사한다.

청나라 초기 조선-청 지도 교류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례는 강희제 말기 만주인 대신 목극등의 백두산 정계 활동과 『황여전람도』 중 〈조선도〉

55 유영박, 1972, 「요계관방지도」, 『도서관』 22(11).

56 양보경, 1997, 「조선시대 고지도와 북방인식」, 『지리학연구』 29; 裵祐晟, 1997, 「17·18세기 淸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57 배우성, 1998, 앞의 책.

58 孫靖國, 2017, 「朝鮮王朝時期的東北地圖: 『盛京輿地全圖』」, 『地圖』 1; 최선웅, 2020, 「조선인이 만든 중국 지도 『성경여지전도』」, 『(月刊) 山』 614.

59 이승수, 2020, 「『西北界圖』의 만주지역 底本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2); 李花子, 2022, 「朝鮮王朝『西北界圖』考: 兼論與淸朝輿圖, 志書的關係」, 『淸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제작이다. 강희제는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경계 확정을 위해 목극등을 파견하여 조선 측 관리들과 함께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정계비를 설치하게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보다 정확한 〈조선도〉 제작을 위한 실측 작업을 지시하였다. 목극등과 측량 기술자들은 의주에서 한성까지의 거리와 한성의 경위도를 실측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한반도 전역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청 측은 조선 정부에 지도의 제공을 요청했고, 조선은 당시 보유한 전국지도를 제출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황여전람도』의 〈조선도〉는 이러한 제한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결과 지도에 표현된 한반도의 윤곽은 동시대 조선 전국지도에 비해 단순화되고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

『황여전람도』 〈조선도〉에 대한 연구는 개리 레드야드가 그 저본을 『동람도』 계열의 〈팔도총도〉 유형으로 추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60] 장상훈은 지도 제작의 경위와 도상적 특징을 검토하여 〈조선도〉가 17세기 이후 '동람도' 계열과 '동국지도' 계열의 특징이 혼재된 지도를 모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61] 김기혁 역시 도서(島嶼)의 수량과 명칭을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관동·관서지도』의 〈조선전도〉를 잠정적 저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62] 한편 최근 리화찌는 인문·자연 지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도〉의 모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관동·관서지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제작 시기를 17세기 후반으로 판단하였다.[63]

『황여전람도』가 이후 조선 지도 제작에 남긴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배우성과 가와무라 다다히로(川村忠博)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해동삼국도』를 분석하여, 이 지도가 『황여전람도』 계열 지도에서 보이는 도상 구성·형

60 Gari Ledyard, 1994, *op. cit.*, p. 303.

61 장상훈, 2006, 「清代 皇輿全覽圖 수록 『朝鮮圖』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8.

62 김기혁, 2015, 「『황여전람도』 「조선도」의 母本 지도 형태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관동·관서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63 李花子, 2025, 「福克思影印『皇輿全覽圖』之『朝鮮圖』再研究」, 『中國歷史地理論叢』 4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적 틀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64] 이는 『황여전람도』가 단순히 청 내부의 국가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조선 내부의 지도 제작 및 동아시아 인식 체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7) 조선 후기 여러 유형의 중국 관련 지도의 전래와 영향

18세기 중반에 들어 조선과 청의 관계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연행사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빈번한 사행 활동을 통해 방대한 문헌과 지도가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특히 『고금도서집성』, 『삼재도회』, 『도서편』 등 유서류의 전래는 조선의 지도 제작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성도, 명승도, '광여도' 계열의 지도, 청대 지도를 저본으로 삼아 조선에서 수정·편찬한 목판본 『천하여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중국 관련 지도가 새롭게 제작되었다.

도성지도에 관해서는 정은주와 양위레이가 『북경도성삼가육시오단팔묘전도』, 『연경도시도』, 『북경궁궐도』, 『남경황성도』 등을 분석하여, 지도 내용·제작 시기·저본뿐 아니라 제작자의 정치적 태도와 시대 인식을 검토하였다. 양윤정 역시 『조선채회본북경성시지도(朝鮮彩繪本北京城市地圖)』에 대한 논평에서, 조선 지식인이 베이징 도시 공간을 받아들이는 방식 속에 내재한 문화적 재해석 과정을 지적하였다.[65] 또한 한동수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의 『수선전도』를 검토하여, 이 지도가 청 중기에 민간에서 널리 유통된 베이징 도시도의 한 유형임을 밝혀, 조선 후기 중국 도성도의 수용 경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66]

---

64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과 『해동삼국도』」,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67~200쪽; 川村忠博, 2011, 「ソウル大学校奎章閣所蔵の朝鮮製『海東三国図』について」, 『歴史地理學』 53(5).

65 鄭恩主, 2014, 앞의 글; 楊雨蕾, 2016, 「朝鮮彩绘本北京城市地图」,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그리고 양윤정의 토론 의견은 아래 논문을 참조하였다. 양윤정, 2016, 「『朝鮮彩繪本北京城市地圖』에 대한 토론문」,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66 한동수, 2019,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首善全圖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직방세계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들도 조선 후기에 상당수 존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천하대총일람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여지전도』와 『중국전도』 등이 대표적이고, 특히 숭실대학교 소장 『천하여지도』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상학은 『천하여지도』를 전통적 동양식 세계지도 계열로 분류하고, 이 지도가 『황여전람도』의 도상적 영향을 받아 중국 해안선 묘사 방식을 수정하였다고 보았다.[67] 반면 이명희는 『천하여지도』가 명대 『광여도』 계열 중국전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평가하여, 저본 문제를 둘러싼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였다.[68] 한편 『천하대총일람도』에 대해 이태호는 이를 윤두서가 1712년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여, 조선 후기 문인화가의 직접적인 제작 가능성을 제기하였다.[69]

중국 관련 지도의 전래와 재해석은 수도지도·명승도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학자 시후이둥(席會東)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당화초본중국 지도』를 분석하여, 이 지도가 기존에 한국 학계에서 인식해 온 것처럼 북벌을 목적으로 한 군사지도가 아니라, 강희 연간의 황하와 대운하 치수 상황을 시각화한 수리지도임을 제시하였다.[70] 특히 강희 36~38년 동안 국과 우성룡의 치수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륭 30년 이전에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의 중국 지도 수입이 군사적 목적을 넘어 실용적·기술적 성격을 지닌 자료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미술사 분야의 정은주, 유미나, 박정해 등은 중국의 목판본·필사본 명승도가 조선 후기 산수화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실물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다.[71]

---

67 오상학, 2011, 앞의 책, 309~312쪽.

68 이명희, 2009, 앞의 글, 296쪽.

69 이태호, 2018, 「조선 후기 문인화가 공재 윤두서의 지도: 〈東國輿地之圖〉와 〈日本輿圖〉, 그리고 중국 지도 〈天下大摠一覽之圖〉」, 『한국고지도연구』 10(2).

70 席會東, 2013, 「海外藏康熙『黃運兩河全圖』研究」,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0; "중국전성 성곽 등 그려진 군사지도 『당화초본』 발견", 『중앙일보』, 1972. 3. 10.

71 정은주, 2008, 「조선후기 中國山水版畵의 성행과 《五嶽圖》」, 『고문화』 71; 유미나, 2009, 「朝鮮 後半期 中國名勝圖 연구: 山水畵譜 臨摹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3; 박정애, 2022, 「조선 후기 名勝과 名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컨대 18세기 이후 조선에 유입된 중국 관련 지도는 유형과 기능 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 세계관, 실용 지식 구축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도성도·명승도·세계지도·수리지도·명승도의 전래는 조선에서의 지도 제작 방식과 공간 감각에 새로운 층위를 형성하며, 조선 후기 지도 문화의 복합적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3.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기존 연구의 성과

지금까지 국내외 학계에서 이루어진 조선시대 한국과 중국 간 지도 문화 교류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개별 지도 또는 특정 지도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한중 간 지도 교류의 경로와 계보를 복원하려는 연구 방법이 정착되었다. 기존 연구는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지명·도상·윤곽·범위 등을 중국 지도와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지도 제작의 배경과 시기, 전거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도 자체를 단순한 시각 자료가 아니라 교류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1차 사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양국 지도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식에 반영된 상호 문화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규명되었다. 세계지도·관방지도·중국 지도·명승도 등 다양한 유형의 조선 지도뿐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조선 지도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도 문화 교류의 구체적 양상과 상호 수용·변용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었다. 특히 1402년 『강리도』, 명말·청초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구식 세계지도, 17~18세기 조선의 중국전도류 지도 등은 양국 간 지리 지식의 이동과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심층 연구되었다.

圖 향유 양상: 《韓中名勝圖帖》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셋째, 지도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사회적 배경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확장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전쟁, 외교, 사행 네트워크, 명·청 교체, 지식인의 사상적 지향 등 당대의 정치·사회적 조건을 지도 제작과 유통의 중요한 맥락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명·청 교체 이후 조선은 대청 인식의 변화와 북방 정보의 필요 속에서 중국의 관방지도와 문헌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식 관방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지도 교류를 단순한 기술적 영향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국제 질서·지식 체계·정치적 요구와 긴밀히 연동된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2)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점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풍부한 사례 분석과 유형별 검토를 통하여 확고한 학술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축적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는 연구 대상의 범위 설정, 자료 접근의 폭, 그리고 교류를 해석하는 관점의 균형에서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지점들은 개별 연구의 성취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명·청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도 문화 교류의 장기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분석 틀의 재정립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세계지도·중국 지도·관방지도처럼 잘 알려진 대표적 유형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유형들은 분명 조선과 명·청 사이 지도 교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 교류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였다. 예컨대 역대 왕조의 강역과 연혁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역사지도, 방안식 군현도에 반영된 계리화방 방식의 수용, 명·청대 세계지도의 한반도 묘사에서 확인되는 조선 지도 도상의 재해석 등은 모두 교류의 복합적 구조와 상호적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미 일부 연구들이 이러한 자료에 주목해 왔음에도, 연구 전체를 조망하면 특정 유형의 지도에 논의가 집중된 경향은 분명 존재한다. 이로 인해 조선과 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 간 지도 교류의 실제적 범위와 장기적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도 분석의 중심이 오랫동안 도상 비교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된다. 물론 정은주, 배우성, 임종태와 같은 연구자들은 지도 분석을 사행록·문집·실록·외교 문서 등 다양한 문헌 자료와 결합하여 지도 제작과 수용의 지식 구조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연구 전반을 놓고 보면 지도 실물의 형태·범위·지물 기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접근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지도 제작자와 필사자, 지도의 소비자와 수요층, 지도 유통과 복제의 조건, 출판 기술과 행정 구조 등, 지도 문화가 작동한 실제의 사회·제도적 맥락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지도는 단순한 시각 자료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정보 체계·출판 환경·국가 제도·사행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는 문헌 자료와 지도 실물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지도 문화의 운영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한중 지도 문화 교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흔히 유럽중심주의·중국중심주의·한국중심주의라는 서로 다른 중심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어 왔다. 서구식 세계지도와 과학적 지도학의 전래가 지나치게 강조된 연구들은 동아시아 내부의 복잡한 지식 교류를 상대적으로 주변화하는 경향이 있었고,[72] 중국 지도학의 위

72 이러한 유사한 한계는 중국 지도학사 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인 중국 고지도를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편향된 시각으로 평가하며 간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타 지역 간의 지도 문화 교류를 다룰 때에도 주로 '과학적 성취'로 간주된 서구식 지도 전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과 한국·일본·베트남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도 문화 교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미진하게 연구될 수밖에 없었다. 海野一隆, 2003, 『東西地図文化交涉史研究』, 清文堂; 임종태, 2012, 앞의 책; Timothy Brook, 2013, *Mr. Selden's Map of China: Decoding the Secrets of a Vanished Cartographer*, House of Anansi Press; 郭亮, 2015, 『十七世紀歐洲與晚明地圖交流』, 商務印書館; Luis Saraiva and Catherine Jami, 2018, *Visual and Textual Representations in Exchange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 16th–18th Centurie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卜正民 著, 孔妍婷·李易安·唐寧·黃俊嘉 譯, 2020, 『全圖: 中國與歐洲之間的地圖學互動』,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鄒振環, 20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을 기준점으로 삼은 논의는 조선의 능동적 재해석과 변용 과정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반대로 조선의 주체성을 강조한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서양 지도학과의 구조적 연관을 간과하는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단순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평가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연구 전통마다 설정한 비교 축과 자료 접근 방식이 달라 생겨난 복합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특정 중심을 기준으로 우열을 논하기보다, 다양한 중심성이 시대별·주체별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서 교류·중국-한국 교류·조선 내부의 재해석이라는 세 층위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그 핵심적 과제이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기존 논의가 지닌 일정한 제약이 확인된다. 기존 연구는 지도 도면의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지도학적 분석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교류를 형성한 역사적 맥락, 즉 정치 질서, 외교 체제, 사행 제도, 출판 및 복제 기술의 변동,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 등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개별 지도나 특정 유형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풍부하지만, 왜 어떤 시기에는 세계지도가 집중되고, 또 어떤 시기에는 관방지도나 중국 지도가 활발히 제작되었는지, 이러한 변화가 전쟁·정세·사상·기술·행정과 어떤 구조적 연관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도 교류는 수십 년 단위의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누적된 장기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그 역사적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지도학적 비교를 넘어서 정치·지식·출판·외교·사행 네트워크의 변화와 지도 제작·수용·재해석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그 구조를 시대별로 정밀하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기존 연구의 한계는 특정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시대 한중 양국 사이 지도 교류의 거대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분

『世界想象: 西學東漸與明清漢文地理文獻』, 中華書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석 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는 매우 방대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조선과 명·청이 공유한 지식 구조와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지도 유형의 장기적 변동을 하나의 구조로 엮어 낸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별 지도 분석을 넘어 14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이르는 장기적 시계 속에서 지도 교류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상호적·다층적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향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장기 구조 재구성: 시기 구분과 향후 연구 과제

1.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시기 구분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장기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가 어떠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변화하였는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풍부한 개별 지도 분석과 유형 연구를 축적해 왔지만, 이러한 성과가 장기적 구조나 시대별 변화의 흐름으로 조직된 경우는 드물었다. 다시 말해, 지도 제작의 기술 변화나 도상 차이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활발했으나, 교류가 어떤 정치·외교 질서 위에서 전개되었고, 시대별로 어떤 방향성을 띠었는지에 대한 거시적 설명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의 시기 구분 시도는 바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한국 지도학사에서는 임진왜란을 경계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 지도학 발달사』나 이찬·이상태·방동인·오상학 등의 연구는 조선 전기-조선 후기의 틀을 유지하며 각 시기 지도 제작의 기술·도형적 특성을 분석하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73] 방동인의 제1~4기 구분은 지도학 내부의 제도·기술 변화라는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다.[74]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조선 내부의 기술·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더라도, 조선과 명·청 간 교류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을 가진다. 지도 문화 교류는 특정 왕조 내부의 기술적 발전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양국의 외교 관계, 군사 충돌, 사행 체제, 출판 문화, 국제 질서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술사적·도형 중심 시기 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선-명·청 간 교류가 왜 특정 시기에 확대되거나 축소되었는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예컨대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은 지도 교류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켰고, 만주 지배질서의 확립과 청-조선 관계의 재편은 지도 유통의 경로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영조~정조 시기 조청 관계의 안정, 서구 지리학의 지속적 유입, 출판·측량 기술의 변화 등은 교류의 범위와 주체를 다시 확장시켰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도학 내부의 기술 단계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변화이며, 반드시 정치·외교·지식·문화 구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도학 중심 구분을 보완하여, 조선시대 한중 양국 관계의 변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전쟁·사행·출판·지식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지도 유형의 장기적 변동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를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이러한

---

73 『(한국) 지도학 발달사』에서는 한국 고지도 발달의 흐름을 '조선시대 이전', '조선전기', '조선후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과 관련된 견해는 아래의 여러 연구 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찬, 1991, 앞의 책, 범우사; 이상태, 1992, 「조선시대 지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方東仁, 2001, 『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오상학, 2015, 앞의 책; 국토지리정보원 편,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74 그는 조선전도의 제도와 기술 발전 단계를 중심으로, 이회의 「팔도지도」를 제1기,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를 제2기, 정상기의 「조선전도」를 제3기, 김정호의 「조선전도」를 제4기로 나누었다. 方東仁, 2001, 위의 책, 55~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기 구분은 단순히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류의 방향성·범위·주체·기능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분석 틀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역사적 전개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앞서 제기한 기존 연구의 한계인 개별 사례 중심 접근, 단기적 분석 경향, 그리고 기술사 중심 연구의 범위를 한층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기: 조선 건국에서 임진왜란 이전까지(1392~1592)

제1기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지도 문화 교류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이후 장기적 교류 구조가 형성될 토대가 마련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봉 체제를 유지하였고, 홍무제 재위기에 표전 논란과 같은 일시적 긴장이 있었음에도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도와 지리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조선과 명 모두 제작·유통·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였다.

조선은 명나라에서 제작된 지도를 중요한 지식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나, 명나라는 조선의 지리 정보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심 구조는 초기 교류의 성격을 규정하였고, 조선이 접근할 수 있었던 중국 지도 자료는 지리지의 부도나 판각본 지도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교류의 규모는 제한적이었지만, 이 시기는 이후 조선과 명·청 간 지도 교류가 전개될 제도적·지식적 기반이 마련된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제2기: 임진왜란에서 명나라 멸망까지(1592~1644)

제2기는 전쟁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지도 문화 교류의 양상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시기였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원군은 작전 수행을 위해 조선의 지리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제작한 여러 지도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현지에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직접 제작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지리 정보가 체계적으로 중국에 유입되었고, 이는 명말 지도 제작과 지식 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명말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서구식 세계지도를 제작·보급하였고, 베이징에 체류하던 조선 사신들이 이를 접함으로써 조선 내에서도 서구식 세계 인식과 지도 제작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조선 지도학은 이러한 새로운 지식 자극을 바탕으로 기존의 도상 체계를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과 홍타이지의 청 건국은 동북아 국제 질서를 크게 뒤흔들었다.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 침공 과정에서 후금·청은 조선의 지도를 다수 확보하여 군사 작전에 활용하였다. 이는 단순한 약탈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지리 정보가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종합하면 이 시기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교류가 절정에 달하면서 동시에 조선과 후금·청 사이 지도 교류가 새롭게 시작된 전환기였다. 사신, 군대, 선교사, 출판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지도 제작과 유통에 관여하였고, 이로 인해 교류의 주체와 경로가 복합적인 형태로 얽히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전체 지도 교류의 구조적 특징이 형성되는 핵심 변화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기: 청 입관 이후에서 영조 전반기까지(1644~1750)

제3기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지도 문화 교류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명·청 교체는 조선 사회의 정치·사상적 환경을 크게 흔들었고, 대명의리론·북벌론·영고탑 회귀설 등은 조선 지식인들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도는 단순한 지리 정보의 매체를 넘어 조선이 청을 경계하고 명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시각적 텍스트로 기능하였다.

조선 사신들은 청에서 군사용 지도를 적극 수집하거나 구입하여 귀국 후 관방지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전쟁에 대한 경계심과 변경 지리에 대한 필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이 결합되면서 지도는 국가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자료가 되었다. 아울러 조선 지식인들은 역대 중국 왕조의 강역과 연혁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역사지도를 제작하여 화이론적 질서를 재정립하려 하였다. 이들 지도는 단순한 도상 정보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지식적 산물이었다.

한편 청 역시 조선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였다. 강희제가 『황여전람도』 편찬 과정에서 조선 지역을 포함한 지도를 요구한 사실은 양국 간 지리 정보 교류가 단선적 수용이 아니라 상호 작용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구식 세계지도도 지속적으로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이는 명말 이후 형성된 동서 지식 교류의 흐름이 청대에도 이어졌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제3기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 지도 교류의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조선이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지도라는 매체를 활용해 세계 인식과 외교 전략을 다시 구성해 나간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4기: 영조 중후반에서 고종 즉위까지(1750~1864)

제4기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 지도 교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양국의 문화적 접촉이 정점에 달한 국면이었다. 영조 중반 이후 조·청 관계가 안정되자 도성도·관방지도·세계지도 등 다양한 지도가 청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조선 내부의 지도 제작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출판 문화의 확대와 학술 교류의 심화는 조선의 지도학이 청대 지도학의 이론과 기법을 빠르게 흡수하고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상기와 김정호의 전국지도는 이러한 지식 환경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들은 청대 지도학의 기술을 적극 활용했지만, 조선의 행정 체계와 지리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중국의 지식과 조선 고유의 지리 정보가 결합된 결과로, 조선 지도학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반면 청 내부에서는 영토 확장과 정국 안정 이후 주변 국가에 대한 관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점차 줄어들었다. 『황여전람도』에 수록된 〈조선도〉 이후 조선 관련 정밀 지도는 새롭게 제작되지 않았고, 민간 세계지도에서는 조선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국 교류의 비대칭성이 더욱 뚜렷해졌음을 보여 준다.

제4기는 조선이 청으로부터 대량의 지리 정보를 수용하며 지도학을 심화시킨 시기였지만, 청은 조선의 지도와 지리 정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대칭적 교류 구조는 지도라는 매체가 국제 질서와 지식 체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배제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제5기: 고종 즉위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까지(1864~1895)

제5기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 지도 교류가 한동안 활기를 띠었으나, 국제 질서의 빠른 변화 속에서 그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시기였다. 서세동점은 청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동아시아 질서를 약화시켰고, 조선과 청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도 제작과 지리 정보의 이동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과 청은 외교·상업·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의 지도를 확보하였고, 조선 내부에서는 청에서 유입된 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청 인식이 형성되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청의 행정 제도와 지리 정보를 참고하여 중국 지도와 세계지도를 재구성하며,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청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 시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졌고, 서구 열강과 일본이 지도 제작과 지리 정보 체계에 깊이 개입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과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역시 서구식 지리 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청 내부에서도 근대적 전환이 진행되면서, 주변국 지리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과 지식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청일전쟁 이후 청의 종주권이 소멸하면서 전통적 조·청 관계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그와 함께 조선시대에 형성된 한중 지도 교류의 기반도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제5기는 한중 지도 교류의 종결이자, 근대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계 인식과 지리 체계가 새롭게 자리 잡는 전환기적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시기별 향후 연구 과제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 분석을 바탕으로, 각 시기에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지도나 단편 사례의 나열을 넘어서, 시대별 변화 양상과 장기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조선 건국에서 임진왜란 이전(1392~1592) 시기에는 조-명 교류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리지 부도와 판각본 지도책이 핵심적인 전달 매체였다. 향후 연구는 이 시기 조선에 유입된 세계지도, 지리지 부도, 명승도, 구변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도상 구성·지리 정보의 전파 양상·수용 방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나라 지리지 속 조선 표상과 조선에서 편찬된 지리지의 대중국 인식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조선이 단순히 중국 지도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통념을 넘어 양국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에서 명 멸망까지(1592~1644) 시기는 전쟁과 국제 정세의 동요 속에서 지도 교류가 확대된 단계로, 명군과 후금·청이 조선에서 지도를 확보한 방식과 현지답사·제작 활동, 예수회 세계지도 유입 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지식 이동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복원하여 전쟁이 지도 수요·정보 획득·도상 재편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이 시기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전달된 지도나 지리 정보의 역전파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조선 지도가 명말·청초 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어지는 청 입관에서 영조 전반기(1644~1750) 시기에서는 조-청 관계의 긴장과 사상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도 교류가 나타났다. 향후 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는 조선 사신이 수집·재편한 관방지도와 역사지도의 제작 맥락, 정보 출처, 사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황여전람도』 속 〈조선도〉 제작 과정과 자료 구성, 양국 정보의 결합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시기 청의 경계심과 조선의 대청 인식이 지도 제작·유통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서구식 세계지도의 지속적 유입이 조선 지도학의 재편에 미친 영향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한편 영조 중후반에서 고종 즉위 이전(1750~1864) 시기는 조-청 지도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로, 양국의 문화적 접촉이 가장 밀도 있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유서·총서 속 지도, 승람도, 상영도, 세계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선 지도학이 중국 지도학 이론을 어떻게 수용·변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상기·김정호의 지도 제작에서 중국 자료가 활용된 방식, 조선의 행정·지리 현실과 결합되며 새로운 전국지도가 형성된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시기 교류는 조선의 수용은 활발했던 반면 청의 재수용은 미약했던 만큼, 지도 교류의 구조적 비대칭성을 해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종 즉위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1864~1895)까지는 조-청 교류가 한때 활발해졌다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점차 해체된 시기이다. 향후 연구는 청 북양파와 조선 대신 간 지도 교환, 중국 지도 수입과 활용, 서구식 세계지도·중국 지도 제작의 변동, 조선 지식인의 대청 인식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더불어 청일전쟁 전후의 시기 변동이 지도 제작 체계·지리 정보 이동 방식·지식 구조 재편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여, 전통적 조-청 지도 문화 교류가 어떻게 종결되고 근대적 지리 인식이 어떻게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각 시기 지도 교류는 정치 상황, 국제 관계, 사회 사조, 출판·지식 체제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별 교류 구조와 변화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복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장기적 흐름과 시대적 특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Ⅳ. 결론: 연구사 재구성의 의의와 향후 전망

이 글은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를 둘러싼 연구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개별 지도의 분석이나 특정 유형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장기적 구조와 교류의 복합성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는 도상 분석, 유형 분류, 영향 관계 규명 등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지도 제작과 유통을 둘러싼 지식 환경,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교류 주체의 다층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연구의 부족이라기보다, 조선과 명·청 사이 지도 문화 교류를 하나의 장기적 장(場)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조선 건국에서 19세기 말 국제 질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친 교류의 흐름을 시기별로 구조화함으로써, 지도라는 매체가 정치·군사·출판·사행·지식 체계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도학적 비교를 넘어, 지도 문화 교류를 동아시아 지식 이동과 국제 관계사의 일부로 위치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나아가 조선 지도학의 발전을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닌 넓은 문화 교류의 결과로 재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장기 구조적 관점을 토대로, 국내외에 산재한 지도 자료와 문헌의 체계적 정리, 지도 제작·재현·유통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복원, 시기별 교류 동력의 변화 분석 등을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과 명·청이 서로 다른 중심성을 유지한 채 교류를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 영향이나 단순 대립을 넘어서는 다층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정밀하게 해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재구성은 한국 지도학의 발전사를 새롭게 살피는 작업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식 교류의 구조와 문화적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글에서 시도한 연구사 검토와 시기별 구조 분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더 폭넓은 자료와 정교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지도 자료와 역사적 사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모든 사례를 완전히 포괄하기 어려웠고, 필자의 한계로 인해 일부 누락이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밝힌다. 아울러 지면의 제약으로 지도 도판과 표·도식 등을 수록하지 못한 점 역시 부득이한바,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양선, 1972,『매산국학산고』, 숭전대학교 박물관.

노정식, 1998,『한국의 고세계지도』, 대구교육대학교.

方東仁, 2001,『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배우성, 1998,『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_____, 2014,『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오상학, 2011,『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_____, 2015,『조선 전통 지리학사』, 들녘.

이찬, 1991,『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임종태, 2012,『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 창비.

전상운, 1966,『한국과학기술사』, 과학세계사.

정은주, 2012,『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 사회평론.

홍이섭, 1949,『조선과학사』, 정음사.

郭亮, 2015,『十七世紀歐洲與晚明地圖交流』, 商務印書館.

李明喜, 2006,『韓國收藏中國古地圖的情況及其研究』,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卜正民 著, 孔妍婷·李易安·唐寧·黃俊嘉 譯, 2020,『全圖: 中國與歐洲之間的地圖學互動』,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鄒振環, 2022,『世界想象: 西學東漸與明清漢文地理文獻』, 中華書局.

宮紀子, 2007,『モンゴル帝国が生んだ世界図』, 日本経済新聞出版社.

鮎沢信太郎, 1940,『東洋地理思想史研究』, 日本大学第三普通部.

海野一隆, 2003,『東西地図文化交渉史研究』, 清文堂.

_____, 2004,『地図の文化史: 世界と日本』, 八坂書房.

_____, 2010,『地図文化史上の広輿図』, 東洋文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kin, Alexander, 2021, *East Asian Cartographic Print Culture: The Late Ming Publishing Boom and its Trans-Regional Connections*, Amsterdam University Press.

Brook, Timothy, 2013, *Mr. Selden's Map of China: Decoding the Secrets of a Vanished Cartographer*, House of Anansi Press.

Saraiva, Luis and Catherine Jami, 2018, *Visual and Textual Representations in Exchange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 16th-18th Centurie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Short, John R., 2012, *Korea: a cartographic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논문

강신애, 2004, 「朝鮮時代 武夷九曲圖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혁, 2007,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지역과 지리』 13(3).

_____, 2015, 「『황여전람도』「조선도」의 母本 지도 형태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관동·관서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_____, 2018, 「한국 고지도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전문학회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0(2).

김양선, 1965, 「한국고지도연구초」, 『숭대』 10.

박계각, 2022, 「한국 古(고)해도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박정애, 2022, 「조선 후기 名勝과 名勝圖 향유 양상: 《韓中名勝圖帖》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9.

배우성(裵祐晟), 1997, 「17·18세기 淸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_____, 1997,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인식」, 『진단학보』 83.

_____,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과 『해동삼국도』」,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_____, 2000,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지』 22(1).

손고은, 2017, 「16세기 前半 朝明外交와 지리 지식 교류: 混一歷代國都疆理之圖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정보, 2020,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도연구』 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보경, 1997,「조선시대 고지도와 북방인식」,『지리학연구』29.

_____, 2004,「17세기 조선본 천하여지도의 고찰」, 藤井譲治·杉山正明·金田章裕,『絵図·地図からみた世界像』, 京都大學大学院文學研究科.

양윤정, 2016,「『朝鮮彩繪本北京城市地圖』에 대한 토론문」,『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오상학, 2001,「조선후기 圓形 天下圖의 특성과 세계관」,『地理學硏究』35(3).

_____, 2005,「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對中國 認識의 변화」,『동북아역사논총』5.

_____, 2009,「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중화적 세계인식」,『한국고지도연구』1(1).

유미나, 2009,「朝鮮 後半期 中國名勝圖 연구: 山水畵譜 臨摹帖을 중심으로」,『강좌미술사』33.

유영박, 1972,「요계관방지도」,『도서관』22(11).

윤홍기, 2022,「천하도의 기원을 찾기 위한 예비고찰」,『문화 역사 지리』34(3).

_____, 2023,「조선시대 선비들의 중국, 류구, 일본에 대한 이해와 태도」,『문화역사지리』35(2).

이명희, 2009,「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고지도」,『(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이상태, 1992,「조선시대 지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수, 2020,「『西北界圖』의 만주지역 底本 연구」,『한국고지도연구』12(2).

이찬, 1976,「韓國의 古世界地圖: 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대하여」,『한국학보』2(1).

_____, 1979,「東覽圖의 特性과 地圖發達史에서의 位置」,『진단학보』46·47.

_____, 1989,「조선시대의 지도책」,『한국측지학회지』7(2).

_____, 1992,「조선전기의 세계지도」,『학술원논문집』31.

이태호, 2018,「조선 후기 문인화가 공재 윤두서의 지도: 〈東國輿地之圖〉와 〈日本輿圖〉, 그리고 중국 지도 〈天下大摠一覽之圖〉」,『한국고지도연구』10(2).

이호, 2023,「金壽弘『천하고금대총편람도』제작 배경 연구」,『한국학』46(3).

_____, 2024,「金壽弘『天下古今大總便覽圖』에 나타난 天下像과 天下觀에 대한 再檢討」,『藏書閣』52.

_____, 2024,「김수홍『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계보와 저본에 대한 재검토」,『동북아역사논총』8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25,「조선후기 명·청대 중국 천하도의 전래와 조선 화이론적 천하도의 탄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상훈, 2006,「淸代 皇輿全覽圖 수록『朝鮮圖』연구」,『동원학술논문집』8.

전오라, 2003,「17세기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숙, 2015,「조선시대 무이구곡도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민, 2002,「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古典文學硏究』22.

정은주, 2008,「조선후기 中國山水版畵의 성행과《五嶽圖》」,『고문화』71.

_____, 2014,「中國에서 流入된 地圖의 朝鮮的 變容」,『명청사연구』41.

지용환, 2008,「朝鮮時代 西湖圖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웅, 2020,「조선인이 만든 중국 지도『성경여지전도』」,『(월간) 산』614.

한동수, 2019,「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首善全圖에 관한 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영우, 1998,「『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본 여지도』에 대하여」,『한국학보』24(2·3).

허태구, 2014,「임진왜란과 지도·지리지의 군사적 활용」,『사학연구』113.

형기주, 1963,「한국 고지도에 관한 연구」,『대한지리학회지』1.

劉晶, 2022,「萬曆援朝戰爭期間東北亞地區地理知識的獲取, 傳遞與呈現: 以『華夷沿海圖』為中心的考察」,『歷史地理硏究』42(2).

_____, 2025,「《朝鮮日本圖說》《朝鮮圖說》與明末對朝鮮的地理認知」,『中國歷史地理論叢』40(2).

劉宗迪, 2016,「山海經與古代朝鮮的世界觀」,『中原文化硏究』6.

李佳, 2025,「淸代中國與朝鮮的地圖學交流: 以『燕行錄全集』所收『熱河圖』與『天下地圖』爲中心」,『使行錄與東亞歷史文化硏究(下冊)』, 北京大學出版社.

李軍, 2020,「跨文化語境下朝鮮『天下圖』之"真形":兼論古代地圖硏究的方法論問題」,『美術大觀』12.

李花子, 2022,「朝鮮王朝『西北界圖』考: 兼論與淸朝輿圖, 志書的關係」,『淸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

_____, 2025,「福克思影印『皇輿全覽圖』之『朝鮮圖』再硏究」,『中國歷史地理論叢』4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方晴, 2019,「『禹貢圖』研究: 想像, 繪製與閱讀」, 重慶大學 碩士學位論文.

席會東, 2013,「海外藏康熙『黃運兩河全圖』研究」,『中國國家博物館館刊』10.

孫靖國, 2018,「台北故宮藏滿漢文『王泮題識「輿地圖」朝鮮摹繪增補本』考釋: 兼論清代地圖史的開端」2018年中國歷史地理學術研討會, 北京 中國人民大學.

楊雨蕾, 2012,「關於"王泮題識輿地圖朝鮮摹繪增補本"的韓國藏本」,『文獻』4.

_____, 2013,「『天地全圖』和18世紀東亞社會的世界地理知識: 中國和朝鮮的境遇」,『社會科學戰線』10.

_____, 2016,「朝鮮彩绘本北京城市地图」,『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汪前進, 1994,「歷史上中朝兩國地圖學交流」,『中國科技史料』1.

任金城 · 孫果清, 1986,「關於法國國家圖書館發現的一張十六世紀的中國地圖」,『文獻』1.

郑永昌, 2023,「時代印記: 國立故宮博物院藏〈北洋海岸圖〉試析」,『故宮文物月刊』488.

宮崎市定, 1957,「妙心寺麟祥院藏の混一歷代國都疆理地図について」,『神田博士還曆記念書誌學論集』. 神田博士還曆記念会.

船越昭生, 1971,「朝鮮におけるマテオ · リッチ世界地図の影響」,『人文地理』23(2).

小川琢治, 1910,「近世西洋交通以前の支那地圖に就て」,『地學雜誌』258卷 160號.

長正統, 1982,「内閣文庫所蔵『朝鮮国図』およびその諸本についての研究」,『史淵』119.

田保橋潔, 1932,「朝鮮測地史上の一業蹟」,『歷史地理』60(6).

井上充幸, 2007,「東アジアにおける楊子器図の展開」, 藤井譲治 · 杉山正明 · 金田章裕 編,『大地の肖像: 絵図 · 地図が語る世界』, 京都大学学術出版会.

中村拓, 1943,「東亞地図の歷史的變遷」,『大陸文化研究続』, 岩波書店.

_____, 1966,「朝鮮に伝わる古きシナ世界地図」,『朝鮮学報』39 · 40.

川村忠博, 2011,「ソウル大学校奎章閣所蔵の朝鮮製『海東三国図』について」,『歷史地理學』53(5).

青山定雄, 1937,「明代の地図について」,『歷史学研究』1(11).

_____, 1938,「元代の地図について」,『東方学報』8.

秋岡武次郎, 1933,「安鼎福筆地球儀用世界地圖: 東洋製作の古地球儀用舟形図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歷史地理』61(2).

海野一隆, 1978,「朝鮮李朝時代に流行した地図帳: 天理図書館所蔵本を中心として」,『ビブリア』70.

Destombes, M., 1974, "Une carte de Chine d'époque Ming récemment découverte," *Gazette des Beaux Arts*, 01.

Harley, J. B. and David Woodward, 1987, "Preface,"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dyard, Gari, 1994, "Cartography in Korea,"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ckay, A. L., 1975, "Kim Su-Hong and the Korean Cartographic Tradition," *Imago Mundi*, Vol. 27.

Yee, Cordell D. K., 1994, "Cartography in China,"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도 문화 교류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동안의 연구 동향과 논의 구조를 검토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명말·청초 서구식 세계지도, 관방지도 등 몇몇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자료 이용의 범위와 분석 시각, 연구의 시간적 스케일 면에서 여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지도 도상 비교에 집중된 분석은 지도 제작·유통·수용의 실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조선-명·청 간 교류를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파악하려는 시도도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은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를 정치·외교 관계와 지식 환경의 변동과 연계하여 다섯 시기로 나누어 살피고, 시기별 교류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라는 매체가 지리 지식의 전달을 넘어 국제 질서와 문명 인식, 사상적 배경을 반영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녔음을 확인하고,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었던 상호성·다층성의 측면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의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교류 양상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시기 구분의 재정리와 문제의식의 제시가 향후 보다 폭넓은 자료 조사와 정밀한 분석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조선시대, 한중 지도 문화 교류, 지도학사, 학술사 정리, 시기 구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visiting Sino–Korean Cartographic Exchange in the Joseon Period:

An Integrated Historiographical Review and a Reconstruction of Its Long–Term Dynamics

Li, Hao
(Post–doctoral fellow, Peking University)

This study revisits the cartographic exchange between Joseon Korea and Ming-Qing China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eassessing major trends in existing scholarship and identifying areas that require further refinement. Previous research has yielded important insights through close examination of emblematic cases such as the Kangnido, late-Ming and early-Qing Jesuit world maps, and various military and administrative maps. Nevertheless, the scope of source utilization, the analytical perspectives adopted, and the temporal scale of investigation remain limited in several respects. In particular, analyses centered primarily on cartographic imagery have not fully accounted for the practical contexts of mapmaking, circulation, and reception; nor has there been sufficient accumulation of research seeking to understand Joseon-Ming-Qing exchanges within a coherent, centuries-long framework.

In response, this article situates Sino-Korean cartographic exchange within the shifting political, diplomatic, and intellectual environments of the Joseon period, proposing a five-part periodization that highlights the distinct features and evolving character of each stage. This approach demonstrates that maps functioned not only as repositories of geographic knowledge but also as composite media reflecting international order, civiliz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intellectual orientations of their time. It also calls attention to dimensions of reciprocity and multi-layered interaction that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emphasis in earlier studies.

This study is an initial attempt to provide a more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dynamics of Sino-Korean cartographic exchange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it does not claim to encompass the full breadth of sources or the complexity of all exchange patterns. Nonetheless, it is hoped that the revised periodization and problematization presented here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grounded in broader source exploration and more fine-grained analysis.

Keywords
Joseon period, Sino-Korean cartographic exchange, history of cartography, historiographical review, periodiz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3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연구논문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도문제'의 국제법

– 중립 문제를 중심으로

최덕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II. 러일 포획심검소(捕獲審檢所)의 설치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결성
III.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과 석탄 네트워크
IV. 쓰시마해전과 '독도문제'의 국제법
V. 결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서론

로제스트벤스키(Рожественский) 함대[1]의 동항(東航)은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발트해에서 아시아까지 함대에 석탄을 공급했고 동맹국 프랑스는 식민지 항구를 기항지로 제공함으로써 함대의 극동 항진을 지원했다. 이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국제적이고 초국가적인 특성을 지녔음을 의미했다. 이 함대는 청일전쟁의 삼국간섭과 유사한 러시아·독일·프랑스 해군 공조 체제를 배경으로 극동으로 항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국제성은 중립국인 독·불의 중립 위반이라는 태생적인 문제를 내포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는 대한제국 전시중립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중립은 독도를 포함한 영해가 중립 해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유리했다. 따라서 러일전쟁 최대의 국제법적 화두가 중립 문제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2]

러일전쟁이 종래의 전쟁과 구분되는 특징은 헤이그협약(1899)에 서명한 국가들이 치른 최초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제법 준수 여부가 교전 양국의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에 러일전쟁에서 국제법의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해전에서

* 논문 투고일: 2025.10.9. 심사 완료일: 2025.11.25. 게재 확정일: 2025.11.25.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6021193).

1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러시아 해군 총참모장 З. П. 로제스트벤스키(З. П. Рожественский) 제독의 지휘하에 발트해를 출발, 쓰시마해전(1905.5.27~28)에서 괴멸된 러시아 함대를 칭한다. 공식 명칭은 '러시아 함대 제2태평양전대(2-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скадра Росс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флота)'이며 일본에서는 통칭 '발틱함대(バルチック艦隊)'로 부른다. 그러나 러시아 함대 제2태평양전대와 발틱함대라는 용어는 함대를 러시아라는 단일국가로 한정함으로써 초국적 성격의 함대 본연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Н. И. 네보가토프(Н. И. Небогатов) 제독이 지휘하는 제3태평양전대가 제2태평양전대에 합류(1905.5.14)함에 따라 러시아의 공식 명칭 역시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러일전쟁 후속 조치로 개최된 헤이그평화회의(1907)에서 제정된 13번째 협약이 "해전에서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XIII concer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in naval war. 18 October 1907)"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중립(中立) 문제이다. 이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 과정에서 중립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함대를 은밀히 지원하고자 했던 반면 영국과 일본은 독일과 프랑스의 엄중 중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립 문제는 해전에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해군들이 게임의 룰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둘째, 해상 포획 규정(海上捕獲規程)이다. 이는 교전국 해군이 적국 함선이나 전시금제품(Contraband of war, 戰時禁制品)을 운송하는 중립국 선박을 임검, 수색하여 포획할 수 있는 포획권의 근거였다. 러일전쟁 시기 국제법은 중립 수역에서 포획을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이를 반영한 '해상 포획 규정'을 시행(1904.3.12)했다.[3] 따라서 일본 해군이 중립 수역에서 러시아 선박을 나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에 러일전쟁의 분수령인 쓰시마해전이 벌어진다면, 전시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중립 유지 여하에 따라 한반도 영해와 독도는 중립 수역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쓰시마해전에서 이탈한 러시아 군함들이 독도 해역으로 도피한다면, 일본 해군이 이를 나포하기 위해 중립 수역으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했다. 일본 해군은 황해해전(1904.8.10)에서 중립국인 청국 항구 즈푸(芝罘)로 대피한 러시아 수뢰정 레쉬텔늬(Решительный)호를 나포하여 예인한 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4] 주미 러시아 대사가 청국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만주로 한정된 전장(戰場)이 청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T. 루즈벨트(T. Roosevelt) 미국 대통령에게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청국에서 제2의 의화단 사태

3 『日本外交文書』 第37巻 · 第38巻 別冊 日露戦争 VI巻, 389쪽 海上捕獲規程案閣議提出ニ方リ意見照会ノ件(1904.2.8).

4 레쉬텔늬호는 1901년 러시아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02년 러시아 해군에 배치되었다. 1904년 일본 해군에 포획된 이후, 정비를 거쳐 아카쓰키(暁)호로 명명되어 1905년 1월 일본 해군에 배속되었다. 1905년 5월 27일 쓰시마해전에 참전 후, 야마비코(山彦)로 개명했다. 1917년 퇴역 후 해체되었다. Hansgeorg Jentschura, Dieter Jung and Peter Mickel, 1977, *Warships of Imperial Japanese Navy, 1869–1945,* Naval Institute Press, p. 134; J. S. Corbett, 2015a, *Maritime Operations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Vol. II, Naval Institute Press, p. 1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재발한다면, 문명 세계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는 대통령이 중립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5] 따라서 쓰시마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의 패잔(敗殘) 선박들을 동해상에서 포획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독도의 영토 편입(1905.2.22)이었다. 이를 통해 독도가 중립 수역이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도문제의 국제법 관련 연구는 미진하다. 이를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도문제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자. 우선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동항(東航)과 관련된 국제법 문제는 독일 함부르크-아메리카 해운(Hamburg- America Line)의 러시아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이 그 요체이다. 중립국인 독일이 교전국 함대에 석탄을 공급함으로써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립국 프랑스의 경우, 식민지 항구를 교전국 함대의 기지로 제공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67일(1905.1.9~3.16) 정박한 후, 인도차이나로 항진하여 깜라인만(Cam Ranh bay)과 인근 해상에서 정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1908년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의 『러일전쟁에 적용된 국제법(International Law applied to the Russo-Japanese war)』에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관련된 독일과 프랑스의 중립 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다.[6] 이는 연구

5 J. Hay to Cassini, Jan. 17, 1905, *FRUS* (1905), p. 758.

6 Sakuye Takahashi, 1908, *International Law applied to the Russo-Japanese war with the Decisions of the Japanese Prize courts*, New York. 한편 미국의 정치학자 A. S. 허시(A. S. Hershey)는 러일전쟁 직후 저서 『국제법과 러일전쟁 외교』의 제7장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러시아 함대의 東航에 필요한 석탄 공급과 보급지원과 관련한 국제법 문제들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제1장 "러일 개전과 한국의 중립 위반 의혹(The Outbreak of War and The Alleged Violation of Korean Neutrality)"에서 한국은 중립국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침략은 중립성 침해 "의혹"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1876~1882년 이후에 이론적으로 주권과 독립을 유지했지만, 실제로 일본의 보호하에 있는 속국(dependent state)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허시는 러일전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중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mos S. Hershey, 1906, *The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p. 72]. 또한 일본의 최근 연구 성과인 하라다 메리사(原田明利沙)의 「第一次世界大戦前の戦時法整備と万国国際法学会 (IDI)」는 허시의 견해를 발전시켜 한국이 오히려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러일전쟁 때 조선 동북부의 전장에서 러일 양국 점령지를 오가던 한국 지방관이 러시아에 군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러일전쟁을 계기로 중립 문제가 만국국제법학회의(IDI) 전시법의 주요 논제가 되었다면, 하라다의 주장은 논리적 정연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범위를 교전 양국과 만주와 한국의 사례에 한정함으로써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국제성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트해에서 출발하여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으로 항진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중립 문제에 대한 연구는 러일 양국에 국한하지 말고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7]

쓰시마해전과 독도문제의 국제법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동항(東航)에 대비한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이나 사료 발굴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8] 최문형 교수가 1977년 제시했던 발틱함대의 동항에 대비하기 위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학설 역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9] 이 학설은 일본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동항에 대비하기 위해 독도라는 전략 거점을 편입했다는 정황상의 논리는 갖추었으나, 영토 편입을 강행해야만 했던 국제법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는 김병렬이다. 그는 최문형의 학설을 반박하기 위해 일본이 체결한 제1차 한일의정서(1904.2.23)를 제시했다.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시간과 장

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였던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原田明利沙, 2024, 「第一次世界大戦前の戦時法整備と万国国際法学会 (IDI)」, 『国際関係論研究』 第39号, 58~60쪽]

7 러일전쟁 기간 러·독·불의 해군 협력 관련 주요 자료들은 다음을 참조할 것. 독일의 러일전쟁 관련 외교문서 1) Die groß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Sammlung der diplomatischen Akten des Auswärtigen Amtes. 19. Der Russisch–Japanische Krieg(이하 'G. P.'), 2) W. Goetz ed., 1920, *Briefe Kaiser Wilhelms II. an den Zaren, 1894 – 1914,* Berlin; 프랑스의 러일전쟁 관련 외교문서: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édités par la Commission de publication des documents relatifs aux origines de la guerre de 1914 (1871–1914), (이하 '*DDF*'). 이 문서의 디지털자료는 https://gallica.bnf.fr/ark:/12148/ bpt6k65674545/ f13.item.

8 송휘영의 연구에 따르면, 2008~2019년의 12년간 한국에서 생산된 독도 관련 논문은 연평균 148.2편으로 같은 기간 일본의 14.25편에 비해 10.4배나 많다. 이에 그는 선행 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양함으로써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휘영, 2020, 「2000년 이후 독도 관련 역사학 분야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독도연구』 29.

9 최문형, 2005, 「露日戰爭과 日本의 韓國占取」, 『역사학보』 188. 필자의 지도교수이셨던 故 崔文衡 교수님께 이 논문을 헌정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에 구애받지 않고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발틱함대의 동항에 대비하여 독도의 편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병렬은 자신의 학설을 개진하지 못한 채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고 결론 내렸다.[10] 따라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도 편입의 상관관계를 밝혀 줄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영유권 문제라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러일전쟁의 해전들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독도문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항진을 추동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대러 해군 협력 문제이다. 이를 통해 러일전쟁을 시종일관 관통했던 국제법의 최대 화두인 중립 문제에 천착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 정부가 제1차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독도 편입을 강행한 국제법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은 패주하는 러시아 군함의 도피처를 제거함으로써 중립 수역에서 선박의 나포를 금지한 해상 포획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러일 포획심검소(捕獲審檢所)의 설치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결성

1909년 주일 러시아 대사 H. A. 말렙스키 말레비치(H. A. 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ч)는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코콥초프-이토 회담에서 러일전쟁 미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무성에 건의했다. 이는 러일전쟁 기간 일본에 의해 나포되어 부당하게 억류된 러시아 선박들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주일대사는 동청철도 회사 소속 선박 3척[묵덴(Мукден)호, 아르군(Аргун)호, 만주리아(Маньчжурия)호]이 전쟁 기간 일본에 불법 나포되어 억류되어 있다고 보고

10 김병렬, 2016,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 제언」,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묵덴호는 1904년 2월 6일 중립 항구인 부산에서 일본 해군에 포획되었고, 아르군호는 2월 7일 대한해협에서, 그리고 만주리아호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정박 중에 나포되었다.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묵덴호와 아르군호는 일본의 선전포고(1904.2.10) 이전에 중립 항구인 부산과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에 나포되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주일 대사는 일본이 먼저 하얼빈(哈爾濱) 회동을 제안해 온 기회를 이용하여 아무런 변상(총 자산가치: 175만 9천 루블)도 하지 않고 일본에 억류된 러시아 선박들의 반환 문제를 제기하도록 В. Н. 코콥초프(В. Н. Коковцов) 재무상에게 건의했다.[12]

그렇다면 왜 일본의 포획심검소(捕獲審檢所, Prize court)는 선전포고 이전에 중립 항구에서 러시아 선박을 나포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가? 묵덴호는 중국 다롄(大連)에 본사를 두고 승객, 화물, 우편물을 운송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동청철도 회사 소유 선박이었다.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상하이(上海)-나가사키-부산-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운항하는 묵덴호는 1904년 2월 5일 나가사키에서 출항하여 부산에 기항한 후, 2월 6일 오후 2시 45분 일본 군함에 포획됐다. 따라서 묵덴호와 그 적재 화물이 일본 해군의 합법적인 전리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나가사키의 사세보(佐世保) 포획심검소에서 개최되었다.

1904년 5월 26일 포획심검소의 재판에서 소송 청구인 측은 묵덴호 포획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러일전쟁은 일본의 뤼순(旅順)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선박의 포획은 러일 간의 전쟁 상태가 존재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박은 방면되어야 한다. 둘째, 만일 개전 시점을 외교관계 단절 통지 시점으로 간주하더라도 러시아 외무대신에게 외교관계 단절을 통지한 시간은 1904년 2월 6일 오후 4시였고 선박의 포획은 오후 2시 25분이었기 때문에 포획은 부당하다. 셋째, 묵덴호의 화물 가운데 중립국의 화물은 포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이 방면될 경우, 화물도 함께 방

11 РГИА. Ф. 560, Оп. 28, Д. 416 Л. 132~133: Телеграмма Управления КВЖД Е.П.Львову, 9 окт.,1909 г.

12 РГИА. Ф. 560, Оп. 28, Д. 421 Л. 18.: Телеграмма Вебера Коковцову, 4 окт., 1909 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되어야 한다. 넷째, 묵덴호는 한국의 영해에서 포획되었으며 한국의 중립국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러일전쟁 발발 이전에 중립국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산항에서 나포된 묵덴호는 반드시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였다.[13]

묵덴호 관련 소송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일본 포획심검소의 판결은 러일전쟁의 개전 시점과 한국의 중립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일본의 뤼순 공격(2.8)을 개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반박되었다. 개전 시점은 교전국 간의 첫 사격이나 선전포고 및 외교단절 통지가 전달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오히려 개전 시점은 전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컨대 전쟁은 행위가 아니라 의도가 드러나는 시점에 발발한다는 것이다.

일본 포획심검소는 러일 양국 해군의 활동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쟁은 이미 묵덴호 포획 이전에 발발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개전의 러시아 측 원인은 만한(滿韓)문제를 둘러싼 러일 외교협상에서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회신을 지연시키면서 만주로 육군을 증파하고 뤼순에 전함을 집결시킴으로써 대일전쟁 의지를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 원인은 1904년 2월 5일 대러 외교관계 단절을 통지하는 동시에 교전 준비에 착수함으로써 2월 6일 오전 7시 일본 함대는 대러 공격을 목적으로 사세보를 출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획심검소는 양국의 이러한 의도로 볼 때, 묵덴호 포획 시점이 선전포고 이전 혹은 이후였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사세보 심검소의 논리에 따른다면, 묵덴호에 적재된 중립국의 화물 역시

13 C. J. B. Hurst & F. E. Bray eds., 1912–1913,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being a collection of translations and summaries of the principal cases decided by thr Russian and Japanese prize court arising out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5. Vol. II. Japanese Cases*, London, pp. 12~17. (이하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Vol. II*'). 이 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주신 美의회도서관 엘리 김(Elli Kim)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몰수 대상이었다. 소송인들은 화물 가운데 프랑스 기업 마르세론 슈레터 회사(Marceron Schreter Co.)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대리점으로 보내는 화물은 중립국 프랑스의 소유임을 지적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세보 심검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개설된 프랑스 지점에 보내는 본사의 문서 박스를 제외한 모든 화물의 몰수를 판결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적국 선박에 실린 적국의 화물은 몰수 대상인바, 프랑스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의 국적은 수취자의 국적이 아니라 수취인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14] 따라서 마르세론 슈레터 회사가 프랑스 회사이지만, 블라디보스토크 대리점은 러시아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취 예정인 화물은 적국에 이로운 재산으로 간주하였다.

묵덴호가 부산에서 포획됨으로써 제기된 한국의 중립 문제 역시 사세보 심검소는 한국의 중립을 부정했다. 한국은 '사실(de facto)'상 중립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의 영해에서 이루어진 포획은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묵덴호의 포획은 합법이며 선박은 몰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일본의 포획심검소의 결정에 따라, 전시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부산에 정박 중이던 묵덴호는 일본 해군의 합법적인 전리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사실상 중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해역에서의 러시아 선박의 포획 역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는 역으로 한국이 중립국가로 인정될 경우, 중립국가 해역에서의 러시아 선박의 나포는 불법이 된다는 해석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일본 정부가 3월 15일에 시행한 '해상 포획 규정' 제3조에 따르면,[15] "중립국의 영해 혹은 조약에 의해 적대적 작전 지역 밖에 명확히 위치한 해역에서는 임검, 수색 또는 포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묵덴호 나포의 합법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증거보다는 의도를 앞세워야 했고 나아가 그들이 훼손한 대한

14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Vol. II,* pp. 12~15.

15 『日本外交文書』 第37卷 · 第38卷 別冊 日露戦争 VI卷, 357쪽 海上捕獲規程案閣議提出ニ方リ意見照会ノ件(1904.2.8) 海上捕獲規程. 제3조 포획권(捕獲権)은 중립국의 영해 및 조약에 따라 명백히 전쟁 범위 밖에 해당하는 수역 내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국의 중립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는 부산과 제물포에서 중립이 부인되거나 혹은 인정되었던 모순적인 상황과 맞물려 여전히 유동적이었다. 요컨대 한반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러시아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 결과와 연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전조(前兆) 현상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다수의 중립국 선박들이었다. 이들은 러일 양국이 전시금제품으로 지정한 영국 웨일스(Wales) 석탄을 적재하고 있었다. 사세보 포획심검소 판례집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한 중립국 선박들이 웨일스 석탄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다 포획된 사례는 14건이다. 이들이 일본 군함에 의해 포획된 시기는 대체로 1905년 1월에서 3월 초 사이였다. 석탄을 운반한 중립국 상선의 포획 근거는 러일전쟁 초기 양국이 전시금제품 목록을 공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상에서 포획할 것임을 밝힌 포고령이었다. 1904년 2월 14일 러시아가 공포한 '대일전쟁 기간 러시아 정부가 시행할 규정'에는 10종으로 분류된 전시금제품이 명시되어 있었다. 요컨대 '해상 및 육상에서 전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이 전시금제품이었고 이것이 적에게 제공되거나 적을 위해 운반되는 경우 포획 대상이었다. 일본 역시 적국 영토 및 적군에게 운반되는 물품을 전시금제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상 포획 규정'에 명시한 바 있었다.[16] 그렇다면 왜 중립국 선박들은 나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시금제품에 해당하는 석탄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반했을까?

이는 차르 정부가 뤼순 함락 이후 예견되는 러일해전의 작전기지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상정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영국에 파견된 러시아 공작원들이 전시금제품인 석탄의 블라디보스토크 운반을 주문했던 화주(貨主)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17] 따라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최종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될 것임이 틀림없었다.

16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Vol. I. Russian cases · Vol. II. Japanese cases.*

17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Vol. II,* pp. 236~2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는 러일전쟁은 장기간에 걸친 길고 힘든 전쟁이 되겠지만 결국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전쟁 발발 1년 전 1903년 2월 육군 대신 쿠로파트킨은 황제에게 단지 육군력으로도 일본을 막아 낼 수 있으며, 일본군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그들의 패배는 더욱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었다.[18] 러일전쟁 초기 러시아의 열세가 명백했음에도 1904년 봄 차르의 지시로 러시아의 동아시아문제특별위원회 사무총장 A. M. 아바자(А. М. Абаза) 제독이 승전국 러시아의 행동 계획(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을 작성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만주 전역과 한국은 러시아에 복속될 것으로 예견됐다. 패전국 일본도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에 복속시킨다는 구상도 포함하였다. 또한 서구열강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극동총독부 관할 지역에 25년 기한의 자유무역항을 개설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19] 따라서 차르 정부는 초반의 열세를 만회할 전세 역전의 카드인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파견에 거는 기대가 컸다.

차르가 신뢰하는 제독이 제2태평양함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판단은 개전 직후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С. О. 마카로프(С. О. Макаров) 제독이 기뢰 폭발로 사망(1904.4.13)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З. П. 로제스트벤스키(З. П. Рожественский) 제독을 오랜 시간 면담(1904.4.25)한 차르는 제독을 총참모장을 겸직한 채 극동으로 파견될 함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로제스트벤스키는 황제 요트의 운항장교로서 단지 차르만이 총애하는 제독은 아니었다. 그는 1902년 8월 발트해의 레발(Reval)에서 차르와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Wilhelm II)가 참관한 함포사격 훈련을 지휘함으로써 카이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었다. 빌헬름 2세가 레발을 떠나면서 독일 최신 군

18 Д. Б. Павлов., 2011, *На пути к Цусиме: беспримерный поход 2-й Тихоокеанской эскадры,* М., pp. 7~8.

19 И. В. Лукоянов., 2008, *Не отстат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XIX-нач-але XX вв.*, Спб, p. 479; И. В. Лукоянов., 2007, Портсмутский мир,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 2, p. 17. 이 계획은 차르와 그 측근인 А. М. 아바자(А. М. Абаза), К. И. 보가크(К. И. Вогак) 그리고 극동 총독 Е. И. 알렉세예프(Е. И. Алексеев)만이 공유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함 설계도를 차르에게 넘겨주고 차르를 "태평양의 제독"으로 자신을 "대서양의 제독"으로 호칭한 것은 영일 해군동맹에 맞서는 러독 연합해군 결성을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20]

더욱이 차르와 카이저는 황화론(黃禍論)의 신봉자로서 공통의 사상과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으로 표상되는 동아시아 이교도의 침략에 맞서 유럽 기독교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기독교 세계 수호라는 슬로건하에 독일의 해군 지원을 동력으로 삼아 극동으로 발진할 예정이었다. 특히 독일 선원들이 운항하는 석탄 수송선이 함대에 배속되어 마다가스카르에서 인도차이나까지 연료 보급을 지원했다. 따라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러시아 해군의 전략 자산과 독일의 에너지 협력이 결합된 초국적 혼성함대의 원형을 이루게 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계획에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 발트함대가 주축을 이룬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극동으로 발진할 경우, 발트해 방위의 공백에서 비롯될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함대의 극동 항진에 필요한 에너지, 즉 석탄 공급 문제였다. 일본의 대러 기습 공격의 배경에 해양 강국 영국과 체결한 영일동맹이 있었듯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 배후에는 발트해의 안전을 담보하는 독일의 해군 협력이 있었다. 러독 양대 제국의 해군 협력은[21] 영일동맹의 대응추로서 양국 황실의 혈연적 유대가 그 배경이었다.[22] 따라서 카이저 빌헬름 2세의 후원과 협력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결성과 극동 항진의 전 과정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23]

---

20 J. C. Röhl, 2013,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9~183.

21 J. L. Brcker, 2021, "'To Grab, When the Grabbing Begins' German Foreign and Colonial Polic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of 1894/95 and the Triple Intervention of 1895,"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44:1, pp. 9~10.

22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는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와 러시아 차르 파벨 1세(Paul I of Russia, 1754~1801)의 증손자였고 니콜라이 2세 부인(Alix of Hesse)과는 사촌지간이었다.

23 W. Goetz, 1920, *Briefe Wilhelms II. an den Zaren 1894–1914,* Berlin, pp. 333~3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독 황제들이 영일동맹 체결 이후 레발 회동(1902.8.6~8.8)에서 합의한 해군 협력 계획은 독일이 러시아 서부 국경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발트함대와 러시아 유럽 군대의 극동 파견의 배경이 되었다.[24] 이에 한반도 해역의 제해권 확보를 위한 영일 해양동맹과 러독 해군협력의 대립 구도는 동아시아에서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의 건함 경쟁으로 전이되는 연동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러일전쟁이 사실상 영국과 독일을 대신한 대리전쟁의 성격을 내포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발발한 러일전쟁은 영독 간의 유럽전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되었다.

Ⅲ.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과 석탄 네트워크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에너지 공급 문제는 독일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해외 식민지를 보유하지 않았던 러시아의 함대가 3대양을 횡단하는 대규모 원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최우선의 고려 사항은 바로 석탄 보급이었다. 증기기관이라는 인공동력이 장착된 군함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신속하게 전 세계로 이동하는 교통혁명을 이끌었지만,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쓰시마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곳에 당도할 수 있도록 석탄이 보급되는 게 최우선의 과제였다.

증기기관 시대 영국의 해양 패권의 지렛대는 석탄 네트워크였다. 열효율이 높은 석탄을 채탄하여 주요 항로에 설치한 저탄소에 비축함으로써 구축

24 J. C. Röhl, 2013, *op. cit.*, pp. 184~185; Jonathan Steinberg, 1970, "Germany and the Russo-Japanese Wa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5-7, p. 1967. 레발(Reval)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의 옛 지명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글로벌 석탄 네트워크는 함대의 대양 횡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연료 의존성이 높은 증기기관의 속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규모 석탄 공급 네트워크는 영국의 해양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었다. 동시에 영국의 석탄 네트워크는 대륙국가의 해군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지정학적 한계였으며 러시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25] 영국은 석탄의 이동과 공급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전시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웨일스 석탄과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했던 영국의 해양 패권은 새로운 에너지인 석유가 석탄을 대체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대한 독일의 에너지 협력의 요체는 러시아 함대의 기항 예정지로 독일 상선이 석탄을 수송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석탄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전시금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적국에 운반하는 행위는 포획과 몰수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독일 민간 해운회사 함부르크-아메리카 해운(Hamburg-America Line, 이하 'HAL')이 회사 운영을 위장하여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석탄 공급을 담당했다.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대한 석탄 보급을 주도하지 않은 이유는 러일전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독일 외무성은 공식적인 중립선언을 유보한 채, 타 열강의 중립선언문과 동일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회람(1904.2.17)했다. 독일의 중립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교전국 선박에 대한 석탄 공급은 교전국의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한정한 국제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독일 정부의 중립안을 따를 경우, 18,000마일을 항행해야 할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카이저 빌헬름이 제시한 해법은 그의 지인이자 HAL의 총지배인인 알베르트 발린(Albert Ballin)을 앞세우는 방식이었다.[26] 카이저의 해법은 독일 정부가 중립 위반에서 벗어날

25 Lamar J. R. Cecil, 1964, "Coal for the Fleet that had to Di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9-4, pp. 992~993.

26 Gerhard A. Ritter, 2013, "The Kaiser and His Ship-Owner: Albert Ballin, the HAPAG Shipping Compan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Politics in Imperial Germany and the Earl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있는 묘책일 수 있었으나 이후 독일 외교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 준 이유이기도 했다.

발린은 HAL에 입사한 지 10년 만에 이 회사를 독일과 북대서양 최대의 해운회사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27] 발린의 성공은 카이저 빌헬름이 즉위 이후 추진한 세계정책(Welt Politik)을 지원하고 그 정책에 편승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과 북미 간의 북대서양 항로에 치중했던 종래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독일 해군의 자오저우만(膠州灣) 조차와 더불어 동아시아 해운으로 영업 범위를 확장한 것이 HAL이 글로벌 해운회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일전쟁은 교전 당사국에는 생사가 달린 절체절명의 사건이었지만 사업가 발린에게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고수익의 사업이 될 수 있었다.

발린이 1903년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러일전쟁 발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러시아 정부와 HAL 소유 선박의 매각 협상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발트함대의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발린은 러시아의 원정함대에 필요한 선박을 조달하고자 했다. 발린이 HAL 소유 3척의 고속 여객선과 화물선을 러시아 해군성에 매각한 것은 차르의 함대 강화 지시에 따른 결과였다.[28]

발린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을 위한 석탄 공급을 담당한 일은 러일전쟁 기간 러독 해군 협력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양국 민간 회사

Weimar Republic," Hartmut Berghoff ed., *Business in the age of extremes: essays in modem German and Austrian economic history,* German Historical Institute, pp. 15~16. 카이저 빌헬름 2세와 덴마크에서 이민 온 유태인 가족의 7번째 아들 알베르트 발린의 친분 관계는 이례적이나 독일제국의 해양화를 지지하고 적극 동참했다는 측면에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1857년생 발린과 1859년생 빌헬름은 동시대인으로서 1888년 발린이 HAL의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 때, 빌헬름도 황위에 등극했다. 이후 양자는 독일의 해양 정책에서 협력했다. 1918년 11월 9일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발린은 자살하였고 다음 날 카이저 빌헬름은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27 F. Broeze, 1992, "Albert Ballin, the Hamburg–America Line and Hamburg: structure and strategy in the German Shipping Industry (1886–1914)," *Deutsches Schiffahrtsarchiv* 15, pp. 135~158.

28 A. Hamann, 2003, "Die Kohleversorgung russischer Seestreitkräfte auf ihrem Wege nach Ostasien durch die Hapag–Reederei," *Deutsches Schiffahrtsarchiv* 26, pp. 101~1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의 계약을 통한 석탄 공급은 중립 위반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었다. 독일 기업 크루프(Krupp)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리인으로서 러시아 해군의 군납업체였던 바흐터 상사(C. Wachter & Co.)가 러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HAL과 석탄 공급 계약을 체결(1904.6.21)했다.[29] 이 계약에 따르면, 석탄 공급은 덴마크 동부 해안에서 상하이 남쪽 60마일 지점의 저우산(舟山)열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명시했다.[30] 따라서 HAL은 러시아 함대가 상하이 인근의 저우산열도에 당도할 때까지 석탄 공급을 담당하게 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하루 석탄 소요량은 3~10톤이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총량은 약 50만 톤에 달했다. 증기선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열효율이 높은 석탄은 러시아에서 채탄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산 석탄이 공급되어야 했다. 또한 석탄 적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항구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HAL은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국 웨일스 남부의 카디프(Cardiff) 석탄을 러시아 함대에 보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31]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카이저 빌헬름의 모험주의적 대외정책의 산물이었다. 각료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카이저의 독단적인 결정은 중립 위반에서 비롯된 외교적 부담과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또 다른 무리수로 이어졌다. 독일의 석탄 지원 없이는 원정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로제스트벤스키의 함대의 출정 계획은 사실상 빌헬름 2세와 니콜라이 2세의 공동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이를 독일의 러일전쟁 참전으로 해석할 경우,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이 참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짐으로써 유럽

29 К. Л. 바흐터(К. Л. Вахтер, 1837~1917)는 독일 출생으로 1875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일상업은행 은행장을 역임(1896~1906)했고 벽돌, 전기, 광산 분야에서 활동했다. А. А. Бессолицын, 2023, "Директорский корпус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х акционерных компаний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Журнал рег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Т. 7, № 2. pp. 474~475.

30 Jonathan Steinberg, 1970, *op. cit.*, p. 1967.

31 Lamar J. R. Cecil, 1964, *op. cit.*, pp. 992~99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영독 간의 개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은 영독 간의 갈등 수위에 따라 지체와 서행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극동으로 발진할 경우, 유럽에서 영독 간의 무력충돌이 언제 발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러일전쟁을 유럽의 전쟁과 쌍생아 혹는 유럽전쟁의 맹아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 함대에 대한 독일의 석탄 공급을 저지하려는 영일의 대응은 1904년 9월 12일 런던의 『해운관보(Shipping Gazette)』에 석탄 공급 계약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본격화되었다. 베를린 주재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쓰노스케(井上勝之助)가 독일 외무성을 방문, 계약 관련 기사를 공식 부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독일 외무성 차관 F. 푸르탈레스(F. Pourtalès)는 개인기업의 사업 문제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결국 발린을 초치하여 러시아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 계약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했는데, 그 이유는 1904년 9월 14일에 게재된 『런던 타임즈(The Times of London)』 기사 때문이었다. 영국 외무성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익명의 기사의 요지는 독일과 러시아의 비밀 협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다.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공개적인 지원의 이면에 양국의 비밀동맹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32] 이는 영일동맹조약 제3조에 의거, 영국의 러일전쟁 참전의 명분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석탄 공급 계약 파기 혹은 지속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독일의 석탄 공급 계약 파기는 러시아 함대의 극동 출정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었다. 반면 계약의 지속은 영일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겠다는 독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1904년 9월 23일 독일 수상 베른하르트 폰 뷜로(Bernhard von Bülow)는 HAL의 발린 의장을 만난

32 Jonathan Steinberg, 1970, *op. cit.*, pp. 1975~197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리에서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석탄이 전시금제품이므로 중립국 선박이 교전국에 석탄을 운반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발린은 석탄 공급 계약은 오직 독일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으로만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계약 파기는 러시아 함대의 원정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는 것이며 러시아가 패전할 경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정을 방해한 독일이 지게 될 것임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발린은 계약 파기가 러시아의 차르와 독일 카이저 사이의 불신을 증폭시켜 빌헬름 2세를 불쾌하게 할 것이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33]

계약 지속을 고수한 발린의 논리는 단지 러시아 함대라는 고수익 보장 고객을 잃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영국이나 일본이 HAL에 불만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에는 카디프 석탄을 공급하는 영국회사와 HAL과 용선 계약을 맺은 영국의 석탄 운반선이 동원되기 때문에 전체 거래에 대해 영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 둘째, 일본 역시 석탄과 독일 기업 크루프사의 무기와 탄약을 영국 상선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 역시 전시금제품을 일본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HAL의 계약 파기는 단지 러시아만을 고립시킬 뿐이며 독일과 영일 간의 관계 증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34] 따라서 발린의 논리는 독일 정부가 러시아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 계약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독일 정부의 결정은 러시아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동아시아 출정의 녹색등이 되었다. 빌헬름 2세의 석탄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전보가 러시아 차르에게 전달(1904.10.8)된 지 일주일 후, 리바우(Libau) 항구

33 J. C. Röhl, 2013, *op. cit.,* p. 284.

34 Lamar J. R. Cecil, 1964, *op. cit.,* pp. 992~99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출항(10.15)했기 때문이다.[35] 독일 해군과 내무성이 해양 순찰과 일본인 감시에 착수한 것도 차르가 카이저에게 발트해와 북해에서 일본 어뢰정의 기습 공격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러독 해군 협력은 러시아 함대의 극동 원정의 실질적인 추동력이었지만 이는 양국 황제의 친분관계의 산물일 뿐, 공식적인 외교 협정 및 조약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을 지원함으로써 예견되는 영국과 일본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에 동맹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약 체결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영국과 독일의 해군이 경쟁하게 된다면 과연 러시아 해군이 독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을 저지하고 중도에서 복귀할 수도 있었던 사건은 함대 출정 1주일 후(1904.10.21~22)에 발생했다. 러시아 함대가 북해의 도거뱅크(Dogger bank)에서 영국 어선을 일본 어뢰정으로 오인해서 사격한 것으로 정리된 도거뱅크 사건[36]은 러시아 함대의 항진을 저지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러시아와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했지만, 『런던 타임스』가 러시아보다 오히려 독일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후에 영국과 러시아의 전쟁을 촉발하려는 독일 카이저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였다.[37] 일본 또한 러시아 함대의 극동 원정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언론에 적극 가세했다. 따라서 카이저 빌헬름 2세가 영국의 언론 캠페인 이면에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를 강제로 귀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확신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

35 Gehard Krebs, 2007, "German Policy and the Russo–Japanese war," *Rethink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5: Volume 2: The Nichinan Papers*, Global Oriental pp. 93~96. 리바우는 라트비아 리예파야(Liepaja)의 옛 지명이다.

36 J. S. Corbett, 2015b, *Maritime Operations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Vol. I, Naval Institute Press, pp. 39~40.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일본 어뢰정의 습격을 받고 대응 사격하였으나 무방비의 영국 어부들이 피해자가 된 이 사건은 국제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가 구성되었음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37 J. C. Röhl, 2013, *op. cit.*, p. 28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거뱅크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영국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동맹 체결을 준비했다. 독일 함대에 대한 영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04년 10월 27일 카이저는 차르에게 보낸 전보에서 독일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이 러시아 함대에 석탄을 공급함으로써 영독 관계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는 빌헬름 2세가 영국과 일본에 맞서 독일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했다.[38]

나아가 독일의 카이저가 제시한 독러동맹에 프랑스까지 포함시켜야 할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프랑스는 러불동맹(1894) 조약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프랑스는 식민지 문제(이집트와 모로코) 해결을 위해 영국과 평화협정(Entente cordiale, 1904.4.8)을 체결했지만, 영국 함대는 파리를 구하러 오기 위한 바퀴가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안보를 위해 러독동맹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러독불 3국 동맹이 결성된다면 가장 강력한 대륙동맹 연합군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은 청일전쟁 직후 성사되었던 삼국간섭의 전례에 비추어 볼 경우, 영일 연합군은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카이저는 프랑스를 영국과 분리하여 대륙동맹에 가담시키기 위해 필요시 위협을 가한다는 전략을 구상했다.[39]

카이저 빌헬름이 구상한 러독불 3국 동맹이 결성되지 않더라도 차르는 프랑스가 영국보다는 러불동맹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했다.[40] 유럽에서의 프랑스의 안전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조약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배후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3국 공조 체제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이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독일에게서 석탄을 공급받고 프랑스 식민지를 기항지로 활용

38 J. C. Röhl, 2013, *ibid.,* p. 287.

39 Wilhelm II to Nicholas II, 30 Oct. 1904 in W. Goetz ed., *1920, op. cit.*, pp. 346~348.

40 Nicholas II to Wilhelm II, 7. Dec. 1904, *G. P.* 19-1, 1927. No. 61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이었다.[41] 이렇듯 독일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공급한 석탄은 유럽 국제 관계 변혁의 단초가 되어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화마로 뒤덮는 불씨가 되어 갔다. 요컨대 석탄은 연료일 뿐만 아니라 정치이자 힘이었다.

Ⅳ. 쓰시마해전과 '독도문제'의 국제법

독일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내도가 임박하자 일본 정부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전시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였다. 이는 쓰시마해전에서 승전하더라도 제물포해전(1904.2.8~2.9)의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한국의 중립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은 제물포해전에서 승전했음에도 러시아 패잔병을 포로로 확보하거나 전함들을 포획할 수 없었다. 제물포항에 정박 중이던 중립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군함의 함장들이 일본의 한국 중립 위반에 항의하는 한편 러시아 해군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 패잔병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였고 피격된 러시아 군함들은 자침하거나 폭침되었다.[42] 그 결과 일본 해군은 제물포해전에서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했다.

또한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약체결이라는 외교적 방식을 통하여 대한정책을 실행해야만 했다. 비록 일본의 포획심검소가 한국의 중립을 유동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한제국의 중립은 열강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러시아·독일·프랑스는 한국의 중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쓰시마해전이 벌어

41 Wilhelm II to Nicholas II, 19. Oct. 1904, *G. P.* 19-2, 1927. No. 6164.

42 최덕규, 2019, 「대한제국의 전시중립과 러일전쟁-미국의 대러봉쇄전략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4(2), 243~2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질 경우, 중립국가인 대한제국의 영해인 독도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을 포획하는 문제는 법리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제1차 한일의정서 제4조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臨機收用)"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이는 해전보다는 지상전에서 유용한 권한이었다. 일본에게는 독도에 망루와 포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보다 러시아 선박을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독도의 편입이 더 중요했다. 이를 통해 독도에서 3해리(5.556㎞)가 중립 해역이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군함들이 독도 근방으로 모여든다면, 이곳은 대한제국의 영해이며 중립 해역이기 때문에 일본 해군이 진입하여 함대를 포획하는 문제는 국제법 저촉 사안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중립국 영해에서 선박의 포획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해상 포획 규정'과도 상충되었다.[43]

일본 각의의 독도 편입 결의(1905.1.28)는[44] 독도가 무주지가 아닌 대한제국 영토임을 반증하는 조치였다. 일본 정부가 공포한 해상 포획 규정에 따르면, 독도가 무주지일 경우 독도 근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포획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독도가 오직 한국령일 경우에만, 중립국 영해에서 수색과 포획이 불가능했다. 특히 쓰시마해전에서 러시아 함대가 최소한 절반만이라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생환한다면, 러시아 함대의 재건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더라도 유럽 열강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의 중립을 강력히 지지한다면, 삼국간섭(1895)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위상은 중립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교전과 포획이 금지된 중립국의 영해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은 1900년 러시아의 마산포 조차(租借) 시도를 저

43 『日本外交文書』 第37巻 · 第38巻 別冊 日露戦争 VI巻, 357~389쪽 海上捕獲規程案閣議提出ニ方リ意見照会ノ件(1904.2.8) 海上捕獲規程. 98개조의 이 규정은 1904년 3월 15일 시행되었다.

44 최문형, 2005, 앞의 글, 255~2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하는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부산 주재 일본 영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는 러시아가 마산포 자복동(滋福洞) 일대를 태평양함대를 위한 부지로 선정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즉시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육군성 참모본부에 보고한다. 이때부터 외무·육군·해군성이 관여된 일본 정부 차원의 저지 공작이 추진되었고 부산 거주 일본 상인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가 공작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참모본부의 자금으로 러시아가 선정했던 토지의 주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러시아 해군의 당초 계획을 좌절시켰다.[45] 이에 러시아 정부가 '거제도부조차조약(巨濟島不租借條約)'을 한국과 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자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4상(四相: 총리, 외무, 육군, 해군)회의 개최(1900.3.27)이다.[46] 4상 회의 각서에 따르면, 1) 거제도의 서남부 지역을 어업 해산물 제조용으로 차입하고, 2) 장래 일본 이외의 타국에 이 장소를 양여(讓與)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증언을 받기로 했다.[47] 그 결과 마산포와 거제도를 둘러싼 러일의 각축은 개전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결국 러시아는 마산포 일시 철수를 결정(1903.6.24)하기에 이르렀다.[48]

마산포 사건의 선례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민간인을 앞세워 한국의 전략요충지를 획득하는 방식은 독도 편입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된다.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독도 편입 청원서(1904.9.29)가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無人島 所屬에 관한 件)」이라는 비밀문건으로 일본 내무상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에 의해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에게 발송(1905.1.10)되었기 때문이다. 나카이의 청원서가 러시아의 뤼순 요새 함락 직후, 각의에 제출되었던 이유는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블라디보

45 김용욱, 1981, 「馬山浦 滋福洞·月影洞 및 栗口味의 土地事件–露國單獨租界를 中心으로–」, 『법사학연구』 6, 200~203쪽.

46 김의환, 1970, 「韓末 馬山浦事件攷–露日關係가 港民에게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국제정치논총』 10, 47쪽.

47 『日本外交文書』 第33卷, 巨濟島ニ關スル總理外務陸海軍四相間ノ覺書, 1900.3.27.

48 РГАВМФ. Ф. 417. Оп. 1. Д. 2300. Л. 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스토크로 향할 가능성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 제독은 도쿄에 체류(1904.12.30~1905.2.6)하며 해군상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및 군령부장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와 구체적인 대러 작전 계획을 숙의하고 있었다.[49] 도고 제독은 대러전쟁 수행 경험을 통해 러시아 함대가 중립 항구 활용법을 잘 알고 있음을 간파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주로 중립국 항구에 기항하면서 동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해해전(1904.8.10) 당시 패주하던 러시아 군함들도 중립국인 청국의 항구들로 도피했던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독도 편입에 대한 일본 각의 결정은 중립 해역을 제거하고자 했던 도고 제독의 작전 구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50]

일본 정부가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동안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석탄 보급 문제가 재발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다. 희망봉을 돌아 마다가스카르의 노지베(Nossi-Bé)에 당도(1905.1.9)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접한 소식은 뤼순 함락이었다.[51] 이에 러시아의 승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석탄 지원에 대한 독일의 입장도 변했기 때문이다. 영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쓴 독일의 대러 해군 협력은 승전의 과실을 공유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아우르는 러시아·독일·프랑스 3국의 대륙동맹의 결성이 궁극의 목표였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차르는 10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한 프랑스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러독 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52] 여기에 만주에서 러시아에 불리한 전황이 조성됨에 따라 독일 역시 석탄 공급 지속 문제에 주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노지베에서 3월까지 머물러

49 海軍軍令部, 2004,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第3卷, 芙蓉書房 4~5쪽.

50 『日本外交文書』 第37卷·第38卷 別冊 日露戰爭 I, 문서번호 509. 도고의 예측은 이후 인도차이나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프랑스가 엄정중립을 명분으로 러시아 함대의 인도차이나 기항을 불허하자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해안에서 가까운 프랑스 영해의 경계선 근처에 머물렀다. 이곳은 프랑스 공권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던 반면 유사시 일본 함대가 출몰할 경우, 중립국 영해로 도피한다면 일본 해군에 포획될 우려도 없었기 때문이다.

51 А. С. Новиков–Прибой, 1984, *Цусима*, Кн. I. М., pp. 174~175.

52 Nikolaus II. an Wilhelm II. Dec. 7 1904. *G. P.* 19–1. № 61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 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에 대한 독일의 석탄 보급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영국의 카디프 석탄 수출통제 정책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는 HAL이 용선한 석탄 운반선들이 러시아 함대의 기항 예정지인 스페인 비고(Vigo)항에 3주 전에 석탄을 하역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카디프 세관은 HAL의 석탄 운반선이 함부르크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분량 이상의 적재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함대에 대한 석탄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엄정중립을 명분으로 영국이 HAL 소속의 선박을 영국 항구에 억류함으로써 결국 러독 간의 해군 협력은 시험대에 오르고 말았다.

석탄으로 엮인 러독 공동운명체의 미래는 석탄 공급의 지속 여부와 연동되었다.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석탄 문제가 영독 간의 전쟁 위기로 비화할 경우, 러시아가 독일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독일의 석탄 공급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53] 이는 1904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영국의 석탄 문제 개입이 러독동맹 체결을 위한 독일의 대러 접근 시기와 일치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영국의 석탄 문제 개입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이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석탄 공급 책임을 맡았던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이저와 차르 사이에 석탄 문제를 둘러싼 커다란 인식 차이가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카이저는 영국과의 개전 위험을 무릅쓴 석탄 공급에 러시아가 동맹 체결로 보답할 것을 기대했던 반면 차르는 석탄 문제가 영독 간 개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54] 결국 석탄으로 연결된 러독관계는 만한(滿韓)에 한정되었던 러일전쟁이 영독 간의 유럽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었다.

러시아의 뤼순 요새 함락은 독일의 대러 석탄 공급에 결정적인 타격이

53 Wilhelm II an Nikolaus II. 7 Dec., 1904. *G. P.* 19–1, No. 6130.

54 Der Botschafter in Petersburg Graf von Alvensleben an das Auswärtige Amt, Dec. 11, 1904. *G. P.* 19–1, No. 61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다. 뤼순 포위 작전에 참여했던 일본 함대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와 독일의 석탄 운반선 수색에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더불어 일본이 석탄 공급을 방해할 가능성에 주목한 인물은 HAL의 대표이사 발린이었다. 그는 HAL의 석탄 운반선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극동으로 항진할 경우, 일본 함대와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함대가 독일 석탄 운반선을 공격하거나 포획할 가능성이 열리자 발린이 고려한 해법은 계약 파기였다. 해법의 요체는 HAL과 러시아 정부의 계약대행사인 바흐터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독일 석탄 수송선을 러시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러시아 국기를 단 석탄 수송선과 선원들에 대한 책임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에게 떠넘기고자 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석탄 수송으로 인한 외교적 곤경에서 벗어나고 HAL은 위험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었다. 이는 발린의 제안에 대해 독일 수상 뷜로가 "실용적(practical)"이라고 회신하고 카이저 역시 이에 동의했던 이유이기도 했다.[55]

발린은 HAL의 석탄 수송선들이 함부르크 본사의 지시 없이는 마다가스카르를 출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러시아 측과의 협상에 착수했다. 협상의 요지는 HAL의 수송선을 러시아 측에서 매입하여 러시아 깃발을 게양하고 러시아 선원이 운항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발린 측의 계약위반이었고 이에 러시아 해군은 분노했다. 해군 총참모장 대행 A. A. 비레니우스(А. А. Виренiус) 제독은 발린 측의 협상 대표를 되돌려 보냈다.[56] 계약을 파기하든가 혹은 계약을 이행하든가, 공은 발린에게 넘겨졌다. 계약이 파기되어 석탄 공급이 중단될 경우,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패전의 귀책 사유가 독일에 전가될 수 있었다. 결국 발린은 계약을 이행하되 독일 수송선과 선원의 안전보장 조치를 강화

55 J. R. Cecil, 1964, *op. cit.*, p. 1002.

56 Tschirschky an das Auswärtige Amt, 19 Feb. 1905. *G. P.* 19–1, № 609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수준에서 타협하고자 했다.[57] 이는 그가 석탄 공급을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독일 외무성에 문의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뤼순 함락 이후 일본 함대에 의한 독일 석탄 수송선의 포획 위험을 방지할 대책은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05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본 해군은 동해에서 십수 척의 중립국 석탄 수송선을 포획하여 화물과 선박을 몰수하고 있었다. 독일의 빌헬름 2세 역시 인도양 자체가 이미 전장이 되었다고 확신했고 해군상 A. 티르피츠(A.Tirpitz)도 일본의 '해상 포획 규정'으로부터 자국 석탄 수송선을 보호할 대책이 없음을 외무성에 회신했다.[58] 결국 발린의 문의에 대해 대러 석탄 수송 중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빌헬름 2세의 의견이 독일 정부입장으로 정해졌다. 빌헬름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약세가 노정된 상황에서 영국과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 따라서 카이저의 명령을 받은 발린이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독일의 석탄 공급 중지 결정을 통보받은 니콜라이 2세는 반격했다. 오히려 차르는 카이저에게 발린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독일 수상 뷜로도 카이저의 석탄 공급 중단 결정의 철회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석탄 공급 중단은 러시아 차르에게 대일 강화(講和)를 강요하는 신호로 해석되어 러독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둘째, 뤼순 함락으로 사기가 저하된 러시아 해군에게 독일이 석탄 공급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이를 대일 강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요컨대 뷜로는 석탄 공급 중단이 러일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 중도 포기의 귀책 사유가 될 수

57 Telegramm Nicholas II to Wilhelm II, 14 Feb,. 1905,. *G. P.* 19-1, №. 6091. 러시아 정부는 HAL의 자산 손실에 대한 보장으로 1억 마르크의 배상 보증보험계약을 독일의 멘델스존 은행(Mendelssohn Bank)과 체결했다.

58 Mühlberg-Tirpitz, 27 Jan,. 1905. *G. P.* 19-1, №. 6089. 티르피츠 제독의 회신(1905.1.30)은 독일 외무성 차관 뮐베르크(Mühlberg)가 발린의 입장에 대한 해군성의 의견을 요청(1.27)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음을 우려하였다.[59] 따라서 뤼순 함락으로 촉발된 독일의 석탄 공급 중단 결정은 러일전쟁의 지속 혹은 강화협상 시작이라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결국 석탄 공급을 재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은 러일전쟁 지속의 동력이 되었다. 독일의 석탄 공급 재개는 정부의 관여를 금지하는 대신 민간 기업인 HAL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카이저가 차르에게 보낸 전문(1905.2.15)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었다. 첫째, 석탄 문제는 사기업인 HAL의 소관이기 때문에 카이저가 이를 방해하기 위한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다. 둘째, 석탄 문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HAL의 발린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다.[60] 발린은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관여가 중단되자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했다. HAL 소속의 석탄 수송선 11척을 러시아에 매각하고 독일 선원들이 수송선을 운항한다는 새로운 계약(1905.2.21)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에서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원안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발린은 차르 정부가 독일 선원들을 고용하고 이들이 석탄 수송을 담당하는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61] 결국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함부르크에서 모집한 독일 선원들이 운항하는 석탄 수송선을 함대 후미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노지베를 출발(1905.3.16)할 수 있었다. 이렇게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대일 강화의 기회를 흘려버린 채 루비콘강을 건너고 말았다.

발린은 러시아 함대의 승전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다음 기항지였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마다가스카르와는 달리 러시아 함대의 출현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최적의 해군기지인 디에고 수아레스(Diego Suarez)에 기항하지 못했지만, 노지베에서 67일간 머물며 석탄 보급

59 Bülow–Wilhelm II, 14 Feb., 1905. *G. P.* 19–1, No. 6093.

60 Wilhelm II–Nicholas II, 15 Feb., 1905. *G. P.* 19–1, No. 6094.

61 A. Hamann, 2003, *op. cit.*, p. 1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인도차이나에서 러시아 함대는 석탄 보급 항구를 사이공(Saigon)에서 깜라인만으로 변경해야만 했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점차 동아시아로 접근하자 영일의 압력을 받은 프랑스는 동맹국에서 중립국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동맹국이 아니었던 독일은 영국과 개전 위험을 무릅쓰고 석탄을 공급해 왔지만, 동맹국 프랑스는 이미 개전 초반부터 영불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자 했다. 발린이 러시아 함대의 승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일본에 대한 러독불 삼국간섭의 재현 가능성이 무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독일과 프랑스 가운데 과연 누가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였는가?[62]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발트해를 출발(1905.2.15)한 Н. И. 네보가토프(Н. И. Неб-огатов) 제독의 증원함대를 기다리던 동안(4.14.~5.9)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채 인도차이나 영해에 떠 있었다. 단지 석탄 적재를 위해 깜라인만에 하루 정박했을 뿐이다. 마침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증원함대와 결합하여 대한해협 방향으로 항진해 나가자(5.14)[63] 러시아 언론이 쓰시마해전에 앞서 전개한 것이 여론전이었다. 쟁점은 중립 문제였다. 이는 일본과 영국의 언론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인도차이나 영해와 깜라인만 정박에 대해 프랑스가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영국 신문들은 프랑스 정부의 대러 지원에 주목, 대일 지원 의무가 있는 영국과의 개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협하기도 했다.[64] 영일 언론이 프랑스의 중립의무 위반을 비

62 Aufzeichnung, des Reichskanzlers Grafen von Bülow. 2 Nov., 1904. *G. P.* 19-II, № 6167, 러시아의 전직 재무상 С. Ю. 비테(С. Ю. Витте)는 1904년 10월 독일 은행가 프란츠 폰 멘델스존(Franz von Mendelssohn)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계속하라고 조언하는 자는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63 РГАВМФ. Ф. 763. Оп. 1. Д. 290. Л. 1-53. Рапорт Рожественского Морскому Министру, Июля 1905 г.

64 Cambon to Delcasse, 4 May 1905, *DDF*. Vol. 6, pp. 468~470. 영국 외상 랜스다운(Lord Lansdowne)은 주영 프랑스 대사 캄봉(Cambon)에게 로제스트벤스키 함대가 마다가스카르에 장기 정박한 것은 그곳이 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묵인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 영해와 중국 해역에서의 함대의 모든 움직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난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프랑스가 자국 항구에 하루 동안 러시아 함대의 정박을 허락했고, 둘째, 프랑스 영해에서 러시아 함대가 장기간 머물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쓰시마해전을 앞두고 러시아 언론이 프랑스 중립 문제를 거론(1905.5.11)한 것은 대한제국의 중립 문제에 대한 복선이기도 했다.

러시아 신문 『노보예 브레먀(Новое Время)』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국제법 교수 Ф. Ф. 마르텐스(Ф. Ф. Мартенс)를 등판시켜 영일 언론의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65] 마르텐스는 신문사로 보낸 "프랑스가 중립을 위반했는가(Нарушала ли Франция нейстралитет?)"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영국과 일본의 비난이 국제법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의 논거에 따르면, 첫째, 중립국은 교전국 함대가 중립국 항구와 영해에 24시간 이상 머무는 것을 불허해야 한다는 어떠한 국제법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일부 열강이 최근 이러한 제한을 포함한 중립선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이지 합의된 국제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교전국 함대가 중립국 영해에 장기 정박하더라도 이에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프랑스에만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도 그러한 권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마르텐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프랑스가 러시아 함대를 위해 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을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고 누구도 프랑스 영해를 수호할 임무를 맡지 않았다. 이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프랑스 일국에 귀속된다. 따라서 마르텐스는 다음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과연 일본에 항의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제물포에서 중립을 철저히 훼손한 일본은 중립에 관한 국제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최소한의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66]

일본 정부의 독도 편입 결정은 동해에서 중립 수역을 소멸시킴으로써 러시아 패잔(敗殘) 군함들의 도피 공간을 제거하려는 책략이었다. 독도를 둘러

65 Новое Время, 1905.5.11.

66 В. В. Цыбулько., 2010, *Непрочитанные Страницы Цусимы*, Спб., pp. 10~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싼 중립 해역을 제거함으로써 중립국 영해로 적국 군함의 대피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함대 기함 수보로프(Князь Суворов)호의 선공으로 시작(1905.5.27. 13:49)된 쓰시마해전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부상(14:40)을 고비로 러시아 측의 패색이 짙어졌다. 해가 지면서 안개가 짙어지자 19시 30분경 일본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제독이 모든 전단에 울릉도로 집결할 것을 명령했다.[67] 그렇다면 제독은 왜 일본의 전함대 집결지를 울릉도로 정했을까?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이후, 동해상의 유일한 중립 해역은 울릉도와 그 영해였다. 이에 쓰시마해전에서 패주하는 러시아 군함들이 울릉도로 도피할 경우, 국제법상 중립 해역에서는 공격과 나포가 불가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1904년 시행한 '해상 포획 규정'에서는 일본 해군의 추적권도 금지하고 있었다. 중립국 영해 밖에서 발견되었거나 추적되었더라도 포획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68] 도고 제독은 1904년 황해해전(8.10)을 지휘했던 경험을 통해 러시아 군함들이 위기 시 중립항으로 도피하는 패턴을 알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수뢰정 레쉬텔늬호 역시 황해해전 당시 어둠을 틈타 중립항인 즈푸로 도피한 사례였다. 따라서 제독의 울릉도 집결 명령은 주간 전투 이후, 도피하는 러시아 전함들의 중립 해역 진입 저지가 그 목적이었다.[69]

Ⅴ.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 과정과 독도문제의

67 J. S. Corbett, 2015a, *op. cit.,* pp. 292~293.

68 『日本外交文書』 第37卷 · 第38卷 別冊 日露戦争 Ⅵ卷, 357쪽 '海上捕獲規程'.

69 그 결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군함 4척(Orel, Nikolai I, Senyavin, Aprksin)이 일본 해군에 포획되었다. Robert Forczyk, 2009, *Russian battleship vs Japanese battleship: Yellow Sea 1904–05*, Osprey, pp. 70~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제법을 살펴보았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은 중립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 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해전에서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이 헤이그평화회의(1907)에서 합의되었음에도 개별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발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국가들은 해전에서 중립국의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자 했던 반면 영국 중심의 해양국가들은 이를 축소하고자 했다. 건함 경쟁을 벌이던 영국과 독일은 결국 타협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전쟁을 국제법으로 규율하려던 19세기의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국제법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지옥'으로 빠져든 출발점은 중립국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었다.

본문의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 '러일 포획심검소의 설치와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결성'에서는 유럽에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이 준비되는 동안 한반도 해역에서 일본 해군에 의한 러시아 및 중립국 선박의 포획 및 심검소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러일전쟁 기간 양국 함대가 포획한 선박의 상대적 수치(일본 64척: 러시아 13척)에서 나타나듯이 개전 초기 일본은 해군력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에 차르 정부가 전세 역전을 위해 결성한 로제스트벤스키 함대는 러시아 해군의 범주를 벗어난 초국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 함대의 동력은 청일전쟁의 삼국간섭과 유사한 형태의 러시아·독일·프랑스 3국의 해군 협력이었고, 특히 황화론을 주창했던 독일 카이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3장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과 석탄 네트워크'에서는 독일해운회사 함부르크-아메리카 해운(HAL)회사가 러시아 함대의 석탄 수송을 담당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의 선결 과제는 러독 우호를 통한 발트해의 안전보장과 극동까지 이동하기 위한 안정적인 석탄 공급이었다. 증기기관이 장착된 군함들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석탄 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제국주의 시대의 해양 패권의 핵심은 석탄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었다. 해외 식민지가 없었던 러시아 해군이 극동 원정에 나설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었던 배경에 석탄 공급을 담당했던 독일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따라서 러일전쟁은 영미의 지원을 받는 일본과 독불이 후견하는 러시아가 해양과 대륙 세력을 대표하여 치른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되었다.

4장 '쓰시마해전과 독도문제의 국제법'에서는 일본 정부가 쓰시마해전을 대비하여 독도를 편입하고 해전 당일 저녁 도고 제독이 모든 일본 함대의 집결지로 울릉도를 정한 이유를 분석했다. 제물포해전과 황해해전의 경험에 비추어, 러독불 3국이 대한제국의 중립을 인정한다면 독도 기점 3해리(5.556㎞)는 중립 해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청일전쟁 직후 한국의 독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이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독립이 회복된 사례에 비견된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패주하는 러시아의 잔함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중립 해역 제거가 그 목적이었다.

결국 독도문제는 대한제국의 중립국 지위 인정 문제와 연동됨으로써 쓰시마해전 승전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쓰시마해전 승전 후 일본 고등심검소는 사세보 포획심검소의 판결에 불복한 묵덴호 소송 청구인들의 항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1905.7.3)했다. 한국의 중립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반적인 중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 이루어진 포획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세보 심검소가 한국이 사실(de facto)상의 중립국이 아니라고 밝힌 결정은, 한국의 지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하다."[70] 결국 일본이 쓰시마해전에서 승전함으로써 묵덴호 반환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70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Vol. II*, p. 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 자료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05.

Die groß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Sammlung der diplomatischen Akten des Auswärtigen Amtes. 19.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édités par la Commission de publication des documents relatifs aux origines de la guerre de 1914 (1871-1914).

Российский Гос.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ГАВМФ). Российский Гос.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РГИА).

『日本外交文書』第37卷 · 第38卷 別冊 日露戰爭.

2. 단행본 및 논문

김병렬, 2016,「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 제언」,『영토해양연구』11.

송휘영, 2020,「2000년 이후 독도 관련 역사학 분야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독도연구』29.

최덕규, 2019,「대한제국의 전시중립과 러일전쟁-미국의 대러 봉쇄 전략을 중심으로」,『슬라브학보』34(2).

최문형, 2005,「露日戰爭과 日本의 韓國占取」,『역사학보』188.

Broeze, F., 1992, "Albert Ballin, the Hamburg-America Line and Hamburg: structure and strategy in the German Shipping Industry (1886-1914)," *Deutsches Schiffahrtsarchiv* 15.

Cecil, L. J. R., 1964, "Coal for the Fleet that had to Di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9-4.

Corbett, J. S., 2015, *Maritime Operations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Vol. I-II,* Naval Institute Press.

Goetz, W., 1920, *Briefe Wilhelms II. an den Zaren 1894-1914*, Berlin.

Hamann, A., 2003, "Die Kohleversorgung russischer Seestreitkräfte auf ihrem Wege nach Ostasien durch die Hapag-Reederei," *Deutsches Schiffahrtsarchiv* 26.

Krebs, Gehard, 2007, "German Policy and the Russo-Japanese w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thinking The Russo-Japanese War, 1904-5: Volume 2: The Nichinan Papers, Global Oriental.

Ritter, Gerhard A., 2013, "The Kaiser and His Ship-Owner: Albert Ballin, the HAPAG Shipping Compan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Politics in Imperial Germany and the Early Weimar Republic," Hartmut Berghoff ed., *Business in the age of extremes: essays in modem German and Austrian economic history*, German Historical Institute.

Röhl, J. C., 2013,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 J. B. Hurst & F. E. Bray eds., 1912-1913, *Russian and Japanese prize cases, being a collection of translations and summaries of the principal cases decided by thr Russian and Japanese prize court arising out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5. Vol. I. Russian Cases· Vol. II. Japanese Cases*, London.

Steinberg, Jonathan, 1970, "Germany and the Russo-Japanese Wa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5, No. 7 (Dec., 1970).

Takahashi, Sakuye, 1908, *International Law applied to the Russo-Japanese war with the Decisions of the Japanese Prize courts*, New York.

Бессолицын, А. А., 2023, "Директорский корпус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х акционерных компаний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Журнал рег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Т. 7-2.

Лукоянов, И. В., 2008, *Не отстат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XIX-начале XX вв.,* Спб.

Павлов, Д. Б., 2011, *На пути к Цусиме: беспримерный поход 2-й Тихоокеанской эскадры*, 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종래의 전쟁과 구분되는 러일전쟁의 특징은 헤이그협약(1899)에 서명한 국가들이 치른 최초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제법의 준수 여부가 교전 양국의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로제스트벤스키 함대의 극동 항진을 추동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대러 해군 협력 문제이다. 이를 통해 러일전쟁을 시종일관 관통했던 국제법의 최대 화두인 중립 문제에 천착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 정부가 제1차 한일의정서(1904.2.23) 체결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독도 편입을 강행한 국제법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은 패주하는 러시아 군함의 도피처를 제거함으로써 중립 수역에서 선박의 나포를 금지한 해상 포획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로제스트벤스키 함대, 중립, 포획, 러독해군협력, 일본의 독도 편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Rosestvensky Fleet and the Dokdo Issue in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the Issue of Neutrality

Choi, Deok kyoo
(Research Professor,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e Russo-Japanese War distinguished itself from previous wars as the first conflict fought between signatories of the Hague Convention (1899). This signified tha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became the criterion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military operations for both belligerent nations. In relation wit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the question of German and French naval cooperation with Russia, which drove the Russian fleet's advance into the Far East. Through this, we aim to delve into the issue of neutrality, the paramount topic of international law that consistently permeated the Russo-Japanese War. Second, it examines the international legal background behind the Japan's annexation of Dokdo, despite having the ability to requisition and use Korea's strategic strongholds through the signing of the First Korea-Japan Protocol (February 23, 1904). This analysis aims to clarify that Japan's annexation of Dokdo was a measur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aritime capture regulations prohibiting the seizure of ships in neutral waters of Korea by eliminating a refuge for retreating Russian warships.

Keywords
Rozhestvensky Fleet, neutrality, Prize court, Russo-German naval cooperation, Japan's annexation of Dokd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4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연구논문

일본국제법학계의 '대체적 권원론'상 '재확인' 법리의 국제법적 문제점 검토

서진웅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서론
II. 독도 관련 일본의 권원 연구
III. Masaharu Yanagihara의 낙도 편입 이론
IV. 결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서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실지한 영토들에 대한 수복이라는 목적하에, 다양한 형태로 국제법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만들어 왔다. 이를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독도 관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라 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권원 연구 계보는 크게 나누어 역사적 권원론, 본원적 권원론, 대체적 권원론, 공유적 권원론, 독도영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각각의 이론에 대하여서는 2장에서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인 2024년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公益財團法人 日本國際問題研究所. 이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역시 이러한 국제법 이론의 왜곡으로부터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 중 Masaharu Yanagihara의 "Incorporation of Remote Islands into the Territory of Japan-Focusing on Iō-tō and Minami-Tori-shima"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2]

Yanagihara의 글은 '대체적 권원론'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론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 두 가지 이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론인 영토의 '재확인' 이론에 대하여 검토하

* 논문 투고일: 2025.10.30. 심사 완료일: 2025.11.25. 게재 확정일: 2025.11.26.

1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환, 2021, 「독도주권과 일본의 권원 주장의 계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동북아역사재단, 20~34쪽 참조.

2 2024년도에 발간된 영문서적 Masaharu Yanagihara and Atsuko Kanehara eds., 2024,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Brill/Njijhoff와 관련하여, 柳原正治 · 兼原敦子 編, 2022, 『国際法からみた嶺土と日本』, 東京大学出版会가 일본 내 발간된 원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영어판과 일본어판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본어판 중 일부 내용이 영어판에는 빠져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된 영어판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버전을 기본으로 작성하였다. 필요에 따라 일본어판을 인용할 경우, 『国際法からみた嶺土と日本』을 기본으로 하되, 그 번역문은 야나기하라 마사하루 · 가네하라 아쓰코 편, 김연빈 옮김, 2024,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귀거래사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다.

3장에서는 우선 Masaharu Yanagihara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주장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확인'이라는 방식을 통한 영토 편입 방식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법적 논리가 왜곡임을 입증함으로써, 영토의 '재확인'이라는 영토 편입방법론의 부적합성을 방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1905년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소위 '죽도 편입'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독도 관련 일본의 권원 연구

1. 개괄

독도 관련 일본의 권원 연구 계보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중 큰 맥락을 형성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미나가와 다케시(皆川 洸)의 역사적 권원론(1963),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1965),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1966),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2006),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독도영유론(2007)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이 외에도 이리에 케이시(入江啓四郎), 마츠쿠마 키요시(松隈 淸) 등 국제법상 법리에 입각하지 아니한 주장을 한 자들도 존재하며, 츠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와 같은 연구자들은 큰 틀에서 본원적 권원론에 해당한다.[4] 아래에서는 각각의 권원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도시환, 2021, 앞의 글, 20쪽.

4 도시환, 2021, 위의 글, 2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역사적 권원론

미나가와 다케시(皆川 洸)가 주장한 역사적 권원론은 일본이 17세기 초 독도를 발견하고, 이를 현실적 점유하여 원시적 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05년 영토 편입을 정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되었다는 내용이다.[5]

이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17세기 초의 독도 발견과 그 이용이 원시적 권원을 형성하며 동시에 역사적 권원을 형성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유영토론에 기초한 법 논리는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

사실상 역사적 권원론의 한계점은 고유영토론의 불성립성만으로도 그 논리적 근거가 박약함을 방증할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근거는 〈표 1〉과 같다.[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메이지(明治) 10년(1877) 태정관지령이 '일본 측이 인지한 송도(지금의 독도)와 죽도(지금의 울릉도)가 조선에 귀속됨을 공문서로서 인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7] 그 타당성 자체가 부정된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이 '본방과 관계 없음(本邦関係無之義)'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동해에 존재하는 2개의 섬에 대하여 일본의 판도(版図) 외로 인식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판도에 해당한다는 반대해석에 따라 당연히 조선에 귀속됨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아울러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 발령 이후, 일본의 후속 행정문서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8] 1881년(明治 14) 시마네현령이 내무경과 농상무경에게 제

5 皆川洸, 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ー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 『法律時報』 37(10), 38~44쪽.

6 서진웅, 2023,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 『법학연구』 72, 460~460쪽.

7 서진웅, 2023, 위의 글, 467쪽.

8 구체적인 내용은 서진웅, 2025, 「법해석 방법론에 입각한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상 '외일도'의 해석」, 『법학논고』 88, 331~332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 인용하는 문헌 목록

연도	문헌	요약
1661년	오야가 문서(大谷家文書)	막부의 로주(老中)의 내의를 얻어 도해 허가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 서북의 한계
1681년	청서(請書)	70여년 간 독도를 영위해 왔음
1695년	회답서	마쓰시마에서 전복 채취 기록
1696년	각(覺)	마쓰시마에 어렵하러 간 기록
1720년	다케시마도(竹島圖)	다케시마를 인지 및 어렵행위를 하였음
1724년	마쓰시마 · 다케시마의 지도(松島 · 竹島の圖)	다케시마의 경영과 인식을 나타냄
1741년	구상서	마쓰시마의 지배를 다이유인이 허락
1751년	다케시마도설(竹島圖説)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기록
1775년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음
1801년	장생다케시마기(長生竹島記)	마쓰시마는 본조(本朝) 서해 끝이라고 기록
1804년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음
1836년	덴포(天保)다케시마일건 판결문	마쓰시마로 도항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항하는 방법이 있다고 기록

출한 "일본해 내의 마쓰시마(松島)[9] 개척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일본의 내무성은 외무성에 관련 문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은 독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을 귀국시키고 조선 정부에 독도에 일본인이 체류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시마네현에 "마쓰시마 문제는 이전의 지시대로 우리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10]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11]

따라서 '역사적 권원론'은 17~19세기 사이 일정 시기의 단기적 일부 활동에 근거하여 '역사성'이라는 말로 포장한 편협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권원론은 일본의 근대 행정문서를 통해 명확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9 이 당시의 松島는 현재의 독도를 의미한다. 일본은 19세기에 독도와 울릉도의 명칭을 때때로 竹島와 松島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때때로 독도를 松島로 울릉도를 竹島로 부르기도 하였다.

10 杉原隆, 게시 연도 미상, 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について 再考－明治十四年大屋兼助外一名の松島開拓願を中心に－,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 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_j.html.

11 서진웅, 2025, 앞의 글, 332~333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본원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가 주장한 본원적 권원론은 1905년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입각하여, 원래 무주의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이것을 일본의 영토로 하는 명확한 국가적 의사를 표시하고, 현실의 점유 및 효과적인 지배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에 따라 죽도에 있어서 일본의 영토권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12]

여기서 우에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 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각의 결정에 기초하여 시마네현 고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 자체가 국가의 독도 영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며, 동 고시는 당시 신문에도 발표되어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무인도의 선점에 대해서 외국에 통보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13]

본원적 권원론의 한계점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논리적 근거가 박약함을 방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독도가 무주지라면 앞서 검토한 고유영토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1681년의 청서(請書)에서 '70여년 간 독도를 영위'해 왔다는 사료와도 불일치할뿐더러, 1900년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명징해진다는 점에서 본원적 근원론은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고시가 '국가의 영토 영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본원적 근원론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토의 영유의사는, 특히 무주지에 대한 영유의사는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곳을 실효적으로 지배'[14]하는 경우에 선점이

12 植田捷雄, 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第54巻 第1号, 19~34쪽.

13 植田捷雄, 1965, 위의 글, 30쪽.

14 성재호 · 김정균, 2006, 『국제법』 제5개정판, 박영사, 4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립된다. '지방정부의 취득 의사'가 '명백한 국가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는 지방기관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한정되는 만큼, 시마네현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국제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다. 만약 시마네현의 고시가 '일본 중앙정부의 의사'로서 독도를 영위하겠다는 명백한 영유의 의사가 반포된 이후에 이에 근거하여 고시된 것이라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본 정부 문서 내지 학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4. 대체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는 역사적 권원론 단독 또는 본원적 권원론 단독으로만 주장할 때 직면했던 비판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이론이 대체적 권원론으로서, 역사적 권원론과 본원적 권원론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쥬도는 ① 에도시대부터 독도를 영위하였다는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선점법리'를 내세우며, 이와 동시에 ② 1905년 영토편입조치를 근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요건에 합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근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음을 주장한다.[15]

그러나 앞에서 역사적 권원론과 본원적 권원론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와 같이, 두 이론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여 새로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우선 ① '선점법리'의 경우, 이는 17~19세기 사이 일정 시기의 단기적 일부 활동에 근거할 뿐이며, 동시에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곳을 실효적으로 지배'[16]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본의 사료들은 일시적

15 太壽堂鼎, 1998,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143쪽.

16 성재호 · 김정균, 2006, 앞의 책, 4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 독도의 불법적 이용을 보여 줄 뿐이다. 특히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명백히 독도는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울러 자국 영역 외로 개인이 무단으로 나아가 어로나 수렵행위를 한 사실이 한 국가의 '의사'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선점법리'는 성립불가능한 이론이다. 선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행위 자체도 불가능하다.

또한 '재확인(再確認, reaffirmatio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확인(確認, affirmation)'이라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자들의 주장 그 어디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인'한 행위가 명시되지 않으며, 일본 사료상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도리어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을 통해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적 권원론의 '선점법리'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②의 경우 '1905년 영토편입조치를 근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요건에 합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17]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 국제법상 권원의 대체'라는 행위 자체를 국제법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대체적 권원론은 성립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박배근 교수는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근대 국제법상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는 다수의 섬들을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라고 평하였다.[18]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일본 측 학자의 반응으로 보이는 자료가 최근 발간되었다.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라는 영문책자이며, 이 자료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자

17 太壽堂鼎, 1998, 앞의 책, 143쪽.

18 박배근, 20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 주장에 관한 일고」, 『국제법학회논총』 50(3),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일본에서 이오토(硫黄島, 구명칭 '이오지마')[19]의 편입에 있어서 무주지의 선점과 추후 국제법에 따른 재확인이 행해졌으며, 이와 같은 영토의 재확인이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것이다.

간략히 볼 때, 다음 장에서 살펴볼 이 영문책자 자료는 대체적 권원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박배근 교수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오토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평가해 볼 때, 현재 일본 학계는 대체적 권원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체적 권원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음은 명약관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창조해 낸 순수한 독창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Masaharu Yanagihara는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에 실은 자신의 논문에서 '영토의 재확인(reaffirmation of territory 또는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intent)'을 현대 국제법상 낙도(落島)[20] 편입의 적법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21]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의 저서에서 '영토의 확인' 내지 '영토의 재확인'이라는 법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

19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해도에 'Iwo Jima'라고 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이오지마라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어난 악명 높은 '이오지마 전투'가 벌어진 섬이 바로 이 섬이다. 원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오가사와라 제도의 다른 섬들[기타이오지마(北硫黄島), 미나미이오지마(南硫黄島)]과 같이 옛 발음인 'Io-To'로 복귀되었다.

20 영어판인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에서는 'Remote Islands'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본어판이자 원본이라 할 수 있는 『国際法からみた嶺土と日本』에서는 '이도(離島)'로 표기하고 있고, 아울러 한국어 번역판인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에서도 '이도(離島)'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離島)'는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어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하기 곤란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의 '이도(離島)'를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어에서 동일한 맥락을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낙도(落島)'로 번역하였다.

21 Masaharu Yanagihara, 2024, "Incorporation of Remote Islands into the Territory of Japan–Focusing on Iō–tō and Minami–Tori–shima,"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Leiden, Koninklijke Bril, 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공유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는 해양법상 독도 영유권을 대한민국이 가질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작은 돌땅을 이웃 국가와 다투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한일 간 새로운 조약을 맺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세리타는 조선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표명과 아울러 미래를 위하여 독도를 일본이 포기하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22]

세리타는 한국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을 약속하고, 독도를 자연보호구역으로 한 다음 12해리의 어업금지수역을 설정하여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에게 이를 개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23]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하나, 이는 선행연구[24]에서 잘 검토되어 있는바, 선행연구 외의 부분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도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바위섬(Rock, 외교부 공식번역문에는 '암석'으로 표기)에 해당하며, 동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음은 해양법 전문가라면 누구에게나 자명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세리타가 주장하는 공유적 권원론이라는 것 자체의 실상은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세리타 겐타로는 국제해양법의 전문가라고 평가되지만,[25] UN해양법협약 제121조상의 섬 제도 자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제

22 芹田健太郎, 2006, 『日本の国境』, 中央公論社, 185~187쪽

23 芹田健太郎, 2006, 위의 책 , 308, 312~313쪽.

24 도시환, 2021, 앞의 글, 29~30쪽.

25 도시환, 2021, 위의 글, 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양법의 전문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양법 전문가로서 공유적 권원론을 주장한다고 보기보다는 일본의 해양영토 보전에 주 목적을 두고 현 상황에서의 차선책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해 본다.

Ⅲ. Masaharu Yanagihara의 낙도 편입 이론

1. Masaharu Yanagihara의 주장

Masaharu Yanagihara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26] 영토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중반까지 확정된 형태를 가지지 않았으며, 영토와 다르지만 동아시아에 통용되던 다양한 개념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疆域, 版図, 邦土, 所領, 化外の地 등을 언급하며,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시암,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동양 국가는 각자의 세계 질서 내에서 존재했지만 19세기 초 서구와의 접촉으로 현대 유럽 국제법에 정의된 영토 및 국경 개념을 자국에 적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현대적 영토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7] 이러한 주장은 연혁적 고찰을 포함하는 영토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서구적 영토국가 설립 이전의 영토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린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Yanagihara의 주장은 현대 영토국가 성립 이전의 영토 관련 문제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만들 뿐이다.

이 글이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Masaharu Yanagihara의 논문에서는 낙도 편입에 관하여 현대 국제법상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두 가지 방법은 '무주지(terra nullius)의 점유'와 '영토의 재확인(reaffirmation of ter-

26 Masaharu Yanagihara, 2017, "East Asian and European Notions of Territory," 日本国際問題研究所 リポジトリ, https://jiia.repo.nii.ac.jp/records/69.

27 Masaharu Yanagihara, 2017,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itory 또는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intent)'이다.[28]

그의 글에 명시된 바로는, '점유'는 17세기부터 '발견'을 대신하여 주장되어 온 것이며, 고대 로마법상의 재산권의 취득 방식 중의 하나인 '점유(occupatio)'를 그 모델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9] 이에 대한 근거로 R. Lesaffer의 논문을 참조하고 있다.[30]

19세기 후반, 무주지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서구 문명과 유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토착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 국가가 그러한 무주지에 영유권을 주장할 의도로 사실상 점유했다면, 그 국가는 그 무주지를 자국 영토에 편입할 수 있었다.[31]

이와 달리, 영토의 '재확인'은 원래 '한 국가의 영토였던 것으로 간주되는 섬을 그 자체로 재확인하고, 관할 당국과 명칭을 확정'하는 편입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32] 섬이 원래 영토였음을 재확인하는 근거는 편입 조치 이전 어느 시점에 점령되었거나, 점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이전부터 영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제부터 영토가 되었는지는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영토의 '재확인'이라는 국제법상 이론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Masaharu Yanagihara는 일본의 이오토 사례에서 '무주지(terra nullius)의 점유'와 영토의 '재확인(reaffirmation of territory 또는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intent)' 두 가지 방식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3] 그러나 실제로 이오토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아래에서는

28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4쪽.

29 Masaharu Yanagihara, 2024, 위의 글.

30 R. Lesaffer, 2005, "Argument from Roman Law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Occupa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 1, 40~41쪽.

31 성재호·김정균, 2006, 앞의 책, 410쪽.

32 Masaharu Yanagihara, 2024, 위의 글, 4쪽.

33 Masaharu Yanagihara, 2024, 위의 글, 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오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오토(硫黄島) 사례

이오토는 북위 24도 0분에서 북위 25도 30분 사이, 동경 141도 0분에서 동경 141도 30분 사이에 위치한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한 섬 중 하나로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촌에 소속된 섬이다. 도쿄로부터 약 1,200㎞ 남쪽에 있으며, 섬의 길이는 동서 9㎞, 남북 4㎞에 달한다. 총 면적은 21㎢로 서울의 종로구(23.91㎢)보다도 작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중앙 섬이 이오토이며, 남쪽의 섬을 '미나미이오토(南硫黄島)', 북쪽의 섬을 '기타이오토(北硫黄島)'라 하며, 이 세 섬으로 오가사와라 제도가 구성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해도에 'Iwo Jima'라고 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이오지마'라 불렸으나, 오가사와라 제도의 다른 섬들과 같이 옛 발음인 'Io-To'로 복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악명을 떨친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오토는 16세기에 이미 유럽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다만, 아래의 〈그림 1〉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본토와 괌 사이의 태평양 가운데 있는 낙도인 관계로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였다.



〈그림 1〉 이오토 위치

출처: 구글 지도.



〈그림 2〉 이오토 지도

출처: 구글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쿄도 공문서관에 소장된 문서에 따르면, 1887년 11월에 일본인에 의한 이오토 탐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34] 당시 도쿄도 지사인 다카사키 고로쿠가 메이지마루호에 승선하여 이오토와 토리시마를 조사하였으며, 이오토 측량은 요오코 토사쿠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식민지화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었다.[35]

그 후 1889년 6월, 다나카 에이지로, 요리오카 쇼조 등 개인이 난요마루를 타고 이오토로 항해하여 유황 광산을 발견했다. 이들은 그곳에 8명의 노동자를 남겨 두고 유황 채굴과 어업을 시작했다. 동년 11월 30일, 기업가 다나카 에이지로와 노동자 대표 아라이 요시쿠니 사이에 협정이 교환되었고, 1890년 7월까지 6차례 더 항해하여 3,300포대의 유황을 채굴했다. 1890년 3월 24일, 다나카는 다카사키 지사에게 유황 채굴 및 어업을 위한 50년간 무상 임대를 청원했다. 이 요청에 따라 도쿄도 총무과는 하치스카 모치아키 지사가 사이고 주도 내무대신에게 보낸 '섬 임대 요청서'(4월 5일 작성, 7월 21일 전달, 제4941호)를 작성했다. 해당 서한에는 "이 섬은 무인도이며, 그 위치는 제국 영토 내에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36]

그러나 1890년 7월 25일 다나카가 사망하면서 8월에 채굴이 중단되었다. 다나카의 유족인 오미타 도시요시, 아라이 요시쿠니 등이 채굴권을 놓고 다투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제출했다. 동년 10월 31일, 하치스카 지사는 '섬 귀속 승인 요청서'(제6940호)를 내무대신 사이고에게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섬의 이전 소속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이 섬은 원래 무인도였으며, 그 위치로 보아 제국령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의 영유권에

34 Masaharu Yanagihara, 2024, 위의 글, 5쪽.

35 東京市, 1981, 東京市史稿市街編 第72, 643~648쪽.

36 Tokyo Prefecture Documents (Tokyo Metropolitan Archives Collection) 619.C2.19: Nr.7: 45(1)~48, 63; 619.C2.19: Nr.10: 168; 619.C6.02: Nr.6: 160(1)~162, 215(1);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섬이 본 현의 관할하에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37]

그 후, 1891년 7월 4일 내무대신 시나가와 야지로가 외무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섬의 이름과 소속에 대한 제안을 이제 내각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 관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귀하와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에노모토는 7월 8일 서한에서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8월 6일 내무대신은 마쓰카타 마사요시 총리에게 '섬 이름에 관한 사항'(히베츠 고 257호) 문서를 제출하고 칙령 초안을 포함한 내각 결정을 요청했다.[38]

동년 8월 13일의 의견은 "본국은 요청이 당연히 승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입법국 성명과 함께 8월 14일 자 농상무부 대신 무쓰 무네미쓰의 각서가 첨부되었다.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세 섬이 실제로는 소속이 알려지지 않은 무인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가사와라 제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이 섬들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당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칙령으로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섬들은 처음부터 오가사와라 제도에 소속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고, 따라서 1885년 다이토지마와 우오카기지마(우오츠리지마)의 경우처럼, 아직 소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키나와 제도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례를 따라, 도쿄도 지사가 내무대신에게 이 섬들의 명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9]

---

37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 A15112383800 (from the 4th image), 公文類聚 Part 15, 1891, Vol. 38 (National Archives of Japan); 東京府文書 619.A8.02: Nr.9: 245–246;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5쪽.

38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6쪽.

39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A15112383800 (from the 9th image); Masaharu Yanagih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월 19일 내각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 다이토지마 외 1개 섬[40]의 경우, 1885년 오키나와 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되었는데, 당시 이미 '다이토지마' 등의 이름이 붙어 있던 이 섬들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내무대신이 국무대신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대신의 첨부 요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섬들은 지금까지 무인도였기 때문에 소속과 이름이 없어도 행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 이 섬으로 와서 어업과 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섬들의 소속과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고, 이 경우 다이토지마 조사 보고서의 사례를 선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국 법령으로 소속과 명칭을 정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이 내각 결정에 따라 9월 9일 칙령 제190호가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쿄도 관할 오가사와라 제도 남남서쪽 해안에 북위 24도 0분에서 북위 25도 30분 사이, 동경 141도 0분에서 동위 141도 30분 사이에 펼쳐진 3개 섬은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하며, 중앙의 섬을 '이오토', 남쪽의 섬을 '미나미이오토', 북쪽의 섬을 '기타이오토'라고 부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41]

그러나 농상무부 대신 무쓰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11월 5일 마쓰카타 총리에게 '이오토의 소속 및 명칭 공표에 관한 유보 사항'(간보공 제81호)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a, 2024, 앞의 글, 7쪽.

40 흥미로운 점은 Yanagihara는 자신의 글 각주 9번에 '"Daitō-jima and one other island" is understood to refer to two islands, Minami-Daitō-jima and Kita-Daitō-jima'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수형의 외일도를 복수의 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 학계의 해석론은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7쪽.

41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A15112383800 (from the 3rd image); 官報 Vol. 2461, September 10, 1891, 97.;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올해 9월 칙령 제190호로 공포된 이오토의 소속과 명칭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
> A: 이 섬들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귀속되어 왔습니다. 칙령은 단지 관할권을 설정하고 명칭을 붙였을 뿐입니다.
>
> B: 이 섬들은 이전에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칙령이 발표된 후에야 일본에 귀속되었습니다.
>
> 칙령이 발표될 당시, 저는 내각 결정의 주된 목적이 A항의 설명에 근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섬에 광산을 운영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업법에 따른 처리는 A항 또는 B항 중 어느 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내각의 공식 의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즉각적인 내각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42]

농상무부 대신 무쓰의 유보사항에 대한 장관들 간의 논의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무쓰가 유보사항을 제출한 지 약 10일 후인 11월 16일, '이오토의 소속 및 명칭 공포에 관한 농상무성의 유보사항에 대한 처리'라는 새로운 내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법 원칙과 섬의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이 섬들은 지금까지 제국의 영토였으며, 올해 칙령 190호를 통해 비로소 제국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관할 당국과 섬의 명칭이 다소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칙령 190호를 공포하기로 한 결정은 단지 그러한 이유에서였음이 분명합니다.

즉, 칙령 190호는 점령이 아니라, 해당 섬들이 본래 "일본의 부속 섬"이었음을 재확인하고, 관할 당국을 설치하고 섬의 이름을 붙이기 위한 조치였다

42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Ref. A15112383900 (from the 1st image), 公文類聚 Part 15, 1891, Vol. 38 (National Archives of Japan).;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것이다.[43]

3. 내재적 검토

Masaharu Yanagihara는 일본의 이오토 사례에서 '무주지 점유'와 영토의 '재확인' 두 가지 방식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이러한 논리는 권원론에 있어서 대체적 권원론과 흡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Masaharu Yanagihara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글 서두에 "낙도 편입에 관한 현대 국제법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무주지(terra nullius)의 점유'이며, 다른 하나는 '영토의 재확인(reaffirmation of territory 또는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intent)'이다"[45]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점유'는 17세기부터 '발견'을 대신하여 주장되어 온 영토권이며, 고대 로마법상 재산권 취득 방식인 '점유(occupatio)'를 모델로 한 이론이라고 한다.[46]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R. Lesaffer의 논문을 들고 있다.[47]

반면에 영토의 재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현대 국제법상의 방법이라고만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사례 역시 일본의 이오토 이외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명 학자들의 저작들로 돌아가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소위 '재확인의 법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무주지 점유와 달리 소위 '재확인 법리'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근거도 들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대체적 권원론과 관련하여 나카노 데쓰야는 "주권평등 원칙을 근

43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9~10쪽.

44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5쪽.

45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4쪽.

46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4쪽.

47 R. Lesaffer, 2005, 앞의 글, 40~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 체제 내에서 자국의 영역을 확인받기 위해 고유 영토를 재확인하는 국제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48]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Yanagihara의 글은 19세기 말 일본 행정체계의 복잡성과 무일관성 그리고 부처별 상황 이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이를 명확히 보여 주는 바가, 일본 외무성 조약국이 편찬한 『도서점거』(국제법 판례집, 2) 1933년 10월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오토는 점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49]

이오토 사례를 소위 '재확인의 법리'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없다. 1890년부터 1891년까지의 주요 사료를 살펴보면, 이오토가 오랫동안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과 이오토가 일본의 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50] 즉 19세기 말의 기록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된 것은 최근의 일로 보아야 하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일본 내에서조차도 자국의 영역에 대한 기록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였으며, 낙도에 대한 이해가 부처별로 상이하였음을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국의 전근대적 기록을 기초로 자국의 논리에 유리한 사료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된 법리를 창조하여 국제법이라는 겉치레를 씌우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의 비판의 대상의 저자인 Yanagihara조차도 '당시 사료만으로는 점령과 영토 재확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토 재확인을 위해서는 이오토가 언제 영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질적 지배" 등 어떤 사실

48 도시환, 2022,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동북아역사재단, 20쪽 참조.

49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10쪽 참조.

50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6.02: Nr.6: 161(1), 215(1),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A8.02: Nr.9: 245~246,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8.B5.13: Nr.1: 4,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2.19: Nr.10: 214,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6.02: Nr.6: 216,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6.02: Nr.6: 222,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2.19: Nr.7: 41,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A2.08: Nr.35: 296,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6.02: Nr.6: 242, Tokyo Prefecture Documents 619.C2.19: Nr.7: 39 (2);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11~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근거하여 주장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담은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51]'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재확인' 법리의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Ⅳ. 결론

독도와 이오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닮은꼴을 하고 있다. 다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영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오토의 경우 태평양의 낙도(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먼 원양 한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 탓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이외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없으며 일본이 현재 실효 지배 중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독도와 이오토 모두 '대체적 권원론'에 기초하여 일본이 그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적 권원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 권원의 현대적 국제법 권원의 전환이라는 국제법상 '재확인'이라는 권원 대체가 최소한 이론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저서든지 국제 저명학자의 저서든지 그 어디에도 '권원의 현대적 대체' 또는 '권원의 재확인' 등 이와 유사한 어떠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일본의 일부 학자 또는 유사 학자들만이 소위 '재확인 법리'가 국제법상 법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이오토 사례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평양 원양 한가운데 있는 낙도라는 특이점으로 인한 특수한 사례라는 점과 19세기 말 이오토가 일본의 영토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소위 '재확인' 법리의 사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일본이 이오토를 19세기 말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시 재확인하기 위하여 칙령 190호를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51 Masaharu Yanagihara, 2024, 앞의 글, 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일본 내의 예외적 사례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국제법상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이오토를 사례로 하여 소위 '재확인 법리'가 국제법상의 법리라고 주장한다면, 일개 국가 내의 특이 사례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국제법상 법리가 될 수 있다는 모순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국제법상 '재확인' 법리는 일본 내의 특이 사례를 성급히 일반화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그동안 독도에 관하여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온 기관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오토 사례를 새로 발간된 영문저작물에 첫 번째 논문으로 게재한 데에는 그만한 정치적 고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체적 권원론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재확인' 법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 저작물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정교화되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이오토 사례를 일본 내 낙도의 편입 방법 중 하나로 정교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법적 이론이 아니라 일개 국가 내의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권원의 대체 내지 소위 '재확인 법리'라는 것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 유사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체적 권원론 자체가 국제법상 이론이 아닌 유사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권원론은 일본 내에서만 그 유효성이 주장되며, 일본 외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검토한 이오토 사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아도, 이는 일본 국내의 행정상의 불비에 따른 특수한 사례일 뿐이다. 이와 동시에 이오토는 일본 이외에 그 어떤 국가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 낙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이오토가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법적 사례에 불과할 뿐, 국제법적 사례로 보기에 그 법이론적 기초가 부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도시환, 2021,「독도주권과 일본의 권원 주장의 계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동북아역사재단.

박배근, 2005,「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 주장에 관한 일고」,『국제법학회논총』50(3).

서진웅, 2023,「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법학연구』72.

_____, 2025,「법해석 방법론에 입각한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상 '외일도'의 해석」,『법학논고』88.

성재호 · 김정균, 2006,『국제법』제5개정판, 박영사.

야나기하라 마사하루 · 가네하라 아쓰코 편, 김연빈 옮김, 2024,『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귀거래사.

皆川洗, 1965,「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法律時報』37(10).

芹田健太郎, 2006,『日本の国境』, 中央公論社.

東京市, 1981, 東京市史稿市街編 第72.

柳原正治 · 兼原敦子 編, 2022,『国際法からみた嶺土と日本』, 東京大学出版会.

杉原隆, 게시 연도 미상, 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について 再考－明治十四年大屋兼助外一名の松島開拓願を中心に－,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_j.html.

植田捷雄, 1965,「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一橋論叢』第54巻 第1号.

太壽堂鼎, 1998,『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Lesaffer, R., 2005, "Argument from Roman Law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Occupa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 1.

Yanagihara, Masaharu and Atsuko Kanehara eds., 2024,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Brill/Njijhof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Yanagihara, Masaharu, 2017, "East Asian and European Notions of Territory", 日本国際問題研究所 リポジトリ, https://jiia.repo.nii.ac.jp/records/6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실지한 영토들에 대한 수복'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법 해석을 왜곡하여 과거 점령했던 영토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영토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련의 이론적 틀을 만들어 냈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러한 담론은 대체로 '독도 관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는 다양한 저서들 중에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公益財團法人 日本國際問題研究所)에서 2024년에 발간한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주목할 만한 영문 출판물이다. 이 책은 기존의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원칙을 선택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본의 영토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책에서 Masaharu Yanagihara가 주장하는 낙도의 현대적 권원의 대체로서 '재확인'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이전에도 '재확인'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이 이론은 독도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다른 선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Yanagihara는 이오토(硫黄島, 구 명칭: 이오지마)라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재확인' 이론의 법적·이론적 타당성을 재평가하며, 특히 이오토 사례에 대한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주제어〉
독도, 권원, 무주지, 선점, 편입, 영토의 재확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of the "Reaffirmation" Doctrine in the "Alternative Theory of Titles" of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EO, Jinwoong
(Research Fellow, Dokdo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nce its defeat in World War II, Japan has sought to legitimize its claims to formerly occupied territories by distorting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pretext of "restoring lost territories." These efforts have produced a series of theoretical frameworks aimed at justifying Japan's territorial asser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such discourse may be broadly characterized as "Japanese studies on territorial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Dokdo."

Among the various works reflecting this line of argument, a notable English-language publication articulating the official Japanese government position is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published in 2024 by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Consistent with prior approaches, this book attempts to rationalize Japan's territorial claims through a selective and distorte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eaffirmation" doctrine proposed by Masaharu Yanagihara in the aforementioned volume as a moder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notions of territorial acquisition over remote islands. Although Japan has previously invoked this "reaffirmation" theory, it has been applied almost exclusively to the case of Dokdo, with no other precedent identified.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Yanagihara introduces a new example- the case of Iō-tō (硫黄島, formerly called 'Iwo Jima')-which warrants further scrutiny. Accordingly, this paper reevaluates the legal and theoretical validity of the "reaffirmation" doctrine, focusing on its application to the Iō-tō case.

Keywords
Dokdo, title of territory, terra nullius, occupation, incorporation, re-affirmation of terri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5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연구논문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독도 기술과 독도 교육

김소영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I. 서론
II.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한국사』 교과서 속 독도
III. 2018 재개정 『한국사』와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및 자료 비교
IV. 결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서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중등 교육과정 중 독도 교육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1] 즉 정부의 독도 교육정책, 학교급별 교육과정에서의 독도 교육, 독도 관련 자료 및 교과서 속 기술, 독도 교육 실시 현황, 독도 교육의 방향성 제시 및 교육안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독도 교육은 지리, 사회, 역사 등 교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교과 학습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관심을 갖고 독도 교육 내용, 교육 방법론, 교육 현장에서의 실시 현황 등을 연구해 왔다.[2] 한국에서 독도 교육과 영토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된 계기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육과정 반영, 교육 실시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교육정책과 교과서 내용 등을 분석하거나 한국의 독도 교육과 비교하는 연구도 한 축을 이룬다.[3]

이와 같이 다양한 독도 교육 관련 연구 중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로 교과서 속 독도 관련 내용 분석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사(역사), 지리, 사회 등 교과별 교과서 속의 독도 기술을 분석하거나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가 새로 집필될 때마다 개정 교과서별 독도 관련 내용과 기술 변화를 살펴본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각 교과서 내용을 토대

* 논문 투고일: 2025.4.27. 심사 완료일: 2025.5.25. 재심사 완료일: 2025.11.25. 게재 확정일: 2025.11.26.

1 심정보, 2022, 「한국에서 독도 교육의 연구동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최보영, 2023, 「'독도 교육' 관련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독도연구』 35.

2 최보영, 2023, 위의 글.

3 신주백, 2010,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13;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14(1); 김영수, 2015,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 『독도연구』 19; 홍성근, 2021,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 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한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 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의 경우도 교육과정 개정별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기술과 제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역사 교육, 한국사 교육에서 독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한 연구가 적지 않다.[5]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주로 교과서 본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일 양국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료에 대한 쟁점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는 데 문제를 제기한 연구도 등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 관련 사료 학습이 갖는 역사 교육의 가치와 더 나아가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사료를 통한 사료 학습의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했다.[6]

이처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및 자료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문제점 개선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과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역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은 전근대부터 현재까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역사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고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도 한국사 교과서 속 독도 관련 내용 기술과 자료가 독도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집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

4 최보영, 2023, 앞의 글, 241~242쪽.

5 김화경, 2011,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4(2); 이상일,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 분석–독도와 러일 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13; 강승호, 2015, 「역사교육에서의 영토 교육 현황과 문제점–2011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57; 이광현, 2020, 「우리나라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독도연구』 28.

6 최보영,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의 사료학습」, 『역사교육연구』 3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교 한국사 교과서는 2024년 검정을 거쳐 8개 출판사 8종 교과서(『한국사』 1, 2로 구성되어 총 16권)가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과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역사 교육에서 독도 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을 예측한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7]

이와 같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독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과 자료, 구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개정 교과서로 독도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독도 관련 내용과 구성, 교육 방법의 적절성 혹은 문제점을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향후 보완할 점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되었던 2015 개정(2018 재개정) 한국사 교과서와 202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기술 및 자료 등을 교육과정과 교과서별로 분석하고, 다시 출판사별로 2018 교과서와 2022 교과서를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역사 교육으로서 독도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에서 실시하는 독도 교육이 '역사 교육으로서 독도 교육'이라는 교육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기술과 구성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심정보,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 영역의 개발과 독도 기술의 특징」, 『독도연구』 36; 전기석 외,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도 교육의 변화와 과제」, 『독도연구』 36; 안운호, 2024, 「고등학교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역사·지리 교과의 독도 교육 내용 반영 분석과 교수-학습 적용 방안 연구」, 『독도연구』 3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한국사』 교과서 속 독도

1. 2015 개정(2018 재개정) 한국사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독도 관련 기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2015년 9월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지만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8년 7월, 일부 재개정되었다. 재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9년 검정을 거쳐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교육과정이 재개정되면서 독도 관련 교육도 변화가 있었다. 즉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표 1〉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두 단원에 걸쳐 독도에 관해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재개정에서는 한 단원에서만 독도를 다루도록 했다.[8] 즉 20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5단원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독도와 간도'라는 소주제하에서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와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을 학습 요소로,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의 소주제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수호'를 학습 요소로 제시했다.[9]

반면 2018년 7월 재개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단원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소주제하에서만 다루도록 했다.[10] 단원 개관과 성취 기준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교과 내용의 학습 요소에 '독도와 간도'를 제시했다. 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으로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독도가 우리의

8 교육부, 2015.9,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교육부, 2018.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9 교육부, 2015.9,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10 전기석 외, 2024, 앞의 글, 44~4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독도 관련 내용

<table>
<tr><th>단원</th><th>독도 관련 내용</th></tr>
<tr><td>5.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td><td>[10한사05-04]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

(가) 학습 요소
<table><tr><th>소주제</th><th>학습 요소</th></tr><tr><td>독도와 간도</td><td>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 협약</td></tr></table>
(다) 교수 ·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독도 학습 시 독도 관련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 방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td></tr>
<tr><td>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td><td>[10한사07-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가) 학습 요소
<table><tr><th>소주제</th><th>학습 요소</th></tr><tr><td>현대 세계의 변화</td><td>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수호, 동북 공정</td></tr></table>
나) 성취 기준 해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게 한다. 중국의 동북 공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 문제에 대한 역사적 탐구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 방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제시를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td></tr>
</table>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독도 교육을 강조했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평가 기준을 세워 독도에 관해 학습하도록 했다.[11]

11 교육부, 2018.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2018년 7월 재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독도 관련 내용

<table>
<tr><th>단원</th><th>독도 관련 내용</th></tr>
<tr><td>2.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td><td>(가) 학습 요소
<table><tr><th>소주제</th><th>학습요소</th></tr><tr><td>독도와 간도</td><td>러일 전쟁, 을사늑약, 국권 상실, 항일 의병, 애국 계몽 운동, 독도와 간도</td></tr></table>
(다) 교수 ·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td></tr>
</table>

최종적으로 2018년 재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12]의 전근대 시기 독도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면 교과서마다 기술 내용의 상세함이나 분량 면에서 편차가 있다. 전근대사 기술 분량이 축소되면서 전근대 독도 역사를 근대 독도 관련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기술하거나 본문에는 기술하지 않고 사료와 지도 등 관련 자료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 독도에 대해 상당한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한 교과서도 있었다.

먼저 미래엔 교과서는 2단원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독도와 간도'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 시대 이래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였지만 개항 이후 일본 어민들이 불법으로 침입하는 일이 늘어났다"라는 기술 외에 전근대 독도에 관련된 설명이나 사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13] 해냄에듀 교과서는 총 9종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이 가장 적었다. 전근대 시기 독도에 관한 기술은 없었고, 사료 제시 역시 '태정관 지령'을 일부 인용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14] 씨마스 교과서도 2단원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에서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이라

12 2019년 검정을 통과해 2020년부터 사용된 8종 교과서는 노대환 외(동아출판, 2020), 도면회 외(비상, 2020), 송호정 외(지학사, 2020), 신주백 외(씨마스, 2020), 최병택 외(천재교육, 2020), 박중현 외(해냄에듀, 2020) 등이다. 리베르스쿨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2020년 추가 검정을 통과하여 2021년 출판되었다.

13 한철호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128쪽.

14 박중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1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소주제하에 독도를 다루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문장 외에 전근대 시기 독도 관련 기술은 없었다. 사료 역시 본문에 〈팔도총도〉만을 제시하고, '주제탐구'에서 『세종실록』「지리지」를 제시했다.[15]

반면 비상 교과서는 근대 이전 독도의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는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이 사료상에 기록된 독도 명칭과 영토 인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 시대 이전부터 우산국으로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 조선 후기 속종 때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몰래 침입하여 생활하는 등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 권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일본인들이 건너오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안용복이 가져간 「조선팔도지도」를 일본 관리가 문서로 옮겨 적었는데, 여기에 '다케시마(죽도: 울릉도)'와 '마쓰시마(송도: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일본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16]

이 교과서는 본문 기술 외에도 '역량을 더하다'라는 학생 활동에서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라는 주제하에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한국 측 사료와 일본 사료를 제시했다. 한국 자료로는 『삼국사기』 지증왕조 기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속 지도인 〈팔도총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등이었다. 일본 측 기록으로는 『은주시청합기』, 〈삼국접양지도〉, '태정관 지령문', 〈기죽도약도〉 등이었다.[17]

15 신주백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142~143쪽.

16 도면회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 1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천재교육, 동아출판, 지학사 교과서도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과 『삼국사기』, 『동국문헌비고』,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독도 관련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세기 말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몰아내고 일본까지 쫓아가 이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는 사실도 기술했다.[18] 동아출판은 본문 기술 외에도 '흐름으로 보는 역사, 독도의 역사'라는 제목하에 독도의 역사를 연표로 만들고, 관련 사료를 함께 제시했다. 또 '독도 홍보 영상 만들기'를 학생 활동으로 제시하며, 독도를 지킨 안용복을 예시로 들었다.[19] 금성도 삼국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독도의 역사를 기술하는 한편[20] 학생 활동을 위한 '창의 융합 교실'에서 전근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외국, 즉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 측 자료와 연합국 각서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21]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9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독도를 다루었는데, 비상, 천재, 동아, 지학사 교과서와 비슷하게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각 시대별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역사와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을 자세히 기술했다.[22]

현대사에서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 상황도 교과서마다 기술 여부나 분량에 차이가 있다. 먼저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 교과서로는 천재교육, 동아, 비상교육, 리베르스쿨, 미래엔을 들 수 있다. 천재교육은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해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의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하에 상세히 기술했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 해방 이후 연합

17 도면회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 134~135쪽.

18 최병택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135쪽; 노대환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120~122쪽; 송호정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135쪽.

19 노대환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120~122쪽.

20 최준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139쪽.

21 최준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142~143쪽.

22 이익주 외, 2021,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1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 최고 사령관 지령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3] 동아도 4단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하에서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 인정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을 자세히 기술하고, '역사 탐구하기'에서 1945년 이후 최근까지 독도와 관련한 사료, 지도, 국제법 등을 연표로 제시했다.[24] 비상교육과 리베르스쿨도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을 설명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25]

전근대 시기 독도의 역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미래엔 교과서도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독도특집'이라는 제목으로 별도 기술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왜곡하는 일본의 주장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포함했다.[26] 금성출판사는 현대사 부분인 4단원에서는 해방 이후 독도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3단원 '창의 융합 교실'에서 전근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 측 자료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발표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에서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했다는 것과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서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기술했다.[27]

23 최병택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308~309쪽.

24 노대환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301쪽.

25 도면회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 306쪽; 이익주 외, 2021,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302~303쪽.

26 한철호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307쪽.

27 최준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142~1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거나 혹은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로는 지학사, 해냄에듀, 씨마스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지학사는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군령을 발표하여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독립한 한국에 반환하였다"라는 간단한 언급과 함께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규탄'과 관련한 시민 단체 사진을 실었다.[28] 해냄에듀도 4단원이 아닌 3단원에서 2006년 4월 25일에 발표된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자료로 제시한 후[29]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의 '동아시아,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다'에서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등 일본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30]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광복 이후 독도에 관한 기술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2018 재개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에 따라 2단원 '근대국가의 수립'에서 근대 시기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과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였다. 전근대 시기 독도 역사의 경우 2단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4단원 혹은 3단원에서 짧게 기술하거나 전혀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독도 역사를 교육, 학습한다면 독도 영유권의 역사성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도 영유권을 회복하게 된 과정, 영유권 회복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및 이유'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28 송호정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301~302쪽.

29 박중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130쪽.

30 박중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3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2015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편성했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 "중학교 '역사'의 학습에 이어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근대 이전 한국사는 전근대 시대별 주요 내용을 정치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근대의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특징을 탐구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근현대 한국사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기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을 중학교 '역사'의 전근대 한국사와 연계하여 근현대사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설계했다.[31]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는 내용상 기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교과서 구성상에 변화가 있었다. 즉 전근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한 권에 담았던 기존 교과서와 달리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등 전근대와 근대사 일부를 『한국사』 1로,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 '오늘날의 대한민국' 등 일제 시대와 현대사를 『한국사』 2로 하여 두 권으로 구성되었다.[32]

새로운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독도 교육과 관련한 변화도 나타났다. 〈표 3〉에서 정리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교과서 집필 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주제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 체계'의 주제는 물론 '내용 요소'에도 독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성취 기준'에는 독도가 등장했는데, 현대사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라

31 교육부, 2022.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4】).

32 교육부, 2022.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기준과 함께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단 한 차례 독도가 언급되었다.[33]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면서 독도 역사가 기술되는 단원도 바뀌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는 근대사를 다룬 2단원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소주제하에서 주로 기술되었고,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도 일부 기술되었던 데 비해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현대사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다루는 것으로 변화되었다.[34]

이처럼 2022년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의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 집필될 한국사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기존 교과서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35] 독도 관련 내용의 감소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만 예상되는 것이 아니었다. 2022 개정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36]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된 한국사 교과서가 2024년 교육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독도 관련 내용

단원	독도 관련 내용
3. 오늘날의 대한민국	(가) 성취 기준 해설 [10한사2-03-03]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동아시아 영토 문제 및 역사 갈등 등을 파악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밑줄은 필자)

33 교육부, 2022.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34 교육부, 2022.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35 전기석 외, 2024, 앞의 글, 69쪽.

36 전기석 외, 2024, 위의 글, 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 검정을 통과하여 『한국사』 교과서 8종(8개 출판사, 『한국사』 1, 2로 구성되어 총 16권)이 공개되고, 2025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가 공개됨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독도 관련 내용이 『한국사』 교과서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기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2022 개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과 기술 분량, 자료 등을 출판사별로 분석한 후 장을 달리하여 2015(2018 재개정) 교과서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래엔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와 근대 시기 독도에 관한 서술이 모두 소략했다. 『한국사』 1의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소주제하에 본문이 아닌 날개에 '독도와 간도를 강탈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한 제국의 독도 관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했다.[37]

『한국사』 2에서는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하에 '한국사 주제 탐구'라는 제목으로 독도를 탐구 학습하도록 했다. 독도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었던 1905년 불법적으로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했던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 주는 주요 근거를 정리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라고 기술한 후 주제 탐구를 위한 전근대부터의 독도 관련 사료 및 자료를 연표와 함께 제시했다. 제시한 자료는 『삼국사기』 지증왕 기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숙종실록』 기사, '태정관 지령', '대한 제국 칙령 제42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일본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의 〈일본영역도〉 등이었다.[38]

37 강승호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미래엔, 130쪽.

38 강승호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미래엔, 142~1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상교육은 『한국사』 1의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독립 협회를 설립하고 대한 제국을 수립하다'라는 소주제에서 대한 제국의 개혁을 설명하는 가운데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관할하게 했으며, 이것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간략히 기술했다.[39] 이어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또 다른 소주제에서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발령하여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적인 영토 침탈이라고 언급했다. 또 '울도 군수 심흥택과 일본 관민 조사단'라는 제목의 사진자료와 함께 "울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독도를 조사하러 온 일본 시마네현의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흥택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응 방안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라 제대로 된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고 해설했다.[40]

『한국사』 2에서는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소주제하에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라는 제목으로 광복 이후 독도의 영토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상세히 기술하고,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를 자료로 제시했다.[41] 그런데 이러한 본문 기술과 함께 같은 페이지에 '알고 싶은 세계사'라는 제목하에 '동아시아를 둘러싼 영토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 열도 갈등,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갈등 문제 등을 다루었다.[42] 한국 정부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며, 국제 사법의 대상이 될 수

39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비상교육, 124쪽.
40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비상교육, 143쪽.
41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비상교육, 149쪽.
42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비상교육, 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3] 그런데 한국의 독도 영유권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한 지면에서 다룬다면 독도 역시 '갈등' 혹은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내용을 분리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 이 교과서는 '우리 땅 독도를 홍보하다'라는 제목으로 '창의융합' 학생 활동을 제시했다. "독도는 지리적·국제법적·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독도를 홍보해 보자"라는 활동 제안과 함께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가치, 국제법적 근거로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자료로 보여 주었다. 역사적 근거로는 한국 측의 〈조선전도〉(1845)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일본 측 사료로는 〈삼국접양지도〉와 '태정관 지령(1877)'을 제시했다.[44]

이와 같이 비상교육 교과서는 전근대 시기 독도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자료 제시 없이 근대 이후부터 현대까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관련 자료를 활용해 독도를 홍보하는 학생 활동을 구성했다.

천재교육 교과서도 『한국사』 1의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소주제하에 '독도와 간도로 보는 국권 침탈'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독도도 침탈당했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로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제시했다.[45] 이어 『한국사』 2의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하에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제목으로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 관련 역사 사실들을 연표로 작성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 주는 사료들로, '태정관 지령', '연

43 심정보, 2024, 앞의 글, 16~17쪽.

44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비상교육, 152~153쪽.

45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천재교육, 1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제677호'에 따른 부속 지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일본영역도〉 등을 제시했다. 또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 홍보 공간 기획안 작성해 보기'라는 학생 활동을 하도록 했다.[46] 그 외에도 QR코드를 통해 독도 전경과 독도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하도록 했다.[47] 이 교과서도 앞서 살펴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전근대 시기 독도 역사에 대해 설명이나 자료 제시 없이 근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기술하고, 연표와 자료를 활용해 독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구성했다.

반면 동아출판은 『한국사』 1의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에서 "조선 후기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였다. 이에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 정부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독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여 조선 후기 독도 상황을 기술했다.[48]

이어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일본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는 소주제하에 '독도와 간도', '탐구하는 한국사, 독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다른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독도에 대해 기술했다. 전근대에서는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조선은 『세종실록』「지리지」와 〈팔도총도〉 등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다.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으로 일본 에도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라고 설명한 후 대한 제국 시기 독도 관할 노력, 일제에 의한 강탈 등을 기술했다.[49] 또 '탐구하는 한국사'에서는 독도 역사를 전근대 시기부터

46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천재교육, 158~159쪽.

47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천재교육, 158쪽.

48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동아출판, 63쪽.

49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동아출판, 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05년까지 연표로 작성하는 한편 『삼국사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태정관 지령'과 〈기죽도약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 고시' 등 다양한 사료를 실었다.[50]

『한국사』 2에서는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노력'이라는 소주제에서 '우리 땅 독도'라는 제목으로 광복을 전후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사실을 기술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사』 1에서 이미 기술했던 '광복 이전 독도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시 언급했다. 또 '탐구하는 한국사, 광복 이후 독도의 역사'라는 탐구 학습을 별도로 설정하여 광복 이후 독도 관련 연표와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등을 제시했다.[51]

다른 교과서들이 한 단원 혹은 두 단원에서 독도를 다룬 것에 비해 동아출판 교과서는 총 세 단원에 걸쳐 독도의 역사를 전근대부터 현재까지 기술했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다만 조선 후기, 근대, 현대 등 각 시대별로 두 권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다루면서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기도 했다.[52]

지학사의 경우 『한국사』 1에서는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이라는 소주제하에 러일 전쟁을 설명하며 "일본은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하여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했다.[53] 또 『한국사』 2에서도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모색'이라는 소주제하에 본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

50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동아출판, 143쪽.

51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동아출판, 150~151쪽.

52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동아출판, 63쪽, 142쪽.

53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지학사, 1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 사회의 우경화를 계기로 일본 우파들은 역사 교과서에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하여 명시하였다"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그쳤다.[54]

이처럼 본문 서술은 간략했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로 '우리의 영토, 독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시대별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다. 한국 측 사료로는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숙종실록』,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동국지도」를, 일본 측 기록으로는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 〈삼국접양지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태정관 지령',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그에 대한 대한 제국의 반응을 보여 주는 『각관찰도안』(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 군수 이명래의 보고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 제3호)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 외교부 독도 사이트,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 박물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광복 이후 전개된 독도 수호 활동을 조사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드는 학생 활동을 구성하였다.[55] 즉 독도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독도의 역사를 학습자가 자료를 통해 스스로 탐구하여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리베르스쿨도 『한국사』 1의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소주제로 독도의 역사를 다루었다.[56] 전근대 독도에 대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삼국 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조선 후기 숙

54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지학사, 154쪽.

55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지학사, 156~157쪽.

56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제목만 본다면 독도에 대해서만 서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간도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종 때에는 어부였던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 관리로부터 확답받고 돌아왔다. 안용복 사례와 같이 일본 측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려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였다"라고 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이어 대한 제국 시기 독도 수호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순종실록』 등 한국 측 자료와 일본 측 자료로 본문에서도 언급한 일본 '태정관 지령'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탐구 활동(역사탐구)에 활용하도록 했다.[57]

독도에 관한 기술은 『한국사』 2에서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의 소주제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에서 다시 등장한다. 『한국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 탐구 활동(역사탐구)으로 '독도 지킴이 카드 뉴스 만들기'를 제안하고, "독도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술하는 한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 자료를 실었다.[58]

2018 재개정 교과서들 중 전근대 독도 관련 기술이 가장 적었던 해냄에듀 교과서는 2022 개정에서도 전근대 시기 독도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고 근대 시기부터 서술했다. 『한국사』 1의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기다'라는 소주제하에 '특집'에서 '섬과 같은 땅, 간도'와 '우리 땅, 독도'라는 제목으로 독도를 다루었다.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는 삼국 시대 이래로

57 김보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리베르스쿨, 156~157쪽, 158쪽.

58 김보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리베르스쿨, 1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 땅으로 인식되던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러일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관련 사료로 일본의 '태정관 지령(1877')',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제시했다.[59]

『한국사』 2에서는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다'라는 소주제하에 '협력 학습'으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카드 뉴스 만들기'를 구성했다. 먼저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던 독도는 광복 이후 한국에 반환되었다.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근대 자료로 『삼국사기』와 〈팔도총도〉를, 근대 자료로는 『한국사』 1에서 나왔던 '태정관 지령'과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해방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의 부속지도,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등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성했다.[60]

씨마스 교과서는 동아출판, 리베르스쿨과 마찬가지로 『한국사』 1의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의 '일본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서 '간도와 독도'를 함께 기술했다. 즉 20세기 초, 간도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과 이후 일본에 의해 중국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가 삼국 시대 이래 우리 영토였다는 점을 간략히 언급하고, 19세기 개항 이후 일본 어민의 불법 침입이 늘어나면서 조선, 대한 제국 정부가 일본에 항의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관할하게 되었지만 일본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독도를 강점한 후 1905년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그

59 조한경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해냄에듀, 138~139쪽.

60 조한경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해냄에듀, 146~1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고 일본 측 기록으로 『은주시청합기』와 '태정관 지령'을 제시했다.[61] 『한국사』 2에서는 3단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독도 관련 '주제탐구'를 구성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라는 주제로 학습자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탐구하도록 했다. 6·25 전쟁 이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62]

III. 2018 재개정 『한국사』와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및 자료 비교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재개정 한국사 교과서와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 모두 독도 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따라 독도 역사를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두 개정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독도 역사 교육에서 강조되는 점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과 자료 그리고 구성 변화를 보다 상세히 비교, 검토하기 위해 2018 재개정과 2022 개정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정리했다.[63]

1. 미래엔 『한국사』

미래엔 교과서는 2018 교과서에서 전근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을 뿐

61 신주백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씨마스, 156~157쪽.

62 신주백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씨마스, 156~157쪽.

63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하지 않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총 8개 출판사 교과서의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 이래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였지만 개항 이후 어민들이 불법으로 침입하는 일이 늘어났다. …"라고 전근대 시기를 간략히 언급한 후 일제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언급	1. 태정관 지령 2. 기죽도약도 3.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4. 각관찰도안(이명래 보고, 박제순 지령)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본문 아닌 날개에 '독도와 간도를 강탈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한제국의 독도 관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	없음
4. 대한민국의 발전	'독도 특집, 독도는 우리 땅'이란 제목으로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서술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2. 일본 영역 참고도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한국사 주제 탐구'라는 탐구 활동으로 학습, 전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자료와 연표 제시	1. 삼국사기 2.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3. 숙종실록 4. 태정관 지령 5.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6.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7.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아니라 근현대 독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했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전근대 독도의 역사에 대한 본문 기술은 없었지만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자료와 연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64]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숙종실록』 등 전근대 자료를 제시하여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연원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은 2018 교과서에 비해 역사 교육적 측면에서 독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도 역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연표와 자료만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

64 강승호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미래엔, 130쪽; 『고등학교 한국사』 2, 미래엔, 2025, 142~1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완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 역시 학생들이 자료와 연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비상교육『한국사』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식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 시대 이전부터 우산국으로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 『고려사』에는 독도가 우산으로, 울릉도가 우릉 또는 무릉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라고 전근대 시기 독도 역사를 상세히 기술한 후 대한 제국 시기 일본의 독도 강탈까지 기술 '역량을 더 하다,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에서 독도를 주제로 별도 학습하도록 구성	1. 삼국사기 2. 고려사 3. 세종실록 지리지 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5. 조선팔도지도 6.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7. 울도 군수 심흥택과 일본 관민 조사단 사진 8. 은주시청합기 9. 삼국접양지도 10. 태정관 지령문 11. 기죽도약도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대한 제국의 개혁을 설명하는 가운데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관할하게 했으며, 이것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기술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발령하여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적인 영토 침탈이라고 설명	1.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2. 울도 군수 심흥택과 일본 관민 조사단 사진
4. 대한민국의 발전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을 설명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기술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라는 제목으로 광복 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상술, 자료 제시 '우리 땅 독도를 홍보하다'라는 '창의융합' 학생 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 제시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2.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 3.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4. 조선전도 5. 삼국 접양지도 6.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7. 태정관 지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상교육의 2018 교과서는 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의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풍부히 소개하였으며, 독도를 주제로 별도 학습을 구성하여 전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도의 역사를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서였다. 그런데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전근대 독도 관련 기술이 빠지고 근현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한편 독도를 홍보하는 학생 활동을 구성했다. 학생 활동을 위한 자료도 지난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던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조선팔도지도」 등 전근대 자료가 모두 사라지고, 근현대 자료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65] 이처럼 2022 개정 교과서에서 전근대 독도 역사에 대한 상세 기술과 자료가 모두 빠진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이지만 전근대뿐만 아니라 근현대 시기 독도 관련 기술과 자료도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역사 교육에서 독도 교육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천재교육 『한국사』

천재교육 교과서도 비상교육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2018 교과서에서는 전근대 독도의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를 역사적 맥락에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전근대 독도에 대해서는 본문 기술 없이 간략한 사실(史實)을 표시한 연표를 작성하여 보여 주고, 근현대를 중심으로 독도 역사를 기술했다. 또 2018 교과서에 실렸던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 등 전근대 시기 독도 관련 자료들도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을 시작으로 근현대 시기 자료만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66] '독도 홍보 공간 기획안 기

65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비상교육, 152~153쪽.

66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천재교육, 137쪽; 『고등학교 한국사』 2, 천재교육, 2025, 158~15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그 밖에도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독도 관련 기록이 전해진다. …"라고 전근대 시기를 상술한 후 대한 제국 시기 일본에 의해 독도 강탈까지 기술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 지리지 3. 신증동국여지승람 4. 동국문헌비고 5.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6.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7.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8. 신찬지지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독도와 간도로 보는 국권 침탈'이라고 하여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독도 역시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관련 자료로 제시	1.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2.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4. 대한민국의 발전	독도의 지리적 위치, 해방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과 1951년 샌프란시스 강화 조약 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있음을 상세히 기술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 2.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 3. 일본 영역도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제목으로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 관련 역사 사실들을 연표로 작성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 주는 자료 제시 역사 탐구 학생 활동으로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 홍보 공간 기획안을 작성해보기"라는 활동안 제시	1. 태정관 지령 2.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제677호에 따른 부속 지도 3. 일본 영역도 4.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획안'을 작성해 보는 학생 활동은 독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생태적 가치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를 홍보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독도 교육이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적, 생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융합교육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7]

67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천재교육, 15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동아출판 『한국사』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으로 일본에도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대한 제국 시기 일본에 의한 독도 강탈 설명 '독도 홍보 영상만들기'를 학생 활동으로 제시하며, 안용복을 예시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 지리지 3.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4. 팔도총도 5. 태정관 지령 6. 기죽도약도 7.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8. 시마네현 고시 9. 대한매일신보	2.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한국사 1)	"조선 후기에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였다. 이에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혔다. …조선 정부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독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라고 조선 후기 독도 상황 서술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독도와 간도'라는 제목으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지증왕때 신라에 복속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으로 일본 에도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라고 기술한 후 대한 제국 시기 독도 관할 노력, 일제에 의한 강탈 등을 기술 '탐구하는 한국사'에서 전근대부터 1905년까지 연표로 작성하고 자료 제시	1. 삼국사기 2.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3. 세종실록 지리지 4. 팔도총도 5. 태정관 지령 6. 기죽도약도 7.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8. 시마네현 고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대한민국의 발전	광복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 인정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을 자세히 기술 '역사 탐구하기'라는 주제로 1945년 이후 최근까지 독도와 관련한 사료, 지도, 국제법 등을 연료로 제시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2.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 3.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4. 동아일보 기사 5. 독도 의용 수비대 사진 6.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우리 땅 독도'라는 제목으로 광복을 전후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사실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기술 광복 이전 독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간략히 기술하고 '광복 이후 독도의 역사'라고 하여 연표와 지도, 자료 제시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부속지도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4.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동아출판은 2018 재개정 교과서에서 전근대부터 근현대까지 독도의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다양한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전근대 독도에 대한 기술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한국사』 1의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에서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한데 이어 3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에서도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기까지 독도 역사를 다루었다.[68] 그리고 『한국사』 2에서 광복 이후 독도 상황을 기술하는 한편 광복 이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69] 이처럼 전근대 한 단원을 포함하여 근대, 현대까지 총 세 개 단원에서 독도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2022 개정 교과서들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독도의 역사를 다루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량으로 독도를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약상과 같은 전근대 독도의 역사를 반복 기술하면서 더 풍부한 내용이나 자료를 다루지는 못했다.

68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동아출판, 63쪽, 142쪽.

69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동아출판, 150~15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지학사 『한국사』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여겨졌다. …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고려 때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고 관리가 어려워지자 조선 전기에는 울릉도 등 섬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실시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대한 제국 시기 일본에 의한 독도 강탈 설명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 지리지 3. 숙종실록 4.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5. 태정관 지령 6. 신안신문(시마네현 고시 제40호)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별도로 독도를 기술하지 않고, '일본의 국권 침탈'이라는 소주제하에 러일 전쟁을 설명하며 "일본은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하여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는 사실만 언급	
4. 대한민국의 발전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에 대한 설명 없이 관련 사진 제시	1.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를 규탄하는 시민 단체 사진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198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계기로 일본 우파들은 역사 교과서에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하여 명시하였다"라고 간단히 기술 '범교과' 학습 주제로 '우리의 영토, 독도'를 별도로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대별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 독도 수호 활동 조사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포스터 만들기 활동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 지리지 3. 숙종실록 4. 동국지도 5.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6.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 7. 삼국접양지도 8.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9. 태정관 지령 10.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1. 각관찰도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8 재개정 지학사 교과서는 전근대부터 근대까지 독도의 역사를 상술하고 관련 자료도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광복 이후 독도에 관해서는 독도 영유권 회복 과정이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전 교과서에서 상술했던 전근대 시기 독도에 관한 설명이 빠지고 근현대 독도에 관해서도 대한 제국 시기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과 현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만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70] 자세한 본문 기술이 없는 대신 '범교과' 학습 주제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포스터를 작성하는 학생 활동을 하도록 구성했다.[71] 하지만 학생 활동을 위한 자료 제시도 전근대부터 근대까지로 국한되고 광복 이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회복 등에 관한 자료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독도를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통사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설명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6. 리베르스쿨 『한국사』

2022 개정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2018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자료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전 교과서에서 전근대부터 근현대까지 독도의 역사를 본문에서 기술하는 한편 관련 자료 역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저술된 새로운 교과서도 전근대와 근대 독도의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또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언급했다.[72] 이 교과

70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지학사, 147쪽.

71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지학사, 156~157쪽.

72 김보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 리베르스쿨, 156~158쪽; 『고등학교 한국사』 2, 리베르스쿨, 2025, 1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독도 관련 자료와 참고 사이트를 소개하고, 독도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작성하는 학생활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지증왕 13년(512)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복속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우산국은 울릉도의 옛 이름인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었으므로 당시 우산국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포함한 명칭이었다. "세종실록"의 '지리지'에는 … 당시 사람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기록이다. …"라고 전근대 독도의 역사를 가장 상세히 기술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 지리지 3.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4. 삼국접양지도 5. 태정관 지령 6.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7.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삼국 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 사례와 같이 일본 측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려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였다"라고 기술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 지리지 3. 동국문헌비고 4.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5. 순종실록 6. 태정관 지령 7. 시마네현 고시
4. 대한민국의 발전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을 설명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2.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4. 독도의용수비대 사진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학생 탐구 활동(역사 탐구)으로 '독도 지킴이 카드 뉴스 만들기'를 제안하고, "독도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술	1.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2.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독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 해냄에듀『한국사』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전근대 독도 역사 관련 기술 없이 자료 일부만 제시하고, 범교과 학습으로 '우리 땅 독도'에서 대한 제국 시기 일제의 독도 강탈에 대해서만 기술	1. 태정관 지령 2.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3. 대한매일신보 4.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전근대 독도의 역사에 대한 기술 없이 '특집'에서 '우리 땅, 독도'라는 제목으로 전근대부터 1906년까지 연표로 작성하고, 근대 일본의 독도 침략 설명	1. 태정관 지령 2.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3. 대한매일신보 기사
4. 대한민국의 발전	광복 이후 독도에 관한 서술 없이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만을 자료로 앞의 2단원 '근대 국가의 수립'에서 제시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협력 학습'으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카드 뉴스 만들기'를 제시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 광복 이후의 독도 영유권 회복 과정을 연표와 함께 설명,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 관련 자료를 제시	1. 삼국사기 2. 팔도총도 3. 삼국접양지도 4. 태정관 지령 5.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6.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와 부속 지도 7.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해냄에듀는 2018년 재개정 교과서에서 전근대 독도에 대해 본문 기술 없이 자료만 제시하고, 근대와 현대 시기 독도의 역사도 자료와 연표로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쳤다.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전근대와 근대 독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술하지 않고 '특집'에서 연표 작성을 통해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이전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73] 현대사 부분에서는 '협력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독도 관련 카드 뉴스를 작성하는 학생 활동을 구성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 광복 이후 독도 영유권 회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표

73 조한경 외, 2025,『고등학교 한국사』1, 해냄에듀, 138~1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다.[74] 자료 면에서 본다면 『삼국사기』, 〈팔도총도〉, 〈삼국접양지도〉 등 전근대부터 광복 이후 자료들을 보여 주어 학생들이 통시대적으로 독도를 학습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전 교과서보다 독도 교육 교재로써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대 독도 역사를 『한국사』 1과 2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하면서 '태정관 지령',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자료가 중복 제시되었는데, 중복 자료를 다른 자료로 교체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접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씨마스 『한국사』

단원	2018 재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단원	2022 개정 독도 관련 내용	자료
2. 근대 국가의 수립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언급 외에 전근대 독도의 역사를 다루지 않음. 근대 이후 일본의 독도 침탈을 중심으로 서술	1. 세종실록 지리지 2. 팔도총도 3. 숙종실록 4.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5.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의 보고서와 답변 6.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 7.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8. 태정관 지령문 9. 실측 일청한군용정도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한국사 1)	간도와 독도를 함께 기술하고, 독도와 울릉도가 삼국 시대 이래 우리 영토였다는 점을 간략히 언급 근대 이후 일본의 독도 침탈을 서술	1. 세종실록 지리지 2. 팔도총도 3. 강치잡이 사진 4.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5. 태정관 지령 6. 은주시청합기
4. 대한민국의 발전	없음	없음	3.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사 2)	'주제탐구–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 세종실록 지리지 2. 숙종실록 3.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4. 이명래의 보고서에 대한 대한 제국 정부의 답변 5.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6.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74 조한경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해냄에듀, 146~1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씨마스의 경우 2018 재개정 교과서와 2022 개정 교과서 모두 전근대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만 제시하고 근대 일본의 독도 침탈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또 2018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독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자료조차 없었던 데 반해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75] 새로운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에 비해 제시된 자료 수가 늘었지만 앞서 살펴본 해냄에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 1과 『한국사』 2에서 독도를 설명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가 중복 제시되었다. 자료의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재개정 교과서에서 축소된 전근대 시기 독도 역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더욱 간략히 기술되거나 또는 내용 기술 없이 자료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독도 홍보하는 활동'이 성취 기준 고려 사항이었으므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는 독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홍보 활동을 하는 탐구 주제나 학생 활동을 포함시켰다. 교과서 본문에 내용 기술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 활동을 위한 관련 자료를 더 풍부하게 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존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던 자료들 외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거나 자료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지는 않았다.[76]

또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시대 구분상 현대사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권 회복과 영토권 회복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대로라면 현대사 한 단원에서만 독도의 역사가 기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75 신주백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2, 씨마스, 156~157쪽.

76 교육부, 2022.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8 교과서와 비슷하게 근대사인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에서 일본에 의해 독도 영유권을 강탈당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한편 전근대 시기 독도의 역사도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한 권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교과서와 달리 두 권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과서는 근대 독도 역사는 1권에, 광복 이후 독도는 2권에 기술하면서 1권에 등장했던 설명이나 자료가 2권에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과서 분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일 내용이나 자료를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이나 자료를 추가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론

2015 개정(2018 재개정)과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교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그리고 출판사별 교과서마다 독도 관련 서술의 범위나 자료, 구성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독도 교육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와 문제점 혹은 보완점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2018 재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독도 관련 내용을 근대 시기에 다룬다는 교육과정에 따라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전근대 시기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술하거나 자료와 지도 등으로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광복 이후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교과서들도 있었지만 관련 자료만 제시하거나 혹은 서술과 자료 모두 없는 교과서도 있었다.

2018 재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만을 비교하여 본다면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22 교육과정이 한국사 교과서에 실제 어떻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영되어 집필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이 기존 교과서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술 내용과 제시 자료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한 권으로 구성된 2018 재개정 교과서와 달리 『한국사』 1과 『한국사』 2, 두 권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 중에는 전근대 시기 독도에 대해 상술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자료만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운 한국사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광복 이후 독도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 다양한 학생 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를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현대 독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기존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근대 독도의 역사 역시 개정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기술하거나 축소하여 기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료 면에서는 2018 재개정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것보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 자료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숙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먼저 한국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은 '역사 교육으로서 독도 교육'이라는 교육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 교육으로서 독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2018 재개정 교과서와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독도 내용 기술과 구성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근대와 현대에 걸쳐 독도의 역사를 기술하였지만 전근대는 물론 근·현대 독도 역사를 '역사적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구성 면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내용 면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와의 계열성을 고려한 결과겠지만 전근대 독도 역사를 상술한 교과서가 거의 없으며, 근현대, 특히 광복 이후 현대의 독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을 역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하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해서는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기술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교과서 체제와 구성 면에서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고교 학점제 운영에 맞춰 1학년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1, 『한국사』 2로 편성되어 운영되며,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 관련 내용은 주로 현대사를 다룬 『한국사』 2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배치된 독도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역사 교사가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교과서 구성에 따라서만 수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독도 교육은 한국사 교과교육에서는 등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재, 교과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식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7]

교육부는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2010년부터 마련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 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독도 교육을 포함시켜 2011년부터 개별 교과뿐만 아니라 범교과 학습으로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78]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독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도전시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등 독도 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2024년 1월 고시한 교육부의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에서도 '독도 교육 강화'라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기존에 실시했던 여러 교육 방안을 지속하고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79] 주요 개선 사항으로 크게 '학교

77 최보영, 2020, 앞의 글, 9쪽.

78 교육부는 매년 그간 독도 교육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독도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79 교육부(동북아역사대응팀), 2024.1, 「2024년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 교육 내실화', '독도체험관 활성화', '독도 교육 지원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각 개선 사항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80]

세 가지 개선 사항 중 독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독도 교육 지원 기반 구축'에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 언급한 '독도 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관련한 것이다. '독도 교육 역량 강화 연수'의 목적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원 및 독도체험관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이다. 연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대응 논리 및 자료를 제공하고, 동아리 활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독도 주제 탐구 및 울릉도, 독도 탐방 등 독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81]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82]

또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예비교사에 대한 독도 교육이다. 특히 '역사 교육으로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직 역사 교사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예비 역사 교사인 역사 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독도 교육과 관련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83]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고려한다면 초·중등 교육과정과 같이 독도 교육을 일률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하거나 실시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비 역사 교사로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독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독도 교육'이 대학에서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80 교육부, 2024, 위의 자료, 4쪽.

81 교육부, 2024, 앞의 자료, 11쪽.

82 이광현, 2020, 앞의 글, 93~94쪽.

83 심정보, 2020, 「한일 사회과 예비 교사들의 상대국 이미지와 독도 인식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 53~6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교육부, 2015.9,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교육부, 2018.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채 7】).

교육부, 2022.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4】).

노대환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도면회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

박중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송호정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신주백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최병택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최준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한철호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이익주 외, 2021,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강승호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미래엔.

김보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리베르스쿨.

노대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동아출판.

도면회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비상교육.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천재교육.

조한경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해냄에듀.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지학사.

신주백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1·2, 씨마스.

강승호, 2015, 「역사교육에서의 영토 교육 현황과 문제점-2011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57.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14(1).

_____, 2015,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관련 내용 비교」, 『독도연구』 19.

김화경, 2011,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4(2).

신주백, 2010,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13.

심정보, 2020, 「한일 사회과 예비 교사들의 상대국 이미지와 독도 인식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

_____, 2022, 「한국에서 독도 교육의 연구동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_____,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 영역의 개발과 독도 기술의 특징」, 『독도연구』 36.

안운호, 2024, 「고등학교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역사·지리 교과의 독도 교육 내용 반영 분석과 교수-학습 적용 방안 연구」, 『독도연구』 36.

이광현, 2020, 「우리나라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독도연구』 28.

이상일,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 분석-독도와 러일 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13.

전기석 외,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도 교육의 변화와 과제」, 『독도연구』 36.

최보영,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의 사료학습」, 『역사교육연구』 38.

_____, 2023, 「'독도 교육' 관련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독도연구』 35.

홍성근, 2021,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 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과 자료 등을 분석하여 개정 교과서로 독도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독도 관련 내용과 교육 방법의 적절성 혹은 문제점을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보완 방향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18 재개정 한국사 교육과정과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만을 비교해 본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이 한국사 교과서에 실제 어떻게 반영되어 집필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이 지난 교과서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술 내용과 제시 자료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검토했다. 한국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은 '역사 교육으로서 독도 교육'이라는 교육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독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과 구성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교과서 내용 면에서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독도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기술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과서 체제와 구성 면에서 『한국사』 2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배치된 독도 교육이 자칫 학교 수업에서 등한시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만큼 학교 교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며, 현직 역사 교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예비 역사 교사인 역사 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들도 독도 교육과 관련한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독도 교육, 역사 교육, 역사 교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Description of Dokdo and Dokdo Education in the 2022 Revised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Kim, Soyoung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and materials related to Dokdo described in the 2022 revised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It aime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r issues of Dokdo-related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from a historical education perspective when implementing Dokdo education using the revised textbooks,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nd effective educational approaches.

When comparing only the 2018 revised Korean History curriculum and the 2022 revised Korean History curriculum, the 2022 revision showed a tendency to reduce Dokdo-related content. However, analysis of how the new curriculum was actually reflected and written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revealed that the volume of Dokdo-related descriptions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textbook, nor were there major changes in the content described or the material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of Dokdo-related content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Korean history textbooks, the direction of Dokdo education within the Korean history subject was re-examined. Dokdo education in the Korean history subject needs to establish its educational 'identity' as 'Dokdo education as historical education'. Furthermore, to implement Dokdo education with this directionality, improvements and supplements are needed in the Dokdo-related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2022 revised Korean History textbook.

First, regarding textbook content, the history of Dokdo from pre-modern to the modern era should be described in a comprehensive manner, enabling understanding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 Second, regarding textbook structure and organization, the placement of Dokdo education in the very last unit of 『Korean History』 Vol. 2 risks it being neglected in classroom instruction.

Finally, for Dokdo education to thrive rather than be marginalized within the Korean history curriculum, the awareness and role of school teachers are as crucial as the textbook content. This requires not only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current history teachers but also equipping prospective history teachers—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istory education—with the necessary competencies related to Dokdo educ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ywords
2022 Revised Curriculum,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Dokdo Education, History Education, History Teache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소개

- **조길부 · 우루시자키 히데유키 · 죽도=독도문제연구넷** | 최신 연구로 본 '독도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6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자료소개

최신 연구로 본 '독도 문제'

조길부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
죽도 = 독도문제연구넷

I. 제2장 에도 시대의 독도

II. 제3장 근대의 독도

* 편집자 주: 일본의 시민단체인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2023년에 제작한 DVD 자료집에서 '제2장 에도 시대의 독도', '제3장 근대의 독도' 관련 내용을 발췌 번역하여 편집한 자료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제2장 에도 시대의 독도

1. 최신 연구로 본 '독도 문제' 제2장

1. 확실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주장의 진위를 판별합시다.

2. 에도 시대의 독도

1. 시리즈 제2장은 '에도 시대의 독도'입니다. 이번에는 연구자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 등도 검토합니다.

3. 송도(松島, 마쓰시마)의 등장

1. 17세기 중반이 되어 '송도'가 일본 기록에 등장합니다.
2. 에도 시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쓰시마)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킵니다. 한편, 이 시리즈에서 단순히 '다케시마(竹島)'라고 '다케(竹)'에 악센트를 두고 발음할 때는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송도가 오늘날의 독도이며, 죽도는 울릉도입니다.
3. 송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50년경 요나고(米子)의 상인 이시이가 오야가(大谷家)에 보냈던 서신입니다. 그 무렵 죽도에서 바다사자가 격감했기 때문에 관계자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다사자의 자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이시이는 화면에 보이는 서신에서 "송도로 7, 80석 정도의 작은 배를 보내 철포로 바다사자를 쏘면, 작은 섬이므로 바다사자는 죽도 쪽으로 도망가 죽도에서의 수확이 늘어날 것이라고 무라카와(村川)가 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5. 무라카와가(家)는 이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인지 1657년에 송도로 도해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착안하지 못하고 파손해서 큰 손해를 입었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다. 그래도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1660년 무렵부터 죽도에서도 어떻게든 바다사자잡이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일본의 경계를 둘러싼 한일 논쟁

1. 송도로의 도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오키섬을 관할하는 군다이(郡代), 즉 군수 대리인 사이토 도요노부(斎藤豊宣)는 1667년 화면에 보이는 견문록 『은주시청합기』를 편찬했습니다. 은주(隱州, 온슈)란 오키국을 말합니다.
2. 이 고문서에 일본 서북의 한계가 적혀 있는데, 이 기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는 1950년대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이토는 먼저 은주 주변에 있는 각 지명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쪽에는 운주(雲州, 운슈)의 미호노세키가 있다고 썼습니다.
4. 서북에 대해서는 "이틀을 가면 송도가, 하루를 더 가면 죽도, 흔히 말하는 기죽도가 있으며 두 섬은 무인도이다.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즉 한반도를 보는 것은 이즈모에서 오키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썼습니다.
5. 게다가 사이토는 일본의 서북쪽 땅은 '이 주'가 경계라고 썼습니다.
6.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의 고문인 역사 연구자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씨의 견해에 따라 '이 주'라는 문자를 '이 섬'이라고 읽고 '이 섬'은 죽도와 송도이므로 두 섬이 일본 서북의 경계라고 한국 정부에 주장했습니다.
7. 한국 정부는 이는 오독이며 일본의 경계는 '이 주', 즉 은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박하지 않고 한국의 주장을 묵인했습니다.

5. '이 주'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

1. 일본 정부의 묵인으로 '이 주'에 관한 해석은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었는데 일본 국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 시마네현(島根縣)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도 '이 주'를 '이 섬'이라고 읽었는데, 그는 다가와 씨와는 달리 '이 섬'은 죽도이며, 죽도·송도 두 섬이 아니라고 화면에 보이는 저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죽도가 일본 서북의 경계가 됩니다.
3. 이에 대해 나고야대학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교수는『은주시청합기』에서 '주'라는 한자가 사용된 문맥이나 용법을 모두 조사해서 '이 주'는 은주를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 고문서의 제2권에 '은주가 서북의 극지'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4. 게다가 이케우치 교수는 같은 시대의 문헌『은기고기(隱岐古記)』등이 '이 주'를 '이 나라', 즉 '이 지방'으로 바꾸어 인용했으므로 에도 시대의 연구자도 '이 주'를 '온슈(은주)'라고 읽었다, 따라서 오키국을 일본 서북의 경계라고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한편 시모조 좌장의 설을 지지했던 시마네대학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명예교수는 두 연구자의 논쟁을 보고 이케우치 교수의 설에 찬동하게 되어 '이 주'는 은주를 가리킨다고 자신의 주장을 바꿨습니다.
6. 현재 시모조의 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으며 이케우치 교수의 견해가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7. 따라서 오키국을 관할하는 군다이는 죽도와 송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6. 외무성의 고유영토론

1. 외무성은 독도 문제에 관한 팸플릿을 2008년에 발행했고, 2014년에는 거기에 Q&A를 덧붙인,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은 팸플릿을 발행했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다.

2. 팸플릿은 먼저 "죽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3.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 1618년, 일설에서는 1625년, 돗토리번(鳥取藩) 요나고의 주민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돗토리 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로의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 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했다.
5. 이 기간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죽도는 항행의 목표지점이자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바다사자와 전복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6. 이리하여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외무성은 주장합니다.

7. 외무성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반응

1. 먼저 외무성의 견해에 대한 연구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독도가 울릉도에 건너갈 때의 정박지로서 혹은 어획의 적지(適地)로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3.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의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고문도 민간인에 의한 단순한 섬의 이용만으로는 국가로서의 영유 권원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4. 중요한 것은 국가가, 바꿔 말하면 에도 막부가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팸플릿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5. 한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마사오 좌장은 독도는 20세기 초까지 '무주의 땅', 즉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

다. 즉 독도는 일본 영토도 아니었다는 견해로, 외무성이 말하는 17세기 이래의 고유영토설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6. 다음으로 나고야대학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는 반대로 일본은 17세기 말에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외무성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7. 이처럼 외무성이 주장하는 17세기 이래의 '고유영토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8.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가 던진 의문

1. 외무성의 팸플릿에 대해 근세 일본사 전문가인 이케우치 교수는 그 오류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지적은 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케우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 첫째, 막부가 도해면허를 교부한 것은 죽도에 대해서이지 송도가 아니다. 또한 송도는 죽도로 항행할 때 목표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든가, 바다사자잡이가 조금씩 행해졌다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둘째, 외무성은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지만 왜 17세기 중반인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5. 한편 송도에서 본격적인 어업이 행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섬에서는 배를 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배로 항행해 그 배를 돌이나 바위투성이의 좁은 평지로 끌어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섬에는 땔감이나 물이 거의 없어 목적으로 하는 바다사자 기름을 소량밖에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본격적인 어업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고유영토론의 주축 기둥 '송도 도해면허'설

1. 이케우치 교수는 왜 외무성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지지하지 않는 17세기 이래의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지, 그 배경을 궁구했습니다.
2. 이케우치 교수는 외무성 견해의 근거가 된 자료로서 1950년대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낸 구상서를 찾아냈습니다.
3.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논쟁했으며, 화면처럼 10년 이상에 걸쳐 구상서를 각각 네 번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영유의 근거를 각각 밝혔습니다.
4. 1956년 「일본 정부 견해 3」은 요나고의 어민인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1656년 이전 막부에서 죽도의 경우처럼 송도로의 도해면허를 받아 송도에서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송도도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송도 도해면허'설을 고유영토론의 '주축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10. '송도 도해면허'설의 근거

1. 일본 정부가 '송도 도해면허'설의 근거로 한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오야가가 작성했던 「죽도 도해 유래기 발서」입니다.
2. 이에 따르면 오야가가 1681년 막부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 님 알선으로 막부로부터 송도를 배령(拝領)하고 바다사자 기름을 조금씩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어업에 적합하지 않은 송도에서도 바다사자잡이를 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650년대에 죽도의 바다사자가 격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 무라카와가는 어쩔 수 없이 송도에서 시험적으로 바다사자잡이를 시작하려 했는데 섬 주변에 있는 암초 때문에 배가 파손되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5. 무라카와가의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송도는 결코 항해 도중의 정박지로 이용할 수 있는 섬이 아니며, 육지에 인양 가능한 작은 배 외에는 다가가기가 위험한 섬이었습니다.
6. 이 때문에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7, 80석 정도의 작은 배로 1660년경부터 송도에도 도항해서 바다사자잡이를 조금씩 했습니다.

11. '송도 도해면허'설의 보완

1. 오야가가 송도를 배령했다고 하지만 상인이 막부로부터 토지를 배령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없습니다.
2. 이렇듯 오야가의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도해면허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외무성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사무관은 오야가의 사료를 반 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3. 그렇게 해서 찾아낸 자료가 막부의 관료인 아베 시로고로의 가신 가메야마가 오야 앞으로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4. 이 자료에, "내년부터 죽도 안의 송도에 오야가의 배가 건너간다는 것에 대해 작년에 아베 시로고로가 로주(老中)의 '내의'를 얻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 이 자료로써 가와카미 사무관은 화면에 보이는 저서에서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1660년 무렵 송도 도해면허를 받아 막부의 정식 승인 아래 송도에 도해했다고 주장하며 '송도 도해면허'설을 보완했습니다.

12. 사라진 '주축 기둥의 주장'

1.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론의 '주축 기둥'으로 삼았던 '송도 도해면허'설에 대해 쓰카모토 고문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송도 도해면허는 현물이나 필사본이 남아 있지 않은 데다가 면허를 직접 언급한 자료조차 없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 일본 정부의 '송도 도해면허'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송도 도해면허'설을 철회했는지 최근 수십 년간 이 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한편 쓰카모토 고문은 고유영토설의 '주축 기둥'이 없어지면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도해면허'설 대신 '막부 공인'설을 화면에 보이는 서적에서 주장했습니다.
4.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앞의 가메야마 서신을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5. 쓰카모토 고문은 가메야마 서신에,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라고 했으므로 기록상 1661년 이후는 오늘날의 죽도에 대해서도 막부의 공인하에 도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쓰카모토–이케우치 논쟁

1. 쓰카모토 고문이 주장한 송도 도해허가설을 이케우치 교수가 엄격히 비판했습니다.
2. 이케우치 교수는 외무성의 가와카미 사무관조차 아베 시로고로는 로주의 내의를 확인하는 일까지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주의 내의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름도 분명하지 않은 로주 아무개의 '내의'를 '막부의 허가'로 삼는다는 것은 폭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게다가 이케우치 교수는 송도 도해에 대한 막부의 공식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쓰카모토 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4. 이렇게 쓰카모토 고문은 엄격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반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5. 원래 막부의 관리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송도에 대해 '죽도 안의 송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말할 쓰시마번(對馬藩)처럼 '죽도 근처 송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6. 즉 송도는 죽도에 부속된 섬, 또는 죽도와 한 쌍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도로의 도해면허만 있으면 송도로 도해해도 무방했으며, 면허도 허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7. 한편 에도 시대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쓰카모토 고문과 이케우치 교수 사이에 화면에 보이듯이 많은 문제에서 큰 견해차가 있습니다. 최근 이케우치 교수에 대한 쓰카모토 고문의 반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4. '제2의 기둥': 도해금지령의 해석

1.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론의 '제2의 기둥'으로 삼은 것이 원록(元禄, 겐로쿠) 시대의 죽도 도해금지령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2. 원래 죽도 도해금지령은 이 시리즈의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죽도 일건'의 결과 1696년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 도해를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3. 이 금지령 자체는 송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4. 거기에 주목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보낸 「일본 정부 견해 4」 등에서 송도로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 주장이 고유영토론의 '제2의 기둥'입니다만, 이것만은 지금도 외무성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제2의 기둥'에 대한 반론

1. 고유영토론의 '제2의 기둥'에 대해 이케우치 교수는 송도로의 도해는, 죽도 도해금지령의 문면에는 없어도 사실상 금지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2. 우선 돗토리번은 막부의 질문에 대해 죽도와 송도는 이나바국이나 호키국 소속이 아니다, 즉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3. 게다가 돗토리 번주는 막부의 추가 질문에 대해 송도는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회답했다.
4. 막부가 이 회답에 근거하여 죽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그 금지령의 문면에 송도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송도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케우치 교수는 외무성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5. 이러한 답변은 화면에 보이는 자료, 돗토리번의 『죽도지서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의 새 자료 발굴

1. 이케우치 교수는 1740년대 지샤(寺社)봉행도 원록 연간의 죽도 도해금지령을 '죽도·송도 두 섬에 대한 도해금지령'으로 해석했음을 드러내는 무라카와가의 문서를 반론의 근거에 추가했습니다.
2. 그 문서에 따르면, 뛰어난 판관으로 이름난 오오카 에치젠노카미(大岡越前守) 등 지샤봉행 전원은 죽도 도해금지령으로 인해 궁지에 빠진 오야가의 호소를 처리할 때 죽도 도해금지령을 '죽도·송도 양 도 도해금지령'으로 해석했습니다.
3. 지샤봉행은 사찰이나 신사 등을 관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부의 3대 부교의 필두로서 막부의 최고사법기관인 평정소를 주도하는 관직입니다. 막부에서 지샤봉행은 로주 다음가는 중직이므로 지샤봉행들의 일치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4. 이들 자료에서 이케우치 교수는 원록 죽도 도해금지령에 의거하여 일본이 17세기 말에 오늘날의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금지령이 일본의 첫 번째 독도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러한 이케우치 교수의 연구로 고유영토론의 '제2의 기둥'인 외무성의 주장도 무너졌습니다. 원래 막부는 '죽도 일건'이 일어날 때까지 송도를 거의 몰랐으며 영유 의사도 없었습니다.
6. 한편, 당초부터 송도와도 관련되어 있던 돗토리번은 송도는 돗토리번에도, 일본의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송도가 일본의 영토일 리가 없습니다.

17. '제3의 기둥', 천보(天保, 덴포) 죽도 일건의 인용

1.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론의 '제3의 기둥'으로 삼은 것이 '천보(天保) 죽도 일건'에서의 막부 평정소의 판결문입니다.
2. '천보 죽도 일건'이란 이 시리즈 제1장에서 다룬 것처럼 죽도에 밀항해 벌목하고 일본에서 팔았던 하마다번 상인 하치에몬 등을 1836년에 처형한 사건입니다. 이듬해 막부는 죽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게시판을 방방곡곡에 세웠습니다.
3.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에는, "위에 가장 가까운 송도에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죽도로 건너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위'는 죽도를 가리킵니다.
4. 이 판결문에 주목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 견해 3」에서 죽도로의 도항은 금지되었으나 송도를 명목으로 하는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천보 시대에도 송도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일본 정부의 '제3의 기둥'입니다.
5. 보통 죽도로의 도항이 금지되면 이와 가장 가까운 송도로의 도항도 금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앞의 지샤봉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오야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8. '제3의 기둥'의 붕괴

1. 이케우치 교수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제3의 기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2. 쓰시마번은 죽도와 송도의 소속 등을 확인하려는 막부의 질문에 대해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으며, 송도에도 일본 어민들이 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록 시대에 죽도와 마찬가지로 송도도 일본인의 도해가 금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지도에 울릉과 우산 두 섬이 있으므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답했다.
3. 이 회답을 바탕으로 막부는 죽도 도해금지령을 공포했다.
4. 이케우치 교수는 이 금지령이 원록 죽도 도해금지령도 언급하고 있고, 이를 계승한 이상 송도로의 도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5. 이와 같이 이케우치 교수는 일본은 천보 죽도 도해금지령으로 두 번째로 독도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 만약 이 금지령 후에 오야가 등이 송도 단독에 대한 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부는 쓰시마번의 정보에 따라 송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도 도해면허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7. 이렇게 해서 고유영토론의 '제3의 기둥'도 붕괴합니다. 이 때문인지 그 후 일본 외무성은 '제3의 기둥'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19. 고유영토론에 대한 정리

0.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합니다.

1.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주축 기둥은 송도 도해면허인데 그 면허는 사본조차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언급한 문헌자료도 없습니다. 이 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부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외무성은 이 설을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다음 '제2의 기둥'은, '원록 죽도 도해금지령'으로 송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영토였다는 설입니다.
3. 그러나 막부는 '원록 죽도 일건'이 일어날 때까지 송도를 거의 몰랐고 영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돗토리번에 문의한 결과, 송도는 일본의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제2의 기둥'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마지막 '제3의 기둥'은 천보기에 송도를 명목으로 하는 도해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영토였다고 하는 설입니다.
5. 그러나 천보 죽도 도해금지령은 원록기의 금지령을 근거로 하고 있고, 오사카마치 봉행소나 평정소 관계자들도 송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6.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설은 성립되지 않으며, 그 후 외무성은 이 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가 주장한 고유영토론의 3개 기둥은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20. 일본 외무성 팸플릿의 문제점

1. 외무성 팸플릿은 독도를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대신 일본이 예로부터 독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그 예로서 팸플릿은 본문에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79년의 초판을 소개했습니다.
3. 그러나 삽화에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지도가 아니라 세키스이가 죽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45년 후인 1846년에 만들어진 해적판 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실었습니다.

4. 여기서 말하는 해적판이란 당국의 포고를 어기고 출판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즉 누가 출판했는지 알 수 없는 출판물을 말합니다.
5. 외무성은 왜 본문에서 설명한 정규 지도가 아니라 굳이 해적판 지도를 삽화로 이용했을까요?
6. 해적판 지도를 보면, 죽도와 송도 주변에도 경도와 위도선이 그어져 있고 오키섬 등과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채색되었습니다.
7. 이 해적판을 보면 죽도와 송도가 일본 영토로 그려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무성은 일부러 해적판의 지도를 선택해서 팸플릿 등에 채용한 것일까요?

21. 세키스이의 정규 지도

1. 외무성이 팸플릿 본문에서 소개한 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초판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이 지도는 출판자 등이 왼쪽 아래에 기재되었으므로 해적판이 아니라 정규판입니다.
2. 정규판 지도에는 죽도와 송도의 주변에 경도와 위도선이 없습니다. 또한 두 섬은 오키섬과는 달리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채색되지 않았습니다.
3. 이 때문에 죽도와 송도는 일본 영토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연구자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최근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는 이 지도에서 죽도와 송도는 일본도 아니고 이국(異國)도 아니다, 혹은 일본이자 이국이기도 한 '경계 영역'으로 그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죽도와 송도의 소속은 모호하게 그려졌다는 주장입니다.
5. 한편 죽도와 송도 옆에 한문이 쓰여 있는데 이 의미는 "한반도를 보는 것은 이즈모에서 오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

이토 도요노부의 『은주시청합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6. 사이토는 오키국을 일본의 서북쪽 경계로 보고 죽도와 송도를 이국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인식을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7. 게다가 이 한문은 외무성이 사용한 해적판에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지도에서도 죽도와 송도를 일체로 취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합니다.

22. 나이토 교수의 외무성 팸플릿 비판

1. 외무성의 팸플릿에 대해 나이토 교수는 화면에 보이는 저서에서, "이것은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2. 과거의 역사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역사의 일부를 편의주의에 입각한 안주감으로 삼는 한편,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3. 나는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으로서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다. 죽도(竹島)=독도 문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명확해진다.
4. 나는 이 오류투성이의 외무성 팸플릿에 휘둘려 일본 국민이 망신당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23.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것으로 제2장이 끝납니다.
2. 다음 시리즈 제3장은 '근대의 독도'입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큰 전기를 맞이합니다.
3. 이 동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은 화면에 보이는 '죽도(竹島)=독도 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 연구넷'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기다립니다. 보내 주신 메일은 공개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제3장 근대의 독도

1. 최신 연구로 본 '독도 문제', 제3장

1. 확실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주장의 진위를 판별합시다.

2. 근대의 독도

1. 이 시리즈 제3장은 '근대의 독도'입니다.
2. 시대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3. 이번에는 메이지 정부의 사료 해석을 둘러싼 연구자 간의 격렬한 논쟁도 검증합니다.

3. 메이지 정부의 죽도·송도 조사

1. 메이지 시대가 되자 그때까지 쓰시마번이 수행하고 있던 조선과의 외교를 일본 정부가 직접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2A. 그러나 이런 전환에 조선 정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무성은 여러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1869년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을 한국의 부산에 있는 왜관에 파견했습니다.

2B. 왜관은 한때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인이 체재한 데지마처럼 특별히 체재가 허가된 일본인 거주 구역입니다.

3. 모리야마 등은 조선의 실상이나 군비, 쓰시마번과 조선과의 교제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부성이 특별히 의뢰한 죽도 조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보고서 「죽도 일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훗날 민부성은 대장성, 이어 내무성에 흡수되었습니다.
4. 한편 이 시리즈에서 단순히 죽도라고 하면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바와 같이 울릉도를 가리키며, 송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킵니다.
5. 조사 보고서 「죽도 일건」은 '원록 죽도 일건'으로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한 경위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6. 모리야마 등은 종합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죽도와 송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7. 모리야마 등은 송도가 죽도 옆의 섬이라는 것과 송도에 대해 적은 기록이 없다, 즉 송도를 일본 영토로 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 송도는 조선 영토라고 판단했습니다.

4. 내무성의 죽도·송도 조사

1. 메이지 시대 초기 내무성 지지과는 일본 지지를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옛날 나라 시대에 각지의 풍토기를 작성한 사업에 이어 천년만의 본격적인 편찬이었습니다.
2. 지지과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죽도와 송도의 소속이나 역사 등도 조사하고, 1875년 그 결과를 화면에 보이는 『기죽도 각서』에 기록했습니다. 기죽도는 죽도의 별명으로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3. 『기죽도 각서』는 쓰시마번의 사료를 인용하여, 원록 시대의 '죽도 일건' 당시 쓰시마번이 조선에 죽도로의 도해 금지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조선의 죽도 영유를 인정하게 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4. 또한 돗토리번의 사료를 인용하여, 원록 시대의 '죽도 일건' 당시 돗토리번이 막부의 질문에 대해 죽도와 송도는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한 내용, 송도는 일본의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한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5. 이 직후 지지과는 내무성에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으로 이전했습니다.
6. 태정관은 메이지 초년에 행정·사법·입법에 관해 모든 권한을 가지는 최고국가기관으로서 설치되었습니다.

5. 태정관지령의 죽도·송도

1. 1876년 내무성은 전국의 지적을 편찬하는 일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 내무성 지리료는 시마네현에 대해 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죽도를 조사해 내무성에 문의서를 제출하도록 조회했습니다.
3. 시마네현은 죽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송도에 대해서도 역사나 연혁 등을 조사하고, 내무성에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 문의」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의서에는 지도 〈기죽도 약도〉를 첨부했습니다.
4. 이 지도에서 죽도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죽도, 즉 오늘날의 독도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를 부정하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5. 내무성은 시마네현의 자료 외에도 '원록 죽도 일건'의 기록 등도 조사하고, 죽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6. 그러나 영토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신중히 태정관에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 문의」를 제출하여 재가를 구했습니다.
7. 1877년, 메이지 10년 태정관은 내무성의 문의를 인정하고, 죽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습니다.
8.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태정관과 시마네현의 송도 인식

1. 이 중요한 태정관지령 관계 자료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로 '죽도 외 일도'를 입력하면 화면에 보이는 표시가 나타나므로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선명한 두 가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 특히 두 번째 기록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를 판도(版圖) 외로 한다"는 태정관지령은 일본 연구자 간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이 자료를 보면, 태정관이 시마네현의 문의서에서 송도에 관한 기록을 필사하여, "다음에 일도가 있다. 송도라고 부른다. 둘레는 30정 정도이다. 죽도와 같은 항로에 있다. …"라고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태정관과 시마네현의 송도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당시의 태정관에는 내무성 지지과가 이전한 상태였으며, 『기죽도 각서』 등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5. 따라서 태정관은 송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지령을 내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7. '죽도 외 일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1. 호리 가즈오(掘和生) 교수를 비롯하여 화면에 보이는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당초' 쓰카모토 다카시 고문 등은 태정관지령의 '죽도 외 일도'는 울릉도와 송도, 즉 오늘날의 독도라고 판단했습니다.
2. 한편 시모조 마사오 좌장은 '죽도 외 일도'에 대해 처음에는 "외 일도가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가 생각을 바꾸어 죽도는 울릉도, '외 일도'는 송도, 즉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거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화면에 보이듯이 자주 생각을 바꾸어 정설이 없습니다.
3. 또 '최근' 쓰카모토 고문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죽도 외 일도'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죽도와 송도라는 것과 죽도가 울릉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송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시마네현과 정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즉, 시마네현은 송도를 오늘날의 독도로 보았으나, 내무성이나 태정관은 송도를 울릉도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그 이유는 내무성이 문의서에서 송도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내무성은 송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외국 지도의 영향을 받아 송도를 울릉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6. 이에 대해 이케우치 교수는 내무성은 『기죽도 각서』를 편찬했으므로 죽도·송도의 위치나 소속 등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지도 등으로 혼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8. 이케우치 교수의 엄격한 쓰카모토 고문 비판

1. 이케우치 교수는 쓰카모토 고문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비판했습니다.
2. 내무성의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 지적 편찬 문의」 관계 사료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태정관은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여겼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여러 이유를 붙여 부정하는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 1877년 일련의 자료는 오독의 여지가 전혀 없는 평이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곡해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논증'에는 필사의 노력이 전해진다.
4. 쓰카모토 고문은 자신의 논증 과정이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은 사료의 자의적인 잘라내기와 밀어붙이기로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 낸 것에 불과하다.
5. 이러한 '논증'은 학문적인 영위가 아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가져올 뿐이다. 예를 들어 죽도와 송도를 혼동하고 있는 4년 후의 자료를 꺼내는 것 등이다.
6. 이처럼 학문적이지 않다고 엄격한 비판을 받은 쓰카모토 고문입니다

만 그로부터 7년 지난 지금도 본격적인 반론이 없습니다.

7. 게다가 이케우치 교수는 태정관지령은 막부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한 세 번째 사료라고 강조했습니다.

9. 일본 정부의 대응

1.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태정관지령에 대한 견해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그 이유는 화면에 보이는 관보에 따르면, 견해를 밝히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히 사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즉 외무성이 태정관지령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한국과의 영토교섭에 영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4. 이에 대해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한국과 불화하여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황을 분석하여 일본 정부에 충고했습니다.
5.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할 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듯합니다.
6. 메이지 시대 태정관지령으로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역사적 사실에 따라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는 17세기 이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전면적으로 부정됩니다.

10. 관계 당국의 독도 취급

1. 태정관지령을 전후해서 메이지 정부의 관계 당국이 독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토를 판단하는 내무성은 지도첩 「대일본국 전도」를 1883년에 발행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이 지도첩은 1871년부터 1883년까지 각 연도의 지도를 싣고 있으므로 치시마 열도 등 일본 영토의 변화 등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어느 연도의 지도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내무성이 일관되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 다음은 일본 주변의 섬들을 잘 아는 수로부인데, 일본 관계의 해도나 수로지 등에 독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해도 〈조선 전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관계의 해도나 수로지에만 독도를 '리앙코루도암'이라는 이름으로 기재했습니다.
4. 덧붙여 화면의 〈조선 전안〉에서 수로부는 울릉도를 송도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영국의 해도나 수로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외무성인데, 1870년대 말 외무성에 신청된 많은 '송도 개척 원서'를 계기로 외무성은 죽도와 송도의 이름이나 위치, 소속 등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6. 이 때문에 1881년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고문서나 『기죽도 각서』 등을 조사하고 개척 원서에서 말하는 송도가 원록 시대에 일본이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죽도, 즉 울릉도임을 밝힌 뒤에 조사 보고서 『죽도 고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로써 혼란이 진정되었습니다.
7. 그 후 외무성은 세계 각국과의 통상을 소개하는 자료, 『통상휘찬』을 발행했는데, 1902년도판은 「한국 울릉도 사정」에서 울릉도의 동쪽 50해리에 리양코섬이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외무성은 리양코섬을 한국 영토로 본 것입니다.
8. 이처럼 메이지 정부의 관계 당국은 리양코섬을 일본 영토로 보지 않고 한국 영토로 보았습니다.

11. 바다사자잡이와 러일전쟁

1. 1880년 무렵 무인도였던 울릉도에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이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 일단 철수

했지만, 한국인들은 개척을 위해 거주가 허가되었습니다.

2. 일본인들은 1900년 무렵에도 다시 울릉도에 침입했습니다. 이때는 울릉도로의 항행 도중에 있는 리양코섬의 바다사자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3. 그러던 사이 시마네현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1903년 리양코섬에서 바다사자잡이를 시도했습니다.
4. 이듬해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바다사자 가죽이 소가죽 대용으로 수요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러자 바다사자잡이의 과당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5. 나카이는 제1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다사자잡이의 독점을 도모하여, 리양코섬의 임대 신청을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제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수로부장으로부터 리양코섬은 무주지라고 들은 뒤에는 내무성 등에 '리양코섬 영토편입 및 임대 신청'을 1904년 가을에 제출했습니다.
6. 내무성은 일찍이 태정관으로부터 죽도와 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리양코섬은 "한국 영지로 의심된다"라며 나카이의 신청을 각하하려 했습니다.
7. 포기하지 못한 나카이는 외무부 야마자 정무국장에게 청원했고, 야마자는 리양코섬의 군사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런 시국이야말로"라고 말해 나카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2. 러일전쟁이라는 시국

1. 외무성 야마자 국장이 말하는 시국이란 러일전쟁을 말합니다.
2. 1904년 2월 일본 해군이 청국의 뤼순(旅順)항을 기지로 하는 러시아 해군을 기습 공격하여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는 화면에 보이는 빨간 선처럼 6월에 제4차 출격을 하고, 쓰시마 앞바다에서 일본의 대형 수송선 이즈미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루나 히타치마루 등을 격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가미무라 함대는 즉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추적했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놓쳤습니다.

4. 이 때문에 해군은 세간의 '농무'라는 말을 비꼬아 '무능'이라고 하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양코섬에 집결한 다음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훗날 드러났습니다.
5.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엄청나, 많은 병사 그리고 뤼순의 요새를 공격하는 특대형 대포 등이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뤼순 함락이 반년이나 더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뤼순에서는 노기 장군이 무리한 돌격을 반복했기에 너무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는 7월에는 화면의 녹색 선처럼 제6차 출격을 해서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여 시즈오카 앞바다에서 도쿄만 근처로 출격해서 7척을 격침하는 등 맹위를 떨쳤습니다. 귀로도 쓰가루 해협을 유유히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이 일본 해군이나 쓰가루 해협의 양쪽 해안으로부터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7. 화면에 보이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항로를 보더라도 울릉도와 리양코섬 주변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13. 해군에 대한 비난 쇄도

1.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놓치거나 방치한 일본 해군에게 맹렬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근본적인 결함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체제를 구비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2. 그러므로 일본 해군은 서둘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일 간 바다의 감시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3. 일본 해군은 쓰시마와 리양코섬 근처를 연결하는 라인을 동쪽의 중앙 간선으로 정했습니다. 그 종점 근처에 있는 리양코섬과 울릉도가 특히 중요했고, 적함을 감시하는 망루 설치가 필수적이었으며, 적에게 도청 받지 않을 연락 수단으로 해저 전선을 부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때마침 이러한 계획을 세우던 와중에 나카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나카이가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외무성 야마자 국장은, "이런 시국이야말로 영토 편입이 시급하다. 망루를 건설하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한다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나카이의 신청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14. 망루와 해저 전선

1. 한국은 러일전쟁의 발발을 예상해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서구 국가들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1904년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해 한국 정부에 군사적인 협력을 억지로 약속하게 했습니다.
2.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1904년 가을 울릉도에 망루를 2개소에 설치하고, 섬과 한국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전선을 부설했습니다.
3. 이 공사를 군함 니타카가 호위했습니다. 니타카 승무원은 맑은 추분날 무렵 울릉도의 남쪽망루에서 리양코섬을 망원경으로 보고, 화면과 같은 스케치를 「군함 니타카 행동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4. 또한, 승무원은 울릉도 거주자로부터 들은 정보로서 리앙코루도암을 한국인이 독도(獨島)라고 쓴다는 사실, 일본인 어부들은 리양코섬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울릉도에서 리양코섬으로 바다사자잡이를 위해 매번 4~5일 출어하고 있다는 사실, 지난 6월에는 러시아 군함 3척이 집결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이 일지에 기록된 독도라는 이름은 기록상으로는 처음 등장하는 명칭입니다.
6. 다음해 1905년 5월 말 일본 해군은 쓰시마 앞바다에서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러시아 군함 수 척은 리양코섬 부근으로 도망쳤지만, 다음날 일본 해군에게 붙잡혔습니다.
7. 이러한 군사 정세로 인해 리양코섬의 군사적 중요성을 더욱 확신한 일본 해군은 리양코섬에도 망루를 세우고 해저 전선을 부설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유지 관리가 번거롭고 또 러시아 함대의 위협도 사라졌기 때문에 전선은 망루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5. 오키섬 앞바다의 '무인도' 편입

1. 내무성은 한때 나카이의 리양코섬 편입 신청을 거부했지만, 외무성에서 강한 요청이 있었는지 결국 그 방침을 역전시켰습니다.
2. 방침을 전환했다는 인상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섬의 편입을 추진할 때 섬 이름을 본래의 '리양코섬'을 피하고, '오키섬 앞바다의 무인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3. 내무성이 편입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이 '무인도'를 타국이 점령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내무성은 시마네현에 이 무인도에 이름을 붙일 것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시마네현은 오키 도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죽도(竹島)'라는 이름이 적절하다고 회답했습니다.
5. 오키 도사는 섬사람들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송도로 불러야 하고, 이번에 편입하는 무인도의 이름은 옛날에는 죽도·송도라는 한 쌍으로 호칭했으므로 '죽도'가 적당하다고 회답했습니다. 이때 오키 도사는 도사이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울릉도의 옛날 이름은 섬사람들이 말하듯이 죽도였습니다.
6. 1905년 1월에 열린 내각회의는 내무성의 신청에 관해 나카이가 무인

도에 이주해 어업을 행한 것은 국제법상 점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인도를 죽도라고 명명해 일본 영토로의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7. 이와 같이 메이지 정부는 관계 당국자 아무도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인도, 즉 리양코섬을 그 이름을 숨긴 채 무주지 선점이라는 명분으로 편입했습니다.

16. '무인도'는 무주지였는가?

1. 다음 문제는 내각회의 결정문에서 말하는 '무인도', 즉 리양코섬이 무주지였는지 여부입니다.
2. 내무성은 리양코섬은 한국 영지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선 정부는 이 시리즈 제1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이 섬에 대해 20세기까지 영유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 예를 들어 1908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문헌은 18세기의 『동국문헌비고』를 이어받았는데, 그 당시의 송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킵니다.
4. 조선 정부는 해적 등을 경계하여 울릉도 등지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3년마다 울릉도를 조사하는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5. 1881년에도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울릉도에서 느티나무 등을 도벌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발견하였고, 조선 정부는 일본에 항의했습니다. 누차 항의를 받은 일본 정부는 그들을 퇴거시켰습니다.
6. 한편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침입한 한국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반대로 일본인들의 침입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인들의 거주를 인정하는 등 섬의 개척을 1883년에 시작했습니다.
7. 이윽고 울릉도에서 리양코섬에 출어하는 어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의 1902년의 보고서나 앞에서 언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군함 니타카 행동 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 칙령 41호와 석도

1. 울릉도 개척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한국 정부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는 칙령 41호를 공포했습니다.
2. 덧붙여 조선은 1897년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줄여 한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 한국은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했습니다. 죽도(대섬)는 한자로 '竹島'라고 쓰고 문자 그대로 '대나무섬'을 의미합니다.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 2㎞에 있는데 일본에서는 죽도(竹嶼, 치쿠쇼)라고 부르며, 오늘날의 독도와는 다른 섬입니다.
4. 한편 한자로 '石島(석도)'라고 기록된 섬의 호칭은, 영유권 문제의 핵심에 관련되므로 여기서는 우선 일본어의 훈독으로 '석도(이시지마)'라고 부르겠습니다.
4. 칙령 41호의 의의에 대해 시모조 마사오 좌장은, "석도가 한국 측 주장대로 독도라면,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한국 측 주장대로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5. 시모조 좌장은 당초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후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장을 바꾸었으며 여기에서도 정설이 없습니다.
6. 특히 그는 네 번째 주장에서 석도는 쌍항초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쌍정초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쌍정초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암초로 섬이 아니므로 석도일 수가 없습니다.

18. 석도는 어디인가?

1. 칙령 41호에 기록된 석도를 많은 연구자들은 독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교수, 나이토 세이추 교수,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박사,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박사,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씨 등입니다.
2. 또한 쓰카모토 다카시 고문도 당초는 석도를 독도로 보고,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해서 시마네현 관할로 한 1905년 이전 한국은 석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정한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쓰카모토 고문은 견해를 바꾸어 "석도를 독도로 보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해, 석도가 어디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견해를 바꾼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본래 연구자가 자기의 견해를 바꿨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쓰카모토 고문이나 앞의 시모조 좌장은 그러한 기본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5. 한편, 외무성의 팸플릿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은 한국의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하지만, 석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9. 뜻밖의 견해

1. 시마네대학 후나스기 리키노부(舟杉力修) 준교수는 관광유람선을 타고 울릉도를 일주하여 석도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2. 그 결과에 대해 후나스기 준교수는, "현지를 조사한 결과 섬은 치쿠쇼, 관음도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또 섬과 바위는 외관상으로도 명확히 구별되었다. 울릉도 주변에서는 섬과 바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도는 관음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본래 석도는 역사상 어느 시기에만 등장한 이름이므로 현재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역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후나스기 준교수의 주장은 그러한 검증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4. 한편,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는 당초에는 석도를 독도로 보는 설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유론(謬論), 즉 잘못된 논설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칙령 41호의 석도는 독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으로 극적으로 바뀌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5. 그 이유는 한국 정부 등이 주장하는 석도의 음운 변화설에 객관적이고 문헌적인 방증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 석도의 음운 변화설

1. 울릉도의 초기 주민은 1882년 조사에 따르면, 전라도의 거문도 등 바닷가 사람들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울릉도를 왕복했습니다.
2. 독도는 문헌에서는 우산도로 기록되었는데 울릉도에서 전라도 주민들은 기록과 상관없이 섬 이름을 그들의 방언으로 '독섬'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돌의 섬'을 의미합니다.
3. 다른 지방에서 온 소수의 주민들은 이 섬을 '돌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도 '돌의 섬'을 의미합니다.
4. 이렇듯 독섬이나 돌섬 등으로 불리고 있던 섬은, 1900년 칙령 41호에서 호칭의 의미에 따라 한자로 '석도(石島)'라고 표기되었습니다.
5. 그러나 석도라고 표기된 한자를 '독섬'으로 읽는 것은 전라도 외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인지 표기가 화면에 표시된 한자, 독도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6. 이 한자 표기는 앞서 설명한 「군함 니타카 행동 일지」나, 한국 사료인

울도 군수의 보고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광복 후 이 한자 표기는 점차 '독도'라고 완전히 음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음운 변화설입니다.

21. 방증 ①『조선 수로지』

1. 석도의 음운 변화설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문헌적 방증은 수로부가 1907년에 발행한『조선 수로지』제2 개판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에 많이 존재하는 석도의 당시의 일반적인 호칭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조선 수로지』는 한자로 '석도'라고 표기된 다섯 곳에 각각의 호칭을 일본 가타카나로 표기했습니다.
3. 이들 석도의 대략의 위치를 앞의 〈조선 전도〉에 표기했는데, 이 섬들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북쪽에서 순서대로 도리소무, 도루소무, 도루소무 등으로『조선 수로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 호칭의 근원인 한국어 '돌섬'은 '돌의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4. 네 번째 '마쿠소무'는 '말단의 섬'이라는 뜻인데, 이는 같은 열도 안에서 육지에 가까운 쪽에 '도루소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으므로 그것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말단에 있는 이 섬은 '막섬'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5. 다섯 번째 '도토쿠소무'는 '도쿠소무'라고 써야 할 곳을 '도토쿠소무'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 섬은 현지에서 '독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돌의 섬'을 의미합니다.
6. 이와 같이 한자로 '석도'라고 기록된 섬들은 당시 훈독되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돌의 섬'을 의미하는 각지의 방언으로 불렸습니다.

22. 방증 ② 외무성의 비밀자료

1. 석도의 음운 변화설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문헌적 방증은 외무성 아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국의 비밀자료 『죽도 어업의 변천』입니다.

2. 이 책에서 이케우치 교수가 주목한 기사는 1920년경부터 독도에서 전복 어업을 행한 오쿠무라의 증언입니다. 조선인을 고용하여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한 오쿠무라는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라고 쓰고 '도쿠송'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내지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섬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3. 이 증언으로 랑코섬은 독섬이며, 한자 표기는 '홀로 독' 자와 '섬 도' 자로 썼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4. 이 자료를 알게 된 이케우치 교수는 한자로 '석도(石島)'라고 표기된 섬은 '도루소무'나 '도쿠소무'라고 불렸지만, 마침내 한자 표기가 '홀로 독' 자와 '섬 도' 자로 바뀜에 따라 호칭이 독도로 바뀌었다는 음운 변화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이케우치 교수는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죽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6. 그렇게 되면 시모조 좌장이 말한,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불법이 되며, 한국의 독도 영유는 공고해집니다.

23. 외무성 팸플릿의 문제점

1. 외무성의 팸플릿은 일본 정부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무인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 일에 대해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2. 그러나 내각회의가 있기 전까지 메이지 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가 없었습니다.
3. 내각회의를 요청한 내무성은 죽도와 송도, 즉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과 관계없다고 판단해 태정관의 승인까지 받았었습니다. 또 리양코섬, 즉 독도는 한국 영지로 의심된다고 여겨, 당초는 나카이의 신청서를 각하하려 했습니다.

4. 또 내각회의에 즈음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수로부는 리양코섬을 당초는 한국 영토로, 훗날에는 무주지라고 판단했지만, 어쨌든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5. 마찬가지로 내각회의 당시 의견서를 낸 외무성은 리양코섬을 한국 영토로 보고 있었으나, 러일전쟁을 수행하려면 리양코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관계 당국자들이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6. 게다가, 1905년의 내각회의 결정문은 오키섬 앞바다의 무인도, 즉 독도를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국제법상의 점령을 했다고 결정한 것이며,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 이런 경위에서 보면 현재 외무성 팸플릿의 주장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2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것으로 제3장을 마칩니다.
2. 다음 마지막 제4장은 '현대의 독도'입니다. 광복 후 일본의 독립과 국제정치의 영향을 다룹니다.
3. 이 동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은 화면에 보이는 '죽도=독도 문제 연구넷'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기다립니다. 보내 주신 메일은 공개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 **이 훈** | 『우리 땅, 그리고 독도—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진실』 (한철호 저, 2024, 선인)
- **김병렬** | 『어부지용(漁夫之勇)—최초 독도주민 최종덕의 도전과 응전』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저, 2025, 중앙경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7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서평

『우리 땅, 그리고 독도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진실』

(한철호 저, 2024, 선인)

이 훈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I. 『우리 땅, 그리고 독도』
II.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친 실증 연구
III. 일본 측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역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우리 땅, 그리고 독도』

최근 한철호 교수의 유고집『우리 땅, 그리고 독도』(선인, 2024)가 간행되었다. 모두 18편의 논문이 실린 이 방대한 저서는, 영면에 든 지 2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20년에 걸쳐 독도에 대한 문헌과 자료 수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 연구에 매진해 온 한철호 교수의 연구 성과를 '한철호 독도연구 선집'으로 간행한 것이다. 한철호 교수가 독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5년 즈음으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자, 개항기 한국 근대 정치외교사에 전념하고 있던 연구자로서 한반도 침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독도 연구에까지 연구의 폭이 자연스레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땅, 그리고 독도』에 수록된 논문은, 책의「총론」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한철호 교수의 독도 연구 성과 전체를 집대성한 것은 아니다. 주로 '근대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과 '근대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을 선별한 것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에서 수행되어 온 수많은 독도 연구들을 보면, 독도와 관련된 사료만을 도려내어 일방적·편의적으로 해석해 온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우리 땅, 그리고 독도』에는 독도가 직접 검토 대상이 아닌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대 일본이 주변 도서를 점령하는 과정 및 도서 선점에 대한 대응 경위를 근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침탈의 주체로서의 근대 일본 정부 및 무주지 선점 논리의 형성 과정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독도 연구는 지리적,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한철호 교수의『우리 땅, 그리고 독도』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선행연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충실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일본의 영토편입 문제를 입증한 점이 무엇보다도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친 실증 연구

『우리 땅, 그리고 독도』에 수록된 18편의 논문은 크게 2개의 부로 나뉘어 수록되었다. 제1부에는 한철호 교수의 독도 연구 성과를 알기 쉽도록 '근대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이라는 제목하에 일본의 도서 편입 논리를 비롯하여, 일본 해군성과 중앙의 행정기관 및 지방정부로서 시마네현의 독도 인식을 검토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제2부에서는 근대 일본의 초등·중등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각 장의 목차이다.

총론

제1부 근대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

제1장 일본의 도서 편입 논리

해제

01. 일본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釣魚島) 편입 배경과 과정

02. 메이지(明治) 시기 일본의 도서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

03. 외국의 도서선점에 대한 일본의 승인과정과 그 논리:
일본 외무성 편찬의 『국제법선례휘집(2)』을 중심으로

제2장 일본 해군성의 독도 인식

해제

04.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隱岐) 측량과 독도 인식

05.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水路誌)와 해도(海圖)에 나타난 독도

06.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 인식

07.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朝鮮全岸)」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제3장 일본 행정기관과 시마네현의 독도 인식

해제

08. 일본 농상무성과 「일본제국전도(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09.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0. 일본 내무성 지리국 출신 하타 세이지로(秦政治郎)의 오키·독도 인식
11.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 『시마네현통계서(島根縣通計書)』를 중심으로

제2부 근대 일본 검정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제4장 일본 초등 지리교과서와 독도 인식
해제
01.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搆修二)의 『일본지지략(日本地誌略)』 편찬과 독도 인식
02.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搆修二)의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편찬과 독도 인식
03.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 지리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
04. 일본 메이지 시기 오카무라 마스타로(岡村增太郎)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05. 일본 육군성 참모국 출신 나카네 기요시(中根淑)의 일본 지리교과서 편찬과 독도 인식
제5장 일본 중등 지리교과서와 독도인식
해제
06. 메이지 시기 야마카미 만지로(山上萬次郎)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집필과 독도 인식
07. 일본 메이지 시기 야즈 마사나가(矢津昌永)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편찬과 독도 인식

한철호 교수의 『우리 땅, 그리고 독도』는 20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 성과를 사후에 편집한 유고집인 만큼, 「총론」에서는 편집 의도가, 그리고 각 장의 첫머리에는 편집자가 수록 논문에 대한 해제를 간략하게 제시하여 이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하 해제를 바탕으로 각 장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근대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도서(島嶼) 편입 논리와 해군성, 농상무성, 외무성, 내무성, 시마네현의 인식 논리를 검토한 글들이다.

제1장에 수록된 3편의 논문은 독도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일본이 주변 도서를 점령하는 과정 및 외국의 도서 선점에 대한 대응 양상을 고찰한 논문들로, 일제의 독도 침탈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된 것들이다.

제1장의 첫 번째 논문인 「01. 일본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釣魚島) 편입 배경과 과정」은 일제의 독도 강탈을 1895년 센카쿠제도 편입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센카쿠제도 편입과정에서 1885~1895년까지 오키나와 현령(현지사)과 내무경(내무대신)이 주고받은 공문서, 내무경과 외무경(외무대신)의 의견 조율, 태정대신에의 보고 등, 우오쓰리시마(魚釣島) 편입을 둘러싼 행정문서(1차 사료)를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검토하여, 일제가 내세웠던 영토편입 논리의 불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일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논문인 「02. 메이지(明治) 시기 일본의 도서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는 외무성 조약국이 편찬한 『국제법선례휘집(2)』에 수록된 일본의 자국 주변 도서(島嶼) 편입과정과 논리를 분석한 것으로, 오가사와라지마(小笠原島)를 비롯한 총 6곳의 도서 편입과정과 논리를 고찰한 것이다.

세 번째 논문인 「03. 외국의 도서선점에 대한 일본의 승인과정과 그 논리」 역시 『국제법선례휘집(2)』을 대상으로, 일본 외무성이 외국의 도서를 선점해 가는 경위 및 일본이 이를 승인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는 일본 해군 수로부의 독도 인식에 관한 4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2장의 첫 번째 논문인 「04.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隱岐) 측량과 독도

인식」은 오키를 포함한 일본 북서안 측량보고서인 「오키회항약기(隱岐回航略記)」와 「쓰쿠바함제2회일본환해항적지도(筑波艦第二回日本環海航跡之圖)」·「오키열도(隱岐列島)」·「오키전도(隱岐全圖)」 등의 해도, 그리고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 등을 통해 당시 일본의 수로부가 오키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특히 「오키회항약기」 등 새로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수로부가 독도 강점 이전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 논리의 허구성을 밝혀냈다.

두 번째 논문인 「05.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水路誌)와 해도(海圖)에 나타난 독도」에서는 수로지와 해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양국의 시각 차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예로 일본 수로지에 기록된 조선의 '동한(東限)'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편, 일본의 오키 및 일본의 수로지와 해도 작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영국·러시아의 수로지 및 해도에 대한 정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 번째 논문인 「06.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 인식」은 『죽도고증(竹島考證)』에 실린 송도개척원을 비롯하여, 아마기함의 죽도(竹島)와 송도(松島) 측량의 목적 및 과정, 일본·러시아의 지도와 해도, 영국 수로부 간행의 해도와 수로지 등을 근거로 한 울릉도·독도 인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1878년 6월 아마기함이 울릉도를 측량한 내용과 의미를 밝힌 것이다. 특히 송도(울릉도)뿐 아니라 '리앙쿠르 록스(독도)'도 조선 영토로 파악한 아미기함의 인식이 일본 수로부와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관계로 파악하고 조선 영토로 인식·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네 번째 논문인 「07.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朝鮮全岸)」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은 일본 수로부가 조선의 전체 해안을 측량하고 영국 해도 등을 참고하여 3차례(1882·1896·1906)에 걸쳐 제작한 해도인 「조선전안」의 간행·개정과 유통 실태의 분석을 통해 수로부의 독도 인식과 그 변화과정, 나아가 일본의 독도 편입 논리를 밝힌 것이다. 그 결과 이 해도의 1882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판에는 조선의 북부 지역 일부와 동해안의 섬들이 표시되지 않았다가 1896년 판에는 조선 '전안'으로 개정·간행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들어갔고,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편입 직후에 새로 개정된 1906년 판에서는 독도가 삭제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조선전안」은 일본의 독도 편입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여 한국 정부에 독도의 강치 독점어업권을 요청하려 했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장에는 일본의 행정기관과 정부 관리 및 시마네현의 독도 인식을 다룬 논문 4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기 이전부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집필된 논문들이다.

제3장의 첫 번째 논문인 「08. 일본 농상무성과 「일본제국전도(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은 농상무성 지질조사소에서 편찬한 지도와 농상무성 관리였던 야마카미 만지로(山上萬次郎)가 집필한 지리교과서·부도 등을 분석한 글이다. 농상무성 지질조사소는 내무성의 지리국, 육군성의 육지측량부, 해군성의 수로부와 함께 측량과 지도 편찬을 담당한 일본의 대표적인 기관이었지만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었다. 한철호 교수는 농상무성의 「일본제국전도」 편찬과정 및 지명 표기 원칙과 야마카미의 교과서·부도에 실린 지도의 일본 국경선 등을 검토한 결과, 농상무성, 해군성, 문부성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두 번째 논문은 「09.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의 '공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이다. 외무성 관리 다나베는 에도(江戶) 막부의 오가사와라지마(小笠原島) '공도'정책을 비판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영국과 협상하여 오가사와라지마의 순검과 회수에 나섰던 인물로, 일본 정부의 영토정책의 제일선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 내에서 '송도'개척안, 즉 울릉도·독도를 순시·개척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송도를 실제로는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으로 파악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들어 반대하였다. 위 논문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이 조선의 독도 '공도(搜討)'정책을 빌미로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도 과거 오가사와라지마에 대하여 공도정책을 펼쳤던 점, 오가사와라지마를 회수한 절차 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다나베의 외교활동과 울릉도·독도에 대한 발언 등을 분석하여 현재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 논리를 반박하였다.

세 번째 논문은 「10. 일본 내무성 지리국 출신 하타 세이지로(秦政治郎)의 오키·독도 인식」으로, 여기에서는 근대 일본의 영역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내무성 지리국 출신자들이 집필한 지리교과서를 분석하여 일본 영토와 독도 인식의 변화과정을 치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 및 무주지선점론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 논문은 「11.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 『시마네현통계서(島根縣通計書)』를 중심으로」이다. 여기에서는 일본 내무성의 주관 아래 시마네현이 1884년부터 거의 매년 간행한 『시마네현통계서』를 분석하여 현의 공식적인 관할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1905년 2월 이전까지 『시마네현통계서』에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허구성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제2부에 수록된 7편의 논문은 근대 일본 검정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을 검토한 것들로,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을 계승한 근대 일본 초등·중등 지리교과서를 한철호 교수가 직접 발굴·수집·분석한 글들이다.

먼저 제4장에 수록된 5편의 논문은 메이지 시기 일본 소학교에서 사용된 지리교과서 검토를 통해 근대 일본의 영토 인식을 고찰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모순 및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 논문들이다.

제4장의 첫 번째 논문인 「01.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일본지지략(日本地誌略)』 편찬과 독도 인식」은 근대 일본의 지리·지문학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알려진 오쓰키가 저술했던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일본지명자인(日本地名字引)』·『일본전도암사지남보(日本全圖暗射指南譜)』 등,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오쓰키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두 번째 논문은 「02.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일본지지요략(日本地誌要略)』 편찬과 독도 인식」으로, 내용상 첫 번째 논문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새로 발굴한 오쓰키의 다른 저작물[『재각일본지지요략(再刻日本地誌要略)』·『표주일본지지략(標註日本地誌略)』·『일본암사합부(日本暗射合符)』·『개정일본지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속도(屬島)로서 서술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개정일본지지요략』(1889)의 정정 재판은 '심상사범학교와 심상중학교 교과서용서'로서 문부성 검정제를 획득했는데, 학생들에게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문부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논문은 「03. 1905년 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 소학교 지리교과서의 현(縣) 관할지 서술 내용과 독도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이전 시기에 주목하여, 시마네현 소학교에서 사용된 7종의 교과서를 새로 발굴한 한편, 시마네현과 오키 관할 지역에 대한 서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네 번째 논문인 「04. 일본 메이지 시기 오카무라 마스타로(岡村增太郎)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메이지 시기의 교육자 오카무라가 저술한 지명사전과 지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인식을 고찰한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 영토로 인식했던 점을 밝혔다.

다섯 번째 논문은 「05. 일본 육군성 참모국 출신 나카네 기요시(中根淑)의 일본 지리교과서 편찬과 독도 인식」이다. 나카네가 육군성 참모국 재직 중에 집필했던 『병요일본지리소지(兵要日本地理所誌)』(1873)는 최초의 관찬 전국

지리서로 군인용 교재뿐만 아니라 소학교 지리서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육군성 참모국의 일본 영토 인식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한철호 교수는 나카네의 『병요일본지리소지』가 일본의 영토 변화에 따라 그 서술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거론되거나 표시되지 않았음은 물론, 교과서체제에 맞게 보완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일본 측의 주장과 논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근대 일본의 중등 지리교과서 부도 및 시마네현 관할지에 나타난 독도 인식과 표기의 변화를 고찰한 논문들이다.

제5장의 첫 번째 논문인 「06. 메이지 시기 야마카미 만지로(山上萬次郎)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집필과 독도 인식」은 앞서 제3장의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할 때 언급된 바 있는 메이지 시기 대표적 지리학자이자 교육자인 야마카미가 집필한 지리교과서와 부도를 분석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한 논문이다. 1905년 2월 이전 일본 정부의 검정을 받은 대표적 학자의 지리교과서와 부도에 독도가 일본의 국경선에서 제외된 것을 밝힘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 및 학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논문인 「07. 일본 메이지 시기 야즈 마사나가(矢津昌永)의 일본 지리교과서·부도 편찬과 독도 인식」에서는 메이지 시기 대표적 지리교육가 및 지리학자인 야즈 마사나가가 편찬한 지리교과서와 부도에 수록된 지도들을 분석하였다. 국수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던 야즈 마사나가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 확장 상황을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였다. 그러나 그가 편찬한 교과서와 부도의 지도들에는 일본의 한국 강점 전후 시기부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야즈 마사나가 역시 1905년 2월 이전까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밝혔다. 즉 지리교과서와 지방지 등에 일본 영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 메이지 시기부터 1905년까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인식이 부재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의 허구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제기하였다.

Ⅲ. 일본 측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역공

방대한 목차로 알 수 있듯이, 한철호 교수의 『우리 땅, 그리고 독도』는 단순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책은 아니다. 일본 측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영토편입 논리의 모순 속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광범위한 검토 자료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18편의 논문 모두 다양한 일본 측 자료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무성이나 내무성, 해군성 문서는 물론, 지금까지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농상무성 지질조사소의 지도 및 「오키회항약기(隱岐回航略記)」 등과 같은 새로운 자료, 그리고 메이지 시기의 지리학자 및 교육자가 작성한 초등·중등 교과서까지도 직접 발굴·수집하여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땅, 그리고 독도』에서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한철호 교수의 분석 방법 내지는 연구 관점이라 생각되며, 근대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영토편입 양상을 고찰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일본이 에도시대 말기부터 근대 일본의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센카쿠제도를 비롯하여 오가사와라지마 등 주변 도서를 편입·선점해 가는 경위에 대해, 일본의 중앙정부(해군성, 농상무성, 외무성, 내무성, 태정관)와 지방정부(오키나와 현)가 주고받은 행정문서 및 정부 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1894) 승리를 앞둔 시점에 종전의 입장을 뒤집고 우오쓰리시마 등 센카쿠제도에 대해 무인도·무주지 선점론을 정당화하면서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 결과 독도 침탈 주체로서의 근대 일본 정부 및 무주지 선점 논리의 형성 과정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을 큰 성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일본이 자국과 외국의 다양한 도서 선점과정에서 보인 논리 및

대응 양상의 분석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의 본질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검토과정에서는 일본 정부의 영토정책의 제일선에서 활약했던 인물들, 즉 외무성 다나베 다이치, 내무성 하타 세이지로, 농상무성의 야마카미 만지로, 육군성의 나카네 기요시 등을 구체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영토편입의 '주체 및 주어'를 확실하게 한 것 역시 이 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일본 오키 전도의 범주 및 시마네현의 관할지(『시마네현통계서』) 범위 조사를 통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40호) 이전에는 독도가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 고시 이후 오키 열도에 '죽도'가 추가되거나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입된 것을 밝혀냄으로써,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 근거가 없음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전안」 역시 3차례(1882 · 1896 · 1906)나 간행 · 개정되었지만,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불법 편입한 직후의 개정판(1906)에서야 독도가 비로소 삭제된 것을 밝혀냄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 및 '무주지 선점론'의 모순을 다각적으로 증명하였다.

세 번째로는, 메이지 시기 지리학자들(오쓰키 슈지, 오카무라 마스타로, 나카네 기요시, 야마카미 만지로, 야즈 마사나가)의 지리서 및 지리교과서 · 부도 편찬 시,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40호)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 영토[조선 속도(屬島)]로 기술되거나 일본의 국경선에서 제외된 것을 밝혔으며, 문부성 검정제를 획득한 지리교과서의 경우 초등 · 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인식과 달리 일반 민간에게는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인식이 확산 · 유통되었던 것까지를 추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철호 교수의 『우리 땅, 그리고 독도』는 한마디로, 일본조차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일본 측 자료를 활용하여 명백하게 입증한 책이다. 여기에 더하여 센카쿠제도 등 주변 도서의 편입을 비롯하여 오키 및 시마네현 관할지 검토를 통해, 일본의 독도 '무주지선점론' 및 '고유영토론'을 '역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이 책의 가장 큰 성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향후 후학들로 하여금 연구의 계기를 마련한 한편,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연표'로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만큼, 『우리 땅, 그리고 독도』는 독도 연구의 필독서로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8
영토해양연구 Vol. 30 (2025. 12.)

서평

『어부지용(漁夫之勇) –최초 독도주민 최종덕의 도전과 응전』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저, 2025, 중앙경제)

김병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I. 어부지용(漁夫之勇)
II. 섬의 영유권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III. 일본 측의 독도 이용
IV. 최종덕 씨의 독도 정주
V. 독도에서의 생활
VI. 최종덕 씨 활동의 의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어부지용(漁夫之勇)

나는『장자(莊子)』를 직접 읽어 보지 않아서 '어부지용'의 깊은 뜻은 잘 모른다. 다만 단어만으로 짐작건대 사방을 둘러보아도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에서 높은 파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험 많은 어부의 용기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어부지용』은 책의 부제처럼 최초의 독도 주민이었던 고 최종덕 씨의 도전과 응전에 대한 기록이다. 최종덕 씨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서 세 살 때 아버지를 따라 울릉도로 이주했다. 성인이 되어 오징어 장사 또는 약초재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1963년 독도에 첫 입도 후 1965년부터 독도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1987년 뇌출혈로 사망하기 전까지 어떤 때는 혼자서, 또 어떤 때는 딸 부부와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독도에 살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의지의 독도인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도는 외롭지 않다
2. 독도는 살아있다
3. 어부지용 – 최종덕이 간직한 꿈
4. 가족의 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
5. 끊임없는 도전과 철저한 준비
6. 창의적인 재능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
7. 최초 독도인 최종덕을 기리며

(부록) 최종덕의 독도 개척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섬의 영유권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현재 유엔(UN)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 도서는 공식적으로 26개이다. 이 중에는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다. 이러한 섬들의 영유권을 다툴 때는 일반적으로 권원을 주장하게 된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논할 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역사적 권원, 지리적 권원, 국제법적인 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일본도 똑같이 하고 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섬의 영유권을 결정짓는 요소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각의 요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덕 씨처럼 독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더욱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지리적인 요소는 문제의 섬이 어느 나라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존의 영토와 보다 근접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분쟁이 되고 있는 섬에서 비록 특정국의 기존 영토로 인정되고 있는 섬이 상대국보다 가깝기는 하지만, 그 특정국의 섬이 무인도일 경우, 조금 먼 곳의 유인도 또는 육지를 영유하고 있는 국가가 분쟁이 되고 있는 섬을 상대방 국가보다 더 일찍부터 영유의식을 가지고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코 간단한 문제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요소는 특정국의 역사적인 기록에 상대방 국가의 영토라는 기록이 있다면 비교적 쉽지만, 자국의 영토라는 기록밖에 없다면 상대방 국가 역시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찬이냐 사찬이냐 어떤 것이 더 오래된 것이냐 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국제법적인 요소는 조약이나 매매, 정복 등 순수하게 국제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토지대장 등재, 과세, 각종 인허가 등 국내법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또한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 최종덕 씨의 독도 생활을 담은 이 책은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Ⅲ. 일본 측의 독도 이용

아래 내용은 일본 외무성에서 계속 죽도(竹島, 다케시마)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竹島の歷史地理學的研究)』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이다.

일본인들은 최초 도쿠가와 막부(德天幕府) 시대 때 조선의 주민쇄환정책으로 울릉도에 조선인이 거주하지 않게 되자, 1618년(실제로는 1625년)경부터 울릉도에 도해하여 전복 등을 채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조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사건으로 막부에서 1696년 1월에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킴으로써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당시 울릉도 도해만 금지되었지 독도까지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독도까지 도해를 금지시켰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1836년의 하치에몬(八右衛門) 사형선고사건을 들고 있다. 이 사건은 하치에몬이 송도(松島, 현재의 독도)에 도해하겠다는 명목으로 도해를 허가받은 후 허가받지 않은 죽도(竹島, 현재의 울릉도)에 도해했다고 하여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을 당시 송도는 도해가 금지되지 않았던, 즉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컨대 이것은 교언영색이다. 당시 하치에몬은 어부가 아니고 상업을 하는 장사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독도에 갈 생각이 없었다. 장사꾼이 사람이 1명도 살지 않는 무인도 독도에 가서 무엇을 팔겠다는 것인가? 그는 울릉도는 어차피 도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해를 신청해 봤자 허가가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울릉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아닌 제3의 섬으로 가는 것처럼 송도로 장사를 하러 간다고 신청했던 것이다. 당시 하마다번 역시 그가 가겠다고 한 송도가 도해가 금지된 울릉도는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무인도인 독도도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제3의 유인도로 잘못 알고 허가를 해 준 것이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하치에몬과 결탁하여 울릉도 도항을 송도라는 이름으로 허가해 주었던 것이다. 송도(독도)가 무인도인줄 알았다면 장사꾼이 무인도로 장사를 하러 가겠다는 데 누가 허가를 해 주겠는가? 이처럼 실체가 없는 섬을 현대에 와서 다른 섬이 없다는 이유로 독도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인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으로부터 근대적인 어선과 어로장비를 수입하게 되자 다시 또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독도를 목적지로 도항한 것이 아니고 울릉도를 목적지로 도항했다가 독도에 중간 기착하여 해조류나 어패류 등을 채취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정부가 1888년 울릉도에서 불법적으로 가옥을 짓고 있는 일본인 30명을 발견하고 이들의 퇴거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여 전원 퇴거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모두 추방하게 되자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은 중단되었고, 자연스럽게 독도에서의 해조류나 어패류 채취도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라는 바다사자잡이 어부가 1903년 불법적으로 독도로 건너가 바다사자잡이를 시험적으로 시작하였고, 1904년에는 2,760마리 이상을 포획할 수 있었다. 그러자 나카이는 독도의 바다사자를 독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처음에 그는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조선의 영역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 통감부에 요청하여 바다사자 어업권을 따낼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시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로부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조선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제독의 무소속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에 힘입어 일본 땅도 한국 땅도 아닌 무주지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근거로 나카이는 경영상의 필요한 이유를 달아 이 무주지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후 자신에게 임대해 줄 것을 내무, 외무, 농상무대신에게 청원하게 된다.

이 청원서를 받아 본 내무성 당국자 이노우에 가쓰노스케(井上勝之助)는 "이 시기를 맞아 조선의 땅이라고 의심이 되는 황막한 일개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암초를 거둠으로써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조선 병탄의 야심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의심을 크게 사는 것은 이익은 매우 적은 데 반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변명과 진술을 하면서 청원하여도 각하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나카이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안고 바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에게 독도를 편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역설하였다. 그러자 야마자 국장은 시국으로 보더라도 그 영토편입이 시급히 요구되며,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지극히 유리하며, 특히 외교상으로는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으니 속히 원서를 본(외무)성에 회부시키라고 하여 크게 고무되었고, 그의 말대로 원서를 제출하여 이 섬이 마침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카이 요자부로에게서 이러한 독도편입의 경과를 들은 오쿠하라 후쿠이치(奥原福市)는 자신의 저서 『죽도 및 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나카이 요자부로 씨는 리앙코섬(독도)을 조선의 영토로 믿고 이 나라(조선) 정부에 대하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여 1904년(明治 37)의 어기가 끝나자 직접 상경하여 오키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간타로(藤田勘太郎)와 도모하여 마키 나오마사 수산국장을 면회하여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러자 수산국장 역시 이에 찬동, 해군 수로부에 넘겨 리앙코섬의 소속을 확인시켰다. 나카이 요자부로 씨는 즉시 기모쓰키 가네유키 수로국장을 면회하니, 그 섬의 소속에 관해서는 확실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일한(日韓) 두 나라 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오히려 일본 쪽이 10리 더 가까우며, 이에 더하여 일본인으로서 그 섬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일본령에 편입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나카이 요자부로 씨는 마침내 뜻을 정해 「리앙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 세 대신에게 제출했다. … 이후 나카이 요자부로 씨는 내무성 지방국에 출두하여 이노우에 서기관에게 사정을 진술하였으며, 구와타(桑田) 박사 역시 크게 힘을 써서 드디어 함께 시마네 현청에 의견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시마네현청에서도 오키도청의 의견을 구해 각의에 상신한 결과 각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토편입을 결심, 리앙코섬을 죽도(竹島)라 명명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들 두 사료를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에서 이시바시 마쓰타로와 바다사자조업을 하면서 자신은 일본 땅이 아닌 조선 땅에서 몰래 바다사자를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로작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원자인 나카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청원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일본 정부의 관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근대적 측량기계와 기법을 수입하여 1876년부터 내무성에서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무성은 사전작업으로 약 5개월에 걸쳐 도쿠가와 막부 시대 때의 문서 등을 조사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77년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결재를 받았는데 이와쿠라는 결재문서에 "위 보고한 죽도 외 일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 착오 없도록 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之儀本邦關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이라고 의견까지 기록하였다. 또 이러한 결과에 의해 오쓰키 슈지(大槻修二)가 1886년에 발간한 『개정일본지지요략(改正日本地誌要略)』에 "오키의 서북 해상에 송도, 죽도가 있는데 두 섬은 거의 1백 리 정도 떨어져 있

고, 조선에서는 울릉도라 칭한다. 근래 그 나라의 속도로 정해졌다고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1900년에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편찬한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라는 책도 울릉도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크고 작은 6개의 섬이 있다. 그중 저명한 것으로 우산도[일본인은 송도(松島)라고 한다], 죽도 등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산도나 송도가 독도이며 조선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무성 내에서의 일련의 영토배제과정과 『개정일본지지요략』이나 『조선개화사』 등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었던 내무성의 이노우에 서기관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는 데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이노우에 서기관뿐만이 아니다. 독도편입을 총리대신에게 건의했던 내무대신도 위 내무성의 질의와 태정관 우대신의 결정은 물론 『개정일본지지요략』 등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밀공문을 보내 편입을 청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노우에 서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무주지라고 강변하면서 편입을 사주 또는 독려했던 마키 나오마사, 기모쓰키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도 모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키 나오마사는 농상무성의 수산국장으로서 바로 1년전인 1903년에 간행된 『한해통어지침(韓海統漁指針)』의 발간사를 쓴 사람인데, 이 책에는 독도를 '양코도'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또한 기모쓰키 가네유키는 오랫동안 해군 수로부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그가 재직 시 편찬한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 1883년 판과 1886년 판 및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1894년 판과 1899년 판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백번 양보하여 그가 『조선수로지』 등을 전혀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수신자로 한 1904년 군함 니타카마루(新高丸)의 정보보고 등을 통해서 최소한 조선 땅이라는 의심을 가졌음이 분명한데도 "조선 땅이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나카이 요자부로를 사주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마자 엔지로의 경우 외무성의 정무국장 취임 전에 오랫동안 조선의 공사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당시 울릉도에서의 한일 국민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 독도를 인지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결론적으로 무주지가 아니고 조선 땅일 것 같다는 인식하에서 작업을 한 나카이 요자부로의 어로작업 자체가 선의의 실행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무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중간 관료들이 억지로 무주지라고 강변하면서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원인 무효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편입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입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독도가 조선 영토인지 여부를 조선에 확인했어야만 한다. 이러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실효적 지배 운운은 그 정당성이 없다.

Ⅳ. 최종덕 씨의 독도 정주

최종덕 씨는 1963년에 독도에 처음 입도한 이후 정주하면서 어업활동을 시작했고, 1965년 3월부터는 울릉군 수협 도동 어촌계로부터 독도 공동어장 채취권을 획득하여 독점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독도에 거주하면서 1972년에 울릉군 남면 도동 41-8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당시는 독도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서 그가 울릉도에 있을 때 거주하고 있었던 도동 41-8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독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전에 홍순칠 씨를 중심으로 한 독도의용수비대가 입도하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최종덕 씨가 최초 입도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업활동을 위해 독도에 정주한 최초의 거주인이라고는 할 수 있다.

이후 1979년에 도동이 남면에서 울릉읍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1981년에 독도에 도동 산67 지번이 부여되어 최종덕 씨의 거주지 역시 도동 산67번지로 변경되었다. 즉 최종덕 씨는 계속해서 독도에서 활동했지만 행정공부상으로는 남면 도동 41-8에서 울릉읍 도동 41-8을 거쳐 울릉읍 도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산67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최종덕 씨는 독도 정착 초기에는 샘이 있는 물골에 움막집을 지어 생활했다. 이곳은 서도의 북쪽 사면에 자리해 있고 높은 경사면 아래에 위치해 있어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아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불편한 점과 단점이 많은 곳이다. 또 북쪽에서 몰아치는 거센 물결을 맞받아 배를 이동해 보관할 장소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평균적으로 파도가 높은 곳이라 선박의 접안이 어렵고 순간 돌풍이 불면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이었다. 심지어는 파도가 샘물이 솟는 동굴 안까지 들어오기도 했다.

이곳은 식수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단점이 많아 어로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사람들과 함께 바다미역을 채취하며 불편하게 생활하다 파도가 거세지면 살림살이를 들고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최종덕 씨는 파도와 바람을 피해 생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공간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물골에서 거주하며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다. 사시사철 날씨와 파도의 방향 그리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이 날 때면 독도에서 가장 높은 서도의 대한봉 정상에 올라가 섬 전체를 내려다보며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간 생활이 가능한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 하고 찾아보았다. 독도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날씨로 인해 작업을 못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이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대한봉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정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독도에 살고 있는 '독도 깔따구'라고 불리는 무서운 벌레였다. 물골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깔따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최종덕 씨보다 먼저 독도에서 생활했던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도 이 깔따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후일담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벌레는 몸길이가 2~3㎜로 아주 작은데 처음에는 울릉도에 있는 깔따구와 같은 종류로 생각했지만 울릉도 깔따구는 상대도 안될 정도로 지독했다. 물론 울릉도에 있는 깔따구도 일반 모기보다 독했지만, 독도 깔따구는 한번 물리면 피부가 심하게 붓고 일반 모기나 울릉도 깔따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준다. 처음에 필자가 울릉도에 이사왔을 때 밭일을 하다가 깔따구에 물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 간신히 치료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흉터가 다리에 남아 있다. 이 독도 깔따구는 훗날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 모기로 확인되어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라고 명명되었다. 독도의 환경이 혹독하여 모기가 피를 빨 수 있는 동물이 많이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도 아주 극악스럽게 진화한 것 같다.

최종덕 씨는 수없이 서도의 대한봉에 올라가 파도를 자세히 바라보면서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높은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가 서로 부딪혀 약해지는 지점은 어딘지를 살폈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지를 조사했다. 수없이 서도의 정상과 물골을 오르내리며 파도와 바람의 영향이 가장 적은 장소를 찾아낸 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인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인지 체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러 번 장소를 직접 찾아가 몸으로 확인한 후 마침내 주거 공간의 설치와 안전의 확보가 가능한 곳을 어렵게 찾아냈다. 그곳이 지금의 독도주민숙소가 위치한 '덕골'인데, 덕골은 최종덕 골짜기라는 뜻으로 최종덕 씨가 직접 붙인 이름이다.

Ⅴ. 독도에서의 생활

최종덕 씨는 1963년 처음 독도를 답사한 후, 1964년 3월 초에 독도에 입

도하여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5월 초에 울릉도로 복귀하였다. 이듬해인 1965년 3월 울릉군 수협 도동어촌계로부터 독도 공동어장 채취권을 획득하게 되자 바로 입도하여 5월까지 어로작업을 하였다. 그는 10월 말에 다시 독도에 입도하여 이듬해 4월 초에 울릉도로 나왔다. 1967년 현재의 어민 숙소자리인 덕골에 토담을 쌓고 슬레이트를 얹은 집을 짓고 안정된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독도에서의 삶이 안정되면서 덕골 산중턱에 문어 건조장을 건립하였고, 전복 양식 배양법을 개발하였으며, 수중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어로작업에 진력하였다. 차츰 독도 거주기간도 길어져서 1979년 말까지 10월 말에 독도에 입도하였다가 이듬해 4월 초에 울릉도로 나오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후 점차 그 기간이 늘어나서 6월 초까지 7~8개월 독도에 머물렀다. 1980년부터는 9월 말에 독도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6월 말에 나옴으로써 약 10개월간씩 독도에 살았다.

덕골에 집을 지은 그는 배를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선가장을 만든 후 도르래인 동끼를 만들어 배를 끌어 올려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했다. 또한 '히다까'라는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덕 씨는 독도에 냉동창고를 만들어 잡아 온 해산물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냉동창고라고는 하지만 전기가 없어,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마다 눈을 모아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 둠으로써 창고의 온도를 낮춰 저장물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독도는 눈이 내리면 해산물을 삶고 건조하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녀들이 잡은 문어, 해삼 등을 냉동창고에 넣어 저장했다가 날이 좋아지면 꺼내 삶거나 건조시켜 보관했다.

최종덕 씨가 독도에서 24년간 어로작업을 할 때 그의 처는 최종덕 씨가 잡아서 배편으로 보내온 독도 수산물을 받아 울릉도 수협에서 경매에 붙이고, 최종덕 씨가 독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입해 독도로 돌아가는 배에 실어 보내는 일을 전담했다. 당시 독도에는 최종덕 씨를 포함해 해녀 10~13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물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도 엄청났다.

독도에서는 해녀들이 없으면 어로작업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종덕 씨는 해녀들을 아주 귀하게 대했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다. 추운 겨울 최종덕을 비롯한 선원은 난방이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는 반면 해녀는 난방이 되는 따뜻한 아랫목에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청하게 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야 한다며 해녀의 잠자리를 각별히 챙겼던 것이다. 독도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바닷속에서 하는 일이라 주로 해녀의 작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독도에서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라 발전기가 필요했지만 너무 고가이면서 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필요한 전기는 배에 부착된 배터리를 이용해 식사를 준비할 때 잠시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고 비상시 필요한 물건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중 하나가 난방용 연료인데 독도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단 한 가지, 선박용 '벙커시유'밖에 없었다. 이 벙커시유를 배를 움직이는 것 이외에 식사를 준비할 때나 겨울철 난방을 할 때 잠깐씩 사용했다. 밥을 짓기 위해 벙커시유로 불을 지피면 검은 그을음이 많이 올라와 눈을 뜨는 것은 물론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배의 배터리를 이용한 전등은 식사를 준비할 때나 잠깐씩 사용할 수 있었을 뿐이다.

육지 같으면 나무를 화목으로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독도에는 나무가 없어 땔감이 없었다.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독도 바닷가로 밀려온 쓰레기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파도가 심하게 치고 난 후 물골이나 동도에 위치한 자갈밭 등 바닷가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육지에서 떠내려온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해류의 영향으로 멀리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떠내려온 것들은 물론 배에서 버려진 물건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태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난방용 연료로 사용했다. 배나 어구에서 분리

된 나일론 밧줄이 오랜 시간 태울 수 있는 좋은 연료였다. 한 번에 다 넣으면 금방 강하게 타버리기 때문에 불을 지키고 앉아 조금씩 밀어 넣어야 오랜 시간 난방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불을 피워 방을 덥히면 아랫목 쪽은 밤새 다른 곳에 비해 조금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자리는 물론 차가운 물속에서 일하는 해녀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해녀들에게 양보하고, 최종덕 씨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남자 선원과 함께 차가운 윗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최종덕 씨는 본인만의 감각과 기술을 활용해 여러 사람의 독도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다. 특히 그는 기상변화에 따른 파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독도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안전한 시간대로 조정하였고 이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종덕 씨가 서도에 터를 잡고 생활할 당시 동도에는 1개 소대 병력의 경비대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독도 경비대원들의 교대는 매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뤄졌는데 날씨에 따라 가변성이 있었다. 당시 독도에는 선착장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바다 바닥에 각종 암초가 많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온 큰 배가 직접 접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교대 인원과 보급품을 싣고 온 배가 멀리 안전한 바다에 정박을 하면 파도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덕진호를 몰고 나가 화물과 인원을 독도로 옮기고, 독도에 있던 인원과 각종 화물을 다시 배로 옮겨다 주었다.

해녀들과 함께 어로작업을 하다가도 일본 어선이나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배를 몰고 나가 일본 배의 접근을 저지시켰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도 그는 일본 배를 정확히 알아보았다. 일본 배들의 특징이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배들이 접근하면 1.25톤의 작은 덕진호를 타고 그 배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앞을 가로막고 돌아가게 했다. 일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최종덕과 그의 배 덕진호는 순식간에 독도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일본 배들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최종덕 씨는 이러한 노력으로 1977년에 경찰청장에게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최종덕 씨는 독도에 거주하는 24년 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큰 공사를 했다. 그중에 가장 힘든 공사가 물골 계단공사였다. 독도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확보였는데, 유일하게 서도의 물골에서만 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식수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정주가 어려웠다. 결국 나중에 정주여건이 보다 나은 물골의 반대쪽으로 숙소를 옮겼기 때문에, 정주여건은 좋아졌지만 물골에서 숙소인 덕골까지 식수를 운반해야 하는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다. 배를 이용해야 하는데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도저히 배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밧줄을 타고 서도의 가파른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길도 없는 아주 가파른 비탈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여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82년 11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바람 없이 파도가 잔잔하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경비대원들이 '경비대 철선' 또는 '뗏마'라 불리는 철판으로 만든 작은 배(철선)를 타고 물골로 가서 빨래와 목욕을 했다. 그날도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없어 몇몇이 빨래를 위해 물골로 가서 빨래와 목욕을 한 후 서도의 경비대로 돌아오기 위해 철선에 올랐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철선이 전복되었다. 급히 물에 빠진 경비대원들을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독도 경비대장 주 경사와 경비대원 권 수경이 파도에 휩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경비대원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영 실력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울릉군청과 경찰서는 언론과 정부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이에 최종덕이 동도에서 서도의 어민보호소로 오고가는 것은 그리 큰 위

험이 없는데, 정작 어민보호소에서 물골로 가는 길이 없어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서,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물골에서 덕골로 넘어가는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울릉군청과 경찰서에 강력히 역설하였다.

최종덕의 건의를 받아들인 울릉군청은 경북도에 계단공사를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 배정된 예산에 의해 울릉도 소재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아 현장소장과 인부들이 독도에 들어왔다. 하지만 쉬운 공사라 생각하고 독도에 들어왔던 현장소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1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군청도 현장의 상태를 잘 모르고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냈던 것이고, 건설회사도 현장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입찰에 응했다가 현장을 보고는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포기했던 것이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최종덕이 공사를 떠맡게 되었다. 1983년에 시작한 1차 공사는 어민보호소 뒤편에서 꼭대기 능선까지 바위를 깎아 계단의 형태를 만들고 거푸집을 이용해 시멘트를 부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었다. 시멘트만 울릉도에서 실어오고 모래나 자갈은 전부 독도에서 바위를 깨고 부수어서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멘트와 자갈 등 자재를 인력으로 옮겼으나 계단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력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최종덕은 궁리 끝에 동끼(도르래)를 들고 로프에 의지해 능선까지 올라가 도르래를 설치했다. 그다음 강철선을 가지고 올라가 도르래에 걸고는 어민보호소 뒤에 있는 경운기 엔진에 연결해 경운기 엔진의 힘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경운기 엔진을 이용한 덕분에 계단공사의 속도가 빨라져 1983년 7월에 1차 공사를 가까스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84년 3월부터 2차 계단공사를 시작했다. 1983년에 한 공사에 이어서 능선을 따라 대한봉 옆을 지나 물골로 내려가는 곳까지의 공사였다. 능선공사는 만들어 둔 동끼를 이용해 모든 자재를 올려 보낸 후 현장에서 바로 섞어서 공사를 진행했다. 1차 공사에 비해 길이는 길고 계단의 수는 많았지만 급경사면이 적어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자갈이나 모래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급도 1차 공사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조금은 덜 힘들었다. 자갈의 경우 계단이 만들어지는 길 옆의 바위를 깨거나 계단을 팔 때 나오는 돌을 이용해 바로 만들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1984년 5월 2차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문제는 1985년 3월에 시작한 3차 계단공사였다. 1차와 2차 공사는 아래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는 형태의 공사였지만 3차 공사는 대한봉에서 물골로 내려가는 공사였기 때문에 난공사였다. 물론 물골에서 시작하여 1, 2차 공사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만들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물골 주변이 공사용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에서부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물골 쪽은 어민보호소 쪽과는 달리 바람이나 파도를 막아 줄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공사를 위해 가져다 놓은 자재와 장비들,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계단까지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밑에서부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

최종덕은 생각 끝에 경운기 엔진을 강철선과 함께 덕진호에 싣고 물골로 가서 무거운 경운기 엔진을 분해한 다음 부품을 하나하나 짊어지고 밧줄을 이용해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를 정상에서 다시 조립하여 설치하였다. 그는 어민보호소 쪽에서 물골까지 덕진호에 싣고 온 시멘트, 자갈과 모래, 그리고 물골에서 퍼 올린 물 등 모든 자재를 동끼를 이용하여 정상으로 끌어올린 후 현장에서 배합하여 위에서부터 계단을 만들면서 내려왔다.

덕골에서 덕진호로 싣고 온 자재를 물골 쪽에 쌓아 놓았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못쓰게 되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정상으로 끌어 올려야 했다. 자재가 못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덕진호는 울릉도에서 가져온 자재들을 물골로 실어 날랐고, 해녀들은 정상에서 망치로 바위를 깨서 자갈을 만들었다. 물골에서는 모래를 담은 자루와 시멘트를 물과 함께 강철선 동끼를 이용해 정상으로 올려 보냈다. 이렇게 모든 자재를 일단 정상으로 올린 후 정상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만들어 내려왔다. 이윽고 1985년 5월 드디어 3차에 이르는 모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단공사가 끝났다. 로프를 잡고 벼랑길을 올라 다니던 서도에 돌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물골과 덕골을 연결하는 길이 최종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Ⅵ. 최종덕 씨 활동의 의의

이러한 최종덕 씨의 활동은 비록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에 비해 연대적으로는 한참 뒤지지만 나카이의 활동이 불법적인 것이었던 데 비해 합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종덕 씨는 딸 최은채 씨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아버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독도에 계시는 거예요?"
> "음! 너희들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훗날 내가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고 내가 주민으로 살았던 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알게 될 거다. 나는 한반도 반을 준대도 독도하고 안 바꾼다."
>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울릉도에서 진짜 크게 부자 소리 들으면서 등 따시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구태여 독도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세요?"
> "내 꿈은 독도에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란다."

최종덕 씨의 어부지용은, 비록 그는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최종덕 씨에 의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토·해양 일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tas.2025..30.009

영토 · 해양 일지

엄태일 한림성심대학교

2025년	국내	국외
6월	• 5일: 합참은 지난달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협력해 조치했다고 발표 • 12일: 동중국해를 표류하던 남한 어선이 중국 EEZ 안으로 들어가 선주가 반발 •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중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	• 4일: 미·필리핀 군은 필리핀 신형 구축함 '미겔 말바르'도 참가한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7번째 공동 훈련 실시 • 9일: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제2도련선'을 통과했다고 발표 • 9일: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일본 EEZ에서 작전을 실시했으며 최초로 '제2도련선'을 통과한 사례라고 비판 • 12일: 중국이 중국 EEZ로 흘러온 한국 어선을 2차 선박사고 방지를 위해 예인
7월		• 1일: 필리핀은 미·일·필리핀이 한반도를 제외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원 시어터(One Theater, 하나의 전쟁구역)'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 3일: 중국 군·경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했다고 발표 • 9일: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을 왜곡해서 바라보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14일: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초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5년	국내	국외
7월	• 15일: 외교부는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 • 30일: 독도가 일본 기상청 쓰나미 경보에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논란	• 17일: 북한은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대해 '전범국'의 군사대국화 책동이라며 비난 • 29일: 홍콩 언론이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비행했으나 한일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 • 30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8월	•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실시 •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실시	• 1일: 러시아 강진으로 미국과 가장 인접한 러시아 핵잠수함 기지가 일부 손상 • 11일: 필리핀 해경선이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Scarborough shoal)[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으로 운항 • 11일: 중국 해경선은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 인근에서 운항 중인 필리핀 해경선을 추적·감시하며 경고·퇴거 조치 실시 • 13일: 미국 이지스 구축함 '히긴스'가 중국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 부근에 진입 • 13일: 중국 해군은 중국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 암초 부근에 진입한 미 이지스 구축함을 추적·감시와 경고·퇴거 조치 •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미 기간 중 하루 평균 3척의 중국 군함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easures Zone: PMZ)에 전개한 것으로 파악

2025년	국내	국외
9월	• 9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 안전사고와 불법 행위를 단속 • 11일: 해경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과 EEZ에 경비함정 등을 배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 • 18일: 해군과 해경은 9월 18일~10월 1일간 서해에서 3차례의 합동 기동훈련을 실시 • 19일: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 서비스에서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오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 24일: 해양수산부 조사선이 서해 PMZ에 진입 중 중국 해경이 접근해 한국 해경이 지원 • 26일: 합참은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중국으로 국적을 속이려 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해 경고 방송·사격을 실시	• 1일: 일본 NHK 방송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남성이 라디오 생방송에서 센카쿠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돌발 발언한 것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5일: 러시아 산업계 대표자가 '일본해' 명칭을 '동해'로 바꾸자고 제안 • 11일: 중국 항공모함 '푸젠'이 처음으로 센카쿠열도 인근 동중국해 해역을 미사일 구축함 2척과 함께 항해 • 11일: 일본은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경계·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 • 18일: 미국 『뉴스위크』는,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한국 서해 PMZ를 포위하는 군사 작전을 펼쳤다고 보도 • 23일: 한국을 제외한 42개국 구글 지도가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2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PMZ를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발표 • 26일: 북한 상선 1척이 백령도 서북방 일대 NLL 이남 약 5km를 침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5년	국내	국외
10월	• 13일: 동북아역사재단은 13~31일간 독도의 날 기념 온라인 독도체험 이벤트를 진행 • 1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상 경계 강화·테러 예방 작전을 시행 • 2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독도 연구 20주년 기념 특별전시 독도 파노라마'를 개최 • 21일: 충남교육청은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한마당 행사를 실시 • 21일: 독립기념관은 독도의 날을 맞아 21~24일간 '찾아가는 독도학교'를 운영 • 22일: 합참은 북한이 APEC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경계·분석 중이라고 발표 • 22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해 PMZ에 설치된 중국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원이 식별된 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의 시설 고정화 작업이라고 지적 • 23일: 서울시가 23~25일간 청계광장에서 '울릉도·독도 그리고 섬' 특별전을 실시 •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해 PMZ에 설치된 중국해상 구조물을 두고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앞에 말이 없나"라고 비판	• 5일: GPT에 한국어로 독도 영유권을 물으면 대한민국이 지배 중이라고 답변하나,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물으면 일본에 속한 섬이라고 답변 •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 22일: 서해 PMZ에 설치된 중국해상 구조물에서 사진을 통해 중국 측 인원이 식별됨

2025년	국내	국외
10월	• 23일: 외교부는 “중국 측은 PMZ에 설치된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이라고 설명해 오고 있다”며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지속 전달 중이라고 표명 • 23일: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서해 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영유권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발언 • 2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4~26일간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울릉군민의 날·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 • 24일: 대한항공이 운항노선에 독도가 없는 지도를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 • 24일: 대구시는 독도의 날을 맞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 대종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실시함 • 24일: 대구시교육청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사랑의 날’ 행사를 실시 • 24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국제 분쟁화 시도를 규탄 • 24일: 세종시는 독도의 영토적 정당성 관련 일본인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 • 25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은 독도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며 “독도 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발표 •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형 국산 헬기 ‘흰수리’ 1대를 군산항공대에 배치 • 28일: 공군 ‘블랙이글스’는 태극 문양을 그리는 특수비행 훈련을 실시	• 28일: 북한이 오후 3시경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5년	국내	국외
10월	•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의제를 논의 • 30일: 네이버 인공지능(AI) 답변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설명해 논란 •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11월 1일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시	•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며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 • 3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정상회담 뒤 일중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표명 • 31일: 일본 정부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항의
11월	• 1일: 국방부장관이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국방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 •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 등 경제·문화·범죄 대응 분야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함 • 3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판문점 JSA에서 회동 • 4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와 지난 3일 오후 4시, 북한 서해로 발사된 방사포 각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 • 7일: 합참은 북한이 오후 12시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 • 7일: 외교부 차관이 서울에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실시	• 1일: 북한군이 북한 서해 북부 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 • 2일: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사실을 문제 삼아 한국 공군의 일본 자위대 기지 급유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 • 3일: 북한군이 또다시 북한 서해 북부 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 • 4일: 일본 시마네현이 내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의 참석을 요청 • 7일: 북한이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 •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이 SRBM을 을 발사했고 일본의 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 • 7일: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을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5년	국내	국외
11월	• 8일: '블랙이글스'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으로 이달로 예정됐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 구조 훈련이 취소되고,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우리 군악대를 보내지 않기로 함	
	• 9일: 해경이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중국 선원을 구조	• 9일: 중국 어선이 서해 공해상에서 전복되어 선원 11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 •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12일: 경북도교육청이 울릉군민회관에서 독도 교육의 거점 공간이 될 독도교육원(가칭) 건립 공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	
		• 13일: 중국 해경국은 한국 서해해경청에 중국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수색 구조 활동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 14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며 규탄 • 14일: 외교부는 일본이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하자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하며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 •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 14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
		• 15일: 중국은 항행 경고를 통해 17~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며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 • 16일: 일본은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무장한 중국 해경선 4척이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발표 • 16일: 중국은 해경 함정이 자국의 권익 수호 일환으로 센카쿠열도 인근 항해를 진행했다며 합법적 조치라고 반박 • 17일: 중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범위에 포함한다고 발표 • 17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분간 일본 여행 및 유학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게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5년	국내	국외
11월	• 28일: 한국독도연구원이 춘천 '독도·대마도의 집'에서 대한민국 고종 칙령 제41호 반포 기념비를 건립 • 30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산·학·관·연 정책토론회와 선상 아카데미'를 개최함 • 3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독도 인근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응급환자를 '흰수리'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긴급 이송 작전을 통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발표	• 18일: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 서해 중·남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 • 18일: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시설인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항의하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되풀이함 • 20일: 미국 국무부는 미일 동맹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 동맹이 확고하다며 무력과 강압을 포함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 • 20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을 '모범 동맹(Model ally)'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주둔을 지지해 온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서해 정세가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배경이라고 공개적으로 설명 • 20일: 중국은 한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관련 브리핑에 대해 미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 • 21일: 주일 중국대사관이 센카쿠열도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21일: 중국 항공모함 '푸젠'이 한중 EEZ가 겹치는 구역에서 해상 실전 훈련을 실시 • 23일: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서해 중부·남부에 이어 북부에서도 군사 활동을 진행 • 23일: 미중이 해상 안보 관련 실무급 회담을 개최 • 24일: 주한 미 7공군 다목적 무인기(MQ-9)가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 • 28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 육군 1보병전투여단(SBCT)이 한국에서 실사격 기반 소대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규정 및 규칙

- 편집위원회 규칙
- 발행 및 심사규정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편집위원회 규칙 〕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4. 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 · 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발행 및 심사규정 〕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10. 25.
개정 2020. 07. 22.

제1장 발행규정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장 심사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 · 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투고 요령 〕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 · 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1.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2.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4.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5.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북,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쥔),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예) 홍길동 · 허생 · 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고전의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제정 2019.11.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 실장

편집위원

강병근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서진웅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송규진 _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오시진 _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일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정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편집간사

신승혜 _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토해양연구 Vol. 30

초판 1쇄 인쇄 2025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5년 12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